



■ 연구보고서 2014-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김유경·이진숙·이재림·김가희

【책임연구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김 유 경
발행인 최 병 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정가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64-9 93330

발간사 <<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및 동태적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소가족화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기능 공백 등 가족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가치관 약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가구주의 고령화·여성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이 가족가치 약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갈등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족기능 약화와 가족갈등 증가는 이혼·별거 및 위기 청소년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발생의 우려가 대두된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발생하므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정과제인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자녀 및 부부간 갈등해소, 유대감 강화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별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김유경)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이론적 배경(김유경·김가희·이재림)

제3장 가족갈등의 원인 진단(이재림)

제4장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김유경·김가희)

제5장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이진숙)

제6장 가족갈등의 대응방안(김유경·이진숙·이재림·김가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토를 해주신 본 원의 김미숙 연구위원과 박종서 부연구위원, 원외의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와 송유진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	25
제2절 가족갈등 관련 이론	32
제3절 가족갈등의 대응: 결과 및 영향	39
제4절 가족갈등 관련 연구동향 분석	41
제3장 가족갈등의 원인 진단	55
제1절 개인 수준 원인 진단	60
제2절 가족 수준 원인 진단	67
제3절 사회 수준 원인 진단	84
제4절 시사점	101
제4장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103
제1절 분석대상 특성	105
제2절 전반적 가족갈등 양상	113
제3절 가족관계 갈등양상	132

제4절 가족기능 갈등양상	179
제5절 가족갈등 유형별 대응육구	219
제6절 시사점	227
제5장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233
제1절 가족갈등 관련 정책분석 틀	235
제2절 가족갈등 관련 국내 법 및 정책의 현황	242
제3절 국외의 가족갈등 관련 정책	283
제4절 국내외 정책의 시사점	304
제6장 가족갈등의 대응방안	313
제1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315
제2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316
제3절 가족관계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320
제4절 가족기능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330
참고문헌	339
부록	363
부록 1. 가족내 세대갈등 및 돌봄, 상속갈등 실태조사	363
부록 2. 부부 및 형제자매 갈등 실태조사	364

표 목차

〈표 1- 1〉 전화조사내용	20
〈표 2- 1〉 가족갈등유형 및 범위	27
〈표 3- 1〉 부모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 부부들	67
〈표 3- 2〉 장모 이렇게 하면 장서갈등 생긴다!	78
〈표 3- 3〉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늦게 태어난 내 탓이지	81
〈표 3- 4〉 별들의 ‘권리 찾기’ 늘어	87
〈표 3- 5〉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고려한 세대구분과 특징	90
〈표 3- 6〉 다양한 학자들의 세대차이와 갈등의 원인과 결과, 방안	91
〈표 3- 7〉 며느라만 ‘시월드?’ 사위들에겐 ‘처월드’ 있다	92
〈표 4-1〉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106
〈표 4-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07
〈표 4-3〉 응답자의 가구특성	108
〈표 4-4〉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110
〈표 4-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12
〈표 4-6〉 응답자의 가구 특성	113
〈표 4-7〉 가구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115
〈표 4-8〉 가구소득 및 생활비부담자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116
〈표 4-9〉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117
〈표 4-10〉 가구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119
〈표 4-11〉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121
〈표 4-12〉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122
〈표 4-13〉 가족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가족갈등의 대처방식	125
〈표 4-14〉 가구소득 및 생활비부담자별 가족갈등 대처방식	126
〈표 4-15〉 가구주특성별 가족갈등 대처방식	127
〈표 4-16〉 가족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129
〈표 4-17〉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130

〈표 4-18〉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131
〈표 4-19〉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	133
〈표 4-20〉 부부 간의 관계	134
〈표 4-21〉 부부갈등 원인 변화	135
〈표 4-22〉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37
〈표 4-23〉 유배우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38
〈표 4-24〉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의 원인 제공자	140
〈표 4-25〉 유배우 갈등경험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	141
〈표 4-26〉 가구특성별 부부갈등의 대처방식	143
〈표 4-27〉 부부갈등경험자 특성별 부부갈등의 대처방식	143
〈표 4-28〉 유배우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여부	145
〈표 4-29〉 은퇴한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146
〈표 4-30〉 갈등이 증가한 은퇴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	148
〈표 4-31〉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	150
〈표 4-32〉 부부갈등 경험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	150
〈표 4-33〉 자녀에 대한 견해	152
〈표 4-34〉 응답자의 특성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 유무	154
〈표 4-35〉 부모와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관계	155
〈표 4-36〉 부모특성별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156
〈표 4-37〉 부모특성별 최근 1년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58
〈표 4-38〉 부모특성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159
〈표 4-39〉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유무, 결혼상태 및 동거율	161
〈표 4-40〉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	162
〈표 4-41〉 부모특성별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간 경제적 도움교류	162
〈표 4-42〉 부모특성별 최근 1년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63
〈표 4-43〉 부모-기혼자녀 간의 갈등원인 변화	164
〈표 4-44〉 부모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166
〈표 4-45〉 기혼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 생존과 동거여부	167

〈표 4-46〉 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의 생활비 부담자	168
〈표 4-47〉 고부(장서)와의 관계	169
〈표 4-48〉 고부간의 갈등원인 변화	170
〈표 4-49〉 응답자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갈등비율 및 원인	171
〈표 4-50〉 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갈등 대처방식	172
〈표 4-51〉 응답자의 특성별 형제자매 유무 및 순위	173
〈표 4-52〉 형제자매 간 관계	173
〈표 4-53〉 응답자의 특성별 최근 1년간 형제자매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74
〈표 4-54〉 응답자의 특성별 형제자매 갈등의 대처방식	175
〈표 4-55〉 응답자의 특성별 동서(남편형제의 배우자) 유무 및 순위	176
〈표 4-56〉 동서 간 관계	177
〈표 4-57〉 응답자의 특성별 최근 1년간 동서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178
〈표 4-58〉 응답자의 특성별 동서갈등의 대처방식	178
〈표 4-59〉 응답자의 특성별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181
〈표 4-60〉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정도에 대한 견해	184
〈표 4-61〉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동거여부	185
〈표 4-62〉 부모 돌봄의 필요 여부	185
〈표 4-63〉 응답자의 특성별 현재 친부모 생활비 부담자	189
〈표 4-64〉 응답자의 특성별 현재 시부모/장인·장모 생활비 부담자	191
〈표 4-65〉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192
〈표 4-66〉 응답자의 특성별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유무	194
〈표 4-67〉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님의 손자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봄 여부	198
〈표 4-68〉 응답자의 특성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방식	202
〈표 4-69〉 응답자의 특성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풍속	205
〈표 4-70〉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 유무	207
〈표 4-71〉 응답자의 성별 재산문제와 관련된 갈등 대처방식	210
〈표 4-72〉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유무, 결혼상태 및 동거율	211
〈표 4-73〉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	212

〈표 4-74〉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213
〈표 4-75〉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214
〈표 4-76〉 응답자의 특성별 맞벌이 부부 여부	215
〈표 4-77〉 응답자의 특성별 일-가정의 균형도	216
〈표 4-78〉 응답자의 특성별 일-가정 갈등 경험 및 갈등 원인	218
〈표 4-79〉 가구특성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1
〈표 4-80〉 응답자의 특성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2
〈표 4-81〉 응답자의 특성별 친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5
〈표 4-82〉 응답자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6
〈표 5- 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250
〈표 5-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표준 운영모델	254
〈표 5-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55
〈표 5- 4〉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261
〈표 5- 5〉 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265
〈표 5- 6〉 주택특별공급 세부내용	266
〈표 5- 7〉 보육료 지원 현황	273
〈표 5- 8〉 출산전후 휴가자 수 및 지원 금액	276
〈표 5- 9〉 육아휴직자 수 및 지원 금액	278
〈표 5-10〉 일-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279
〈표 5-11〉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현황	281
〈표 5-1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282
〈표 5-13〉 국내정책 현황	304
〈표 5-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도별 설치 추이(2013년 말 기준)	308
〈표 5-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308
〈표 5-16〉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 비교(2007년 기준)	312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흐름도	22
[그림 3- 1] 가족 갈등의 생태학적 원인 진단	58
[그림 3- 2] 부부관계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	71
[그림 3- 3]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확장: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	72
[그림 4- 1]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114
[그림 4- 2]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118
[그림 4- 3] 가족갈등의 대처방식	123
[그림 4- 4]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128
[그림 4- 5] 부부의 가정생활에 중요한 일의 결정방식	133
[그림 4- 6] 응답자의 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135
[그림 4- 7] 응답자의 연령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135
[그림 4- 8] 부부갈등 원인	136
[그림 4- 9]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	139
[그림 4-10] 부부갈등의 대처방식	142
[그림 4-11] 응답자의 성별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146
[그림 4-12] 응답자의 연령별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146
[그림 4-13] 부부 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	147
[그림 4-14]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149
[그림 4-15] 응답자의 성별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견해	152
[그림 4-16] 응답자의 성별 이상적인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견해	153
[그림 4-17]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갈등경험 비율	157
[그림 4-18]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갈등경험 원인	157
[그림 4-19]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청소년자녀와의 갈등대처 방식	160
[그림 4-20]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179
[그림 4-21] 응답자의 연령별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180
[그림 4-22]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182

[그림 4-23] 응답자의 성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182
[그림 4-24] 응답자의 연령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183
[그림 4-25]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주로 돌보는 사람	186
[그림 4-26] 현재 친부모의 생활비 부담자	186
[그림 4-27] 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친부모의 생활비 부담자	187
[그림 4-28] 응답자의 결혼상태별 현재 친부모 생활비 부담자	188
[그림 4-29] 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시부모/장인·장모 생활비 부담자	190
[그림 4-30] 부모와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192
[그림 4-31]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유무	193
[그림 4-32] 응답자의 연령별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경험 비율	194
[그림 4-33] 친부모와의 갈등원인	195
[그림 4-34]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원인	195
[그림 4-35] 부모님과과의 갈등 대처방식	196
[그림 4-36] 부모님의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 참여 여부	197
[그림 4-37]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198
[그림 4-38]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199
[그림 4-39]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 방식	200
[그림 4-40]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견해	201
[그림 4-41] 응답자의 연령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 방식	202
[그림 4-42]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 풍속	203
[그림 4-43] 응답자의 연령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 풍속	204
[그림 4-44]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 유무	206
[그림 4-45] 응답자의 연령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률	206
[그림 4-46]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원인	207
[그림 4-47] 응답자의 성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 관련 갈등원인	208
[그림 4-48]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된 갈등 대처방식	209
[그림 4-49] 응답자의 연령별 맞벌이 부부 비율	215
[그림 4-50] 응답자의 결혼기간별 맞벌이 부부 비율	215

[그림 4-51]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양육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	216
[그림 4-52]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 경험	217
[그림 4-53]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갈등의 대처방식	219
[그림 4-54]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0
[그림 4-55]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224
[그림 5- 1] 부부문제상담 주요 내용(2013 상반기 상담 분석)	253
[그림 5- 2] 부모-자녀상담 주요 내용(2013년 상반기 상담 분석)	259
[그림 5- 3] 자녀 대상 교육	261
[그림 5- 4] 남성대상교육 연간 평균 참여인원 현황	262
[그림 5-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적	263
[그림 5- 6] 양육수당 지원아동 수	274
[그림 5- 7] 시간제 돌봄서비스 만족도	283
[그림 5- 8] 종일제 돌봄서비스 만족도	283
[그림 5- 9] 전체 출생아 대비 아버지가 부모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비율	298
[그림 5-10] 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6세 아동 비율(2011년 3월 1일 기준)	302



Abstract <<

Family Conflicts and Policy Responses—Relational Conflicts and Function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gaps in family functions such as family support and caregiving have been highlighted by rapi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dynamics and family structure, a weakening of family values, and an increase in dual-earner households. In addition, the rise of individualism, mixture of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gap are expected to worsen marital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mily disorganization. Thus, family conflict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lead to family disorganization and cause heavy burden of social cos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pread family values and to take political measures for the solution of family crisi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family dis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 'To Build Healthy Families' in order to develop policies for solving parent-adolescent and marital conflicts and enhancing family bon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for building healthy families by diagnosing conflict types and problems by family relation and function and deriving political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family conflicts in the rapid

2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industrialization and transition process to post-industrialized society.

The political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family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extend life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family conflicts, to create a family-friendly and gender equal social environment, to increase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plans to solve marital, intergenerational, and sibling conflicts were discussed. Second, in order to solve conflicts by family functions, this study proposed detailed tasks with a focus on considering the connection between family functions and family conflicts and solving parent-adult child support and inheritance conflicts and workfamily conflic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인구구조 및 동태적 변화로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가족가치 약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갈등 심화가 예상되며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발생하므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정과제인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자녀 및 부부간 갈등해소, 유대감 강화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별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 및 가족관련 통계자료를 재분석하고,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주요 연구결과

1. 가족갈등의 유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가족 갈등은 크게 가족 관계상의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갈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족 관계상의 갈등에는 (1) 부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부부 갈등’, (2) 부모와 자녀, 고부 및 장서, 조부모와 손자녀 등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의 갈등인 ‘가족 내 세대 갈등’, (3)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인 ‘형제자매 갈등’ 등을 포함하였다. 가족 기능상의 갈등에는 (1)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돌보는 기능과 관련된 갈등인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 (2)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자녀 돌봄 등 가족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을 포함하였다.

2. 가족갈등의 원인 진단

개인 수준의 원인으로는 생애단계 특성,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아분화 등 기존에 가족상담, 심리학, 아동학, 인간발달학, 정신의학 등에서 주로 논의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애단계 특성과 가족갈등을 연결해서 진단함으로써 가족 갈등이 정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가족 수준의 원인으로는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사건, 경제적 문제나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와 불일치, 가족 내 부정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패턴, 상호작용 부족, 부정적 원가족 경험,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불공평한 관계 및 분배와 같이 매우 다양한 측면

에 대해 진단하였다. 가족관계 갈등 및 가족기능 갈등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수준의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수준의 원인으로는 비민주적 젠더관계,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세대 차이, 상충하는 규범이 혼재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양가성, 감정적 과부하·도구화·물신화 등과 같은 가족의 의미 변화, 저출산·고령화·성인기 전이 지연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 및 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 수준의 원인을 진단한 결과, 가족 갈등은 대부분 한국 사회가 압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의 양상이 변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가족 갈등이 가족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사회 수준의 갈등이나 위험 요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하였다. 갈등유형별로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이 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갈등과 부부갈등이 각각 1/5의 분포를 보였으며,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과 일가족 갈등은 10% 미만으로 적어서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비교적 높았다. 대처방식은 대다수의 응답자의 경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와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많아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가정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6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가족관계 갈등은 부부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을 포함한다. 먼저 부부갈등을 보면 최근 1년 간 부부가 갈등을 경험한 갈등은 32.0%로 기혼 응답자의 1/3이 부부갈등을 경험하였고, 갈등원인은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식, 배우자 생활방식, 부모 및 형제자매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대다수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부부가 은퇴한 경우 응답자의 1/4은 갈등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경제문제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부부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약 70%이었고, 이외에도 부부갈등으로 폭력과 이혼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세대갈등은 자녀관 및 양육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자녀관은 기존 자녀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부부와 부모중심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범위는 자녀의 혼인과 취업 시기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자녀연령 및 부양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부모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은 청소년기 자녀(45.4%)가 성인기 자녀(28.6%)보다 훨씬 심각하였고,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32.3%로 일반 성인자녀와의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와의 갈등원인은 주로 생활습관,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었고, 이외에 성인기 자녀는 성격 및 정서문제와 생활부담 등도 파악되었다.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형제자매 갈등은 친형제 및 동서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형제자매

간 관계를 보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경우는 친형제자매가 많은 데 비해,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상의하는 경우는 동서 간에는 많았다. 실제로 부모님 부양 및 경제적 도움은 양쪽 모두 1/5~2/5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1년간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비율은 19.8%, 동서 간은 29.5%로 동서 간 갈등이 친형제자매 보다 9.7%p 높았다. 갈등원인은 친형제자매는 성격 및 사고방식이 많은데 비해, 동서 간은 경제 및 부양 때문이 약 3배 높았다. 대처방식은 양쪽 모두 그냥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외에 동서 간은 의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가족기능갈등은 부모와 성인자녀 간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족갈등 등을 포함한다. 먼저 부모와 성인자녀 간 갈등과 관련하여 노부모 부양관은 과거 장남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부모 스스로 해결도 높아져 자녀의존에서 상당히 탈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발적인 부양의식보다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의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생활비 부담도 부양관을 반영하여 친부모 및 고부(장서) 모두 노인 스스로 해결 또는 자녀의 지원이 거의 98%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부모(4.2점)가 시부모/장인장모(3.8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고부(장서)보다 긍정적이었다.

최근 1년간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친부모(23.4%)보다 고부 또는 장서(28.2%)와의 갈등이 다소 높았고, 그 원인은 양쪽 모두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많았으며, 이외에 고부(장서)와는 명절 및 제사, 신체적 돌봄 등이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친부모와는 차분하게 대화하거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지르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고부(장서)와는 그냥 참는 경향이 높았다.

손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 상의 만족도는 조부모(3.3점)가 부모(3.5~3.6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조부모의 특성상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돌봄 시간의 여유나 손자녀의 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 및 교육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은 높으나, 부모에 비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치며,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손자녀 돌봄의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0).

가족 내 상속갈등과 관련하여 상속 및 제사관을 보면, 가장 적절한 유산상속 방식으로 모든 자녀에게 비슷한 상속이 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 생존한 배우자 순으로 많은데 비해, 모든 아들 및 장남,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양관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사풍속은 여건이 허락되는 자녀 또는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42.2%) 의견이 장남과 아들에 대한 제사의무 기대보다(33.1%) 많았다.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6.9%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자의 약 80%는 특정자녀에게 상속이 많이 되거나 자녀 간 상속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1/3은 가족 간에 폭력발생부터 법적소송,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가족 갈등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은 평균 69.3%로 나타났다. 그중 노부모 부양, 가계 및 재정관리, 가정행사 참여,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일 참여 등의 갈등은 62~80%로 높았다. 갈등원인은 업무 과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및 가사부담 순으로 높았

으며, 대처방식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갈등정도는 높으나 맞벌이 부부의 2/5는 가사 및 양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갈등에 대응하는 욕구를 보면, 먼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부 간 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등이었으며, 이어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책욕구도 많았다. 그리고 이는 가구형태, 자녀유무 및 소득, 성 및 부부주기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일부 중장년층과 여성응답자의 경우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가족의 소통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4.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우리나라의 가족갈등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간적인 지원은 아동보육에 대한 분야 외에는 매우 미약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주로 아동을 보육 중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들은 주로 사후치료적인 상담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시간적 지원정책은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공유하도록 함

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되므로 향후에는 이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주로 취업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를 철저하게 실현함으로써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스웨덴이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책임 패러다임이 양부모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분리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경제적 지원방안 및 서비스적 지원방안 모두 자유주의적인 이념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책적 지원의 대상은 이미 경제적 문제나 가족구조적 유형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주로 저소득가족과 한부모가족)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편주의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안고 있다.

독일의 가족지원정책들은 서비스보다는 주로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가족에 의한 돌봄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독일의 정책적 경향은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데에 주력하는 스웨덴의 정책기조와 매우 상이한 극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식의 모델은 가족의 돌봄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적 지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이 강하므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과 어머니들의 역할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우리사회의 정서상 가족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해체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공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족갈등을 최소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인 예방과 치료 등의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상의 갈등을 제거하고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관계 상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의 취약을 진단하고 이로 인한 사전적 원인과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인프라 강화를 모색하였다.

가족관계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예방교육 확대와 부부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과 상담강화,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모색을 도출하였다. 또한 황혼기 부부갈등 대응방안으로 성별 역할 공유와 노후지원체계 구

12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축을 제시하였고, 이혼예방프로그램 확충을 제시하였다. 가족 내 세대갈등 방안으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과 성인자녀-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 모색, 세대 간 응집력 및 탄력도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형제자매 갈등 대응방안으로 전통적 가족문화 및 인식개선, 전문적·치료적 상담서비스 강화를 제시하였다.

가족기능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가족기능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 간의 연계성 고려가 논의되었고, 부양갈등 해소방안으로 부양 및 돌봄 환경 확충,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 강화 등이 모색되었다. 상속갈등 대응방안으로 합리적·능동적인 상속문화 개선, 공적노인부양체계 강화, 부양자녀 상속기여분 보장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가족 갈등 대응방안으로 돌봄노동의 성별공유 인식 확대, 가족친화 제도의 접근성 제고, 보편적 양육자 모델로의 전환, 돌봄 사회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용어: 가족갈등, 가족관계갈등, 가족기능갈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2012년에 11.7%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초혼연령은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2년에는 각각 32.13세, 29.41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이혼율은 2000년에 2.5건에서 2012년에는 2.3건으로 지속적으로 일정건수가 발생하며, 출산수준은 2000년에 1.47명에서 2012년에는 1.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및 동태적 변화로 가족구조는 빠르게 핵가족화소가족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기능 공백 등 가족복지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 약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가구주의 고령화·여성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협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에는 49.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성별분포는 2000년에 남성 81.5%, 여성 18.5%에서 2010년에는 각각 74.1%와 25.9%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09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한부모가족도 2000년 9.4%에서 2010년 1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족가치 약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기능 약화와 가족갈등 증가는 이혼·별거 및 위기 청소년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발생의 우려가 대두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갈등 관련 연구는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양상과 가족갈등과의 관련 요인 및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족유형 및 가족관계별 갈등양상, 사회적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육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발생하므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정과제인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자녀 및 부부간 갈등해소, 유대감 강화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기반을 마련함

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한다.

둘째, 가족갈등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범주화한다.

셋째,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의 가족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정책욕구를 도출한다.

넷째, 관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가족갈등의 환경 및 원인,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 진단, 선진국 사례 분석과 등을 기반으로 가족갈등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7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하면 6개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가족갈등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가족갈등 이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가족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갈등 유형별 원인을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은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을 진단하고 정책욕구를 도출하며, 제5장은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가족갈등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가족갈등에 대한 이론, 가족갈등유형별 실태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분석 등을 중심으로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가족갈등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제2장은 가족갈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범위를 정리하며 가족갈등에 관한 이론으로 갈등이론, 교환 및 자원이론, 가족체계이론, 젠더 관점, 가족 발달적 관점 및 가족스트레스 이론, 인간생태학적 관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가족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가족갈등의 원인진단

제3장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갈등 유형별 원인을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사회 수준의 3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 가족갈등 양상 및 정책육구 분석

우리 가족 전반의 가족갈등 수준을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진단하고, 가족관계 갈등 즉 부부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그리고 가족기능 갈등 즉 부모-성인자녀 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정양립 갈등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및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갈등발생 수준, 대응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육구를 도출하였다.

라.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비교분석

가족갈등 관련 정책분석 틀은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내 관련 법을 검토하고, 가족갈등유형별로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외는 스웨덴, 영국 및 독일 3개국을 중심으로 가족갈등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 가족갈등의 정책적 대응방안

가족갈등에 대한 이론, 가족갈등유형별 양적 실태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분석 등을 중심으로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세부적으로는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 갈등해소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고찰

가족갈등 관련 개념과 원인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각종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통계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통계청 및 가족관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관련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간, 부모와 기혼자녀 간,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발생원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갈등을 진단하여 대응 욕구를 도출하였다.

다. 전화조사

일반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와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69세 이하의 성인남녀이고, 조사 시기는 2014년 8월 21일~9월 1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다.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사항, 부부 및 부양, 상속, 제사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반적인 가족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부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일가정 양립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형제자매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는 응답자 일반사항,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상속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족 내 세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가족돌봄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상속갈등 및 대처방식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1 참조).

〈표 1-1〉 전화조사내용

부 문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10개 항목)	① 총가구원수 ② 동거가족 ③ 가구형태 ④ 자녀수와 연령 ⑤ 최종학력 ⑥ 취업여부 ⑦ 직업 ⑧ 종사상지위 ⑨ 월평균가구소득 ⑩ 생활비 부담자
부부 및 부양, 상속, 제사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개 항목)	①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 ② 노부모 부양책임자 ③ 바람직한 유산상속 방식 ⑤ 바람직한 제사관
전반적인 가족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3개 항목)	① 가족갈등 경험유무 및 원인 ② 가족갈등 대처방식 ③ 가족갈등으로 인한 변화

부 문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부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0개 항목)	① 부부관계 ② 부부간 의사결정 형태 ③ 배우자와의 갈등경험 유무 및 원인 ④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 ⑤ 부부갈등 대처방식 ⑥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 ⑦ 직장에서 은퇴여부 ⑧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 변화 ⑨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 증가원인 ⑩ 부부관계 개선 정책 필요도
일가정 양립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4개 항목)	① 맞벌이 부부 여부 ② 양육을 주로 돕는 자 ③ 맞벌이 부부로서 가정내 역할수행과정상의 갈등 경험 유무 ④ 일가정 병행상의 갈등 대처방식
형제자매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8개 항목)	① 형제자매 유무 및 순위 ② 형제자매와의 관계 ③ 형제자매와의 갈등 유무 및 원인 ④ 형제자매와의 갈등 대처방식 ⑤ 동서 유무 및 순위 ⑥ 동서와의 관계 ⑦ 동서와의 갈등경험 유무 및 원인 ⑧ 동서와의 갈등 대처방식
부 문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10개 항목)	① 총가구원수 ② 동거가족 ③ 가구형태 ④ 자녀수와 연령 ⑤ 최종학력 ⑥ 취업여부 ⑦ 직업 ⑧ 종사상지위 ⑨ 월평균가구소득 ⑩ 생활비 부담자
저녀양육 및 노인부양, 상속에 대한 인식 및 태도 (7개 항목)	① 자녀에 대한 견해 ② 부모로서 자녀양육 책임범위 ③ 가장 이상적인 부모 양육관 ④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⑤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 ⑥ 바람직한 유산상속 방식 ⑦ 바람직한 제사관
가족 내 세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1개 항목)	① 청소년기 자녀유무 ②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③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유무 및 원인 ④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⑤ 성인기자녀 자녀유무 ⑥ 성인기 자녀의 결혼상태 ⑦ 성인기 자녀와의 동거여부 ⑧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 ⑨ 부모와 성인기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 ⑩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유무 및 원인 ⑪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가족돌봄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0개 항목)	①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생존여부 ②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동거여부 ③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연로 및 건강상태 ④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돌봄자 ⑤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손자녀 돌봄여부 ⑥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의 생활비 부담자 ⑦ 자녀와 친부모, 자녀와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관계 ⑧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 갈등경험 유무 및 원인 ⑨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대처방식 ⑩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관계 개선 정책 필요도
상속갈등 및 대처방식 (4개 항목)	①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발생 유무 및 원인 ② 재산문제 관련 다툼 대처방식 ③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람 ④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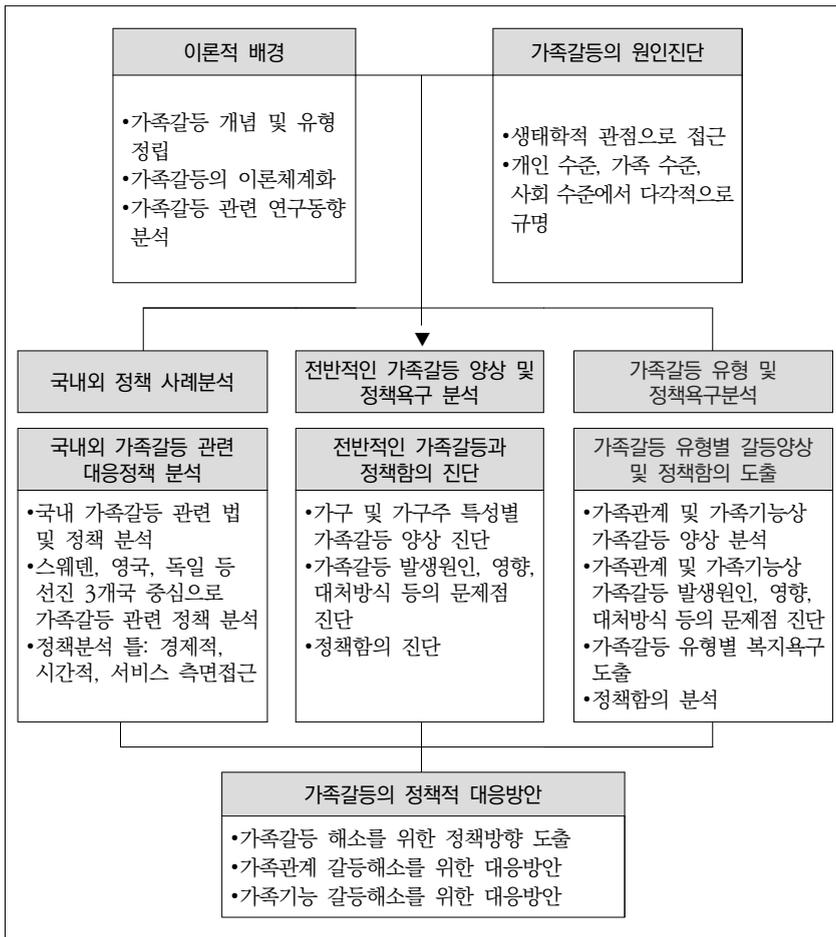
라.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토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2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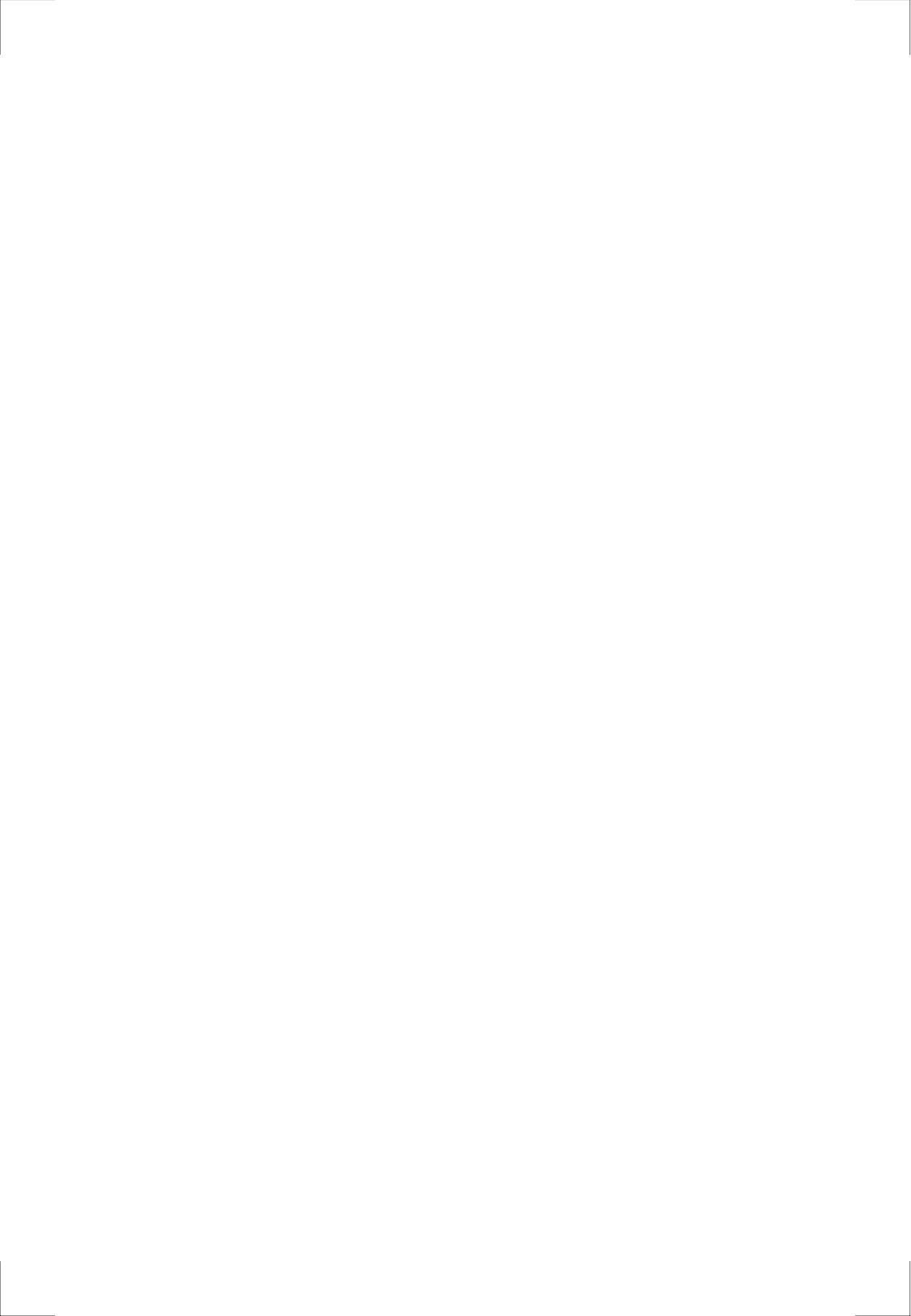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이론적 배경

제1절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가족갈등 관련 이론

제3절 가족갈등의 대응: 결과 및 영향

제4절 가족갈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제1절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

1. 가족갈등의 개념과 범위

갈등이란 인간관계가 형성된 곳이라면 어디에도 존재하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둘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의사소통관계에서의 견해차이(Berry, 2008)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 침묵,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신체적·언어적인 유형·무형의 폭력을 의미한다(이상영 외, 2013).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유형으로 갈등을 개인 내·외부 및 갈등의 표출여부에 따라 심리적 갈등, 부정적 정서갈등, 개인 간의 관계상의 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리적 갈등은 개인의 내적갈등이자 비표출 갈등으로 개인선택(selection) 또는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서 여러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할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고, 부정적 정서갈등은 개인 내적갈등이자 표출 갈등으로 인간이나 사물이 등 특정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개인 간의 관계상에서도 표출하지 않는 갈등과 외부로 표출하는 갈등도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 거시적 차원의 갈등과 미시적 차원의 갈등이 있다. 거시적 차원의 갈등은 구조영역 즉 집단 간, 조직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특정집단의 기능적·계층적·경쟁력 차이로 유발되는 갈등으로 갈등정도나 문제 크기 등의 객관적 측정에 한계 있다. 미시적 차원의 갈등은 일상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개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으로 구분되며 일정 수준의 객관성 확보와 정확한 측정방법 사용 가능하다(정효현, 2001).

더불어 가족갈등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갈등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표현하는 분노, 공격성, 의견충돌(Moos&Moss, 1994), 가족 내 권위와 경제적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마찰로써 갈등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김양희, 1993; 전요섭·성금옥, 2008),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불화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노성덕 외, 201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외에 가족갈등을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내린 정의도 있다. Semple(1992)은 가족 갈등을 돌봄 제공자가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밖에 있는 가족구성원들과의 다툼 또는 극단적인 적개심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돌봄은 가족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을 사정(assessment)할 때는 가족 중심적 관점에서 가족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Mary & Susan, 1997; Lynn&Babara, 2008).

이외에도 가족 갈등을 가족 관계상의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갈등으로 나누어 접근한 연구도 있다. 가족 '관계'상의 갈등이란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Galvin & Brommel, 1986)이며, 가족 '기능' 상의 갈등이란 가족구성원이 가족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과 같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구, 목표, 역할이 주위 환경과 상충할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욕구, 기대, 목표를 가진 구성원이 일상생활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와 미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 기

대, 목표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족갈등 개념 및 범위는 가족관계상에 발생하는 갈등 외에 가족기능상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2. 가족갈등 유형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가족 갈등은 크게 가족 관계상의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갈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족 관계상의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Galvin & Brommel, 1986)이라고 정의하며, 가족의 하위체계에 따라 (1) 부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부부 갈등’, (2) 부모와 청소년, 청년, 성인기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의 갈등인 ‘가족 내 세대 갈등’, (3)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인 ‘형제자매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2-1〉 가족갈등유형 및 범위

영역 및 유형	가족관계 갈등			가족기능 갈등	
	부부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부모-성인자녀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족 갈등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다양한 갈등 •노년기 부부갈등 /황혼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갈등 (청소년 자녀/청년 자녀/성인기 자녀) •고부/장서갈등 •조부모-손자녀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자매간 노부모 부양, 상속, 명절/제사 등을 둘러싼 갈등 •동서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 돌봄 및 상속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과 갈등 (깡겨루족, 손자녀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갈등

한편, 가족 기능상의 갈등은 가족의 중요한 기능인 자녀 및 노인 돌봄, 경제적 부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구, 목표, 역할이 주위 환경과 상충할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한다. 가족 기능상의 갈등은 (1)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돌보는 기능과 관련된 갈등인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 (2)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자녀 돌봄 등 가족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의 친밀감, 커뮤니케이션 태도, 상호작용, 부부관계의 만족도 등과 함께 부부생활의 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이미숙 외, 2000). 부부 갈등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기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차원에 따라 자녀의 행동문제 유형도 달라지는 등의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가 느끼는 불안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애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녀문제, 건강문제, 성문제, 친족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이 심화되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인 우울과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uber et al., 1990).

본 연구에는 부부가 경험하는 노년기 부부 갈등 및 황혼이혼을 포함 한 다양한 갈등을 부부갈등으로 보았고, 이혼 이후의 갈등, 다문화 부부에 국한 된 갈등, 가정폭력은 제외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둔 갈등으로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성역할 갈등과는 차별적으로 접근하였다.

나. 가족 내 세대 갈등

가족갈등 관련 연구 중 세대 간 갈등은 사회현상, 가족변화 및 가족문화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족응집성, 의사소통, 부양 등과의 관련성도 규명하며 가족주기별 차이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세대갈등은 가족 내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 내 갈등은 부모부양이나 자녀지원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며, 사회 갈등은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또는 연령에 따른 차별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차성란, 2013).

본 연구의 세대갈등은 가족 내 갈등으로 한정하여 부모-자녀, 고부-장서, 조부모-손자녀 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말한다. 여기서 부모-자녀갈등에는 청소년 자녀, 청년 자녀, 성인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을 포괄한다. 단,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부양 및 상속에 국한된 갈등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다. 형제자매 갈등

전통적인 한국의 형제-자매 상호작용에 있어 장유유서, 출가외인 및 장자우대 등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교적 가족규범들이다. 이러한 한국의 형제자매 관계는 1990년 장남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가족법에서 폐지되고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법률적 관점에서 동등한 권리 및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Sung, M. and Lee, J., 2013).

이들 변화가 한국 가족사에 평등주의적 규범을 주입시켜왔지만 현대 한국의 실질적 형제자매 관계는 유교적 가족규범으로부터 이미 탈피해

있는 법률적 움직임에는 뒤쳐져 있다(Sung, 2009; Sung, M. and Lee, J., 2013 재인용).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장남의 책임이지만 평등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형제 자매간 똑같이 부담되어야 하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충되는 관점 때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서 긴장이 초래 되고 있다(Sung, M. and Lee, J., 2013).

그러나 이러한 형제-자매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갈등을 노부모 돌봄 및 부양, 상속, 명절 및 제사 등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포괄하고자 한다.

라. 부모-성인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

흔히 가족 내에서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돌봄으로 정의하며, 나이든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으로 개념화 하는데,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가족원들에 대해 물리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모두 가족 돌봄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은 가족원들 사이의 자원교환으로 볼 수 있는데, 돌봄노동 제공과 경제적, 정서적 보상의 자원교환으로서 자원교환 시 상호 공평한 교환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Hommans, 1961).

특히, ‘누가 노인부양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공적인 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공적 지원체계의 상대적 우위가 논의 되어 왔다(김혜경, 2010). 즉 한편에서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부양능력을 상실한 가족보다 공적 지원체

계의 대체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명 공적 지원체계로는 대체 할 수 없는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대립적이다(박경숙, 2002).

이러한 대립은 자연스럽게 상속 갈등으로 이어진다. 과거 가족 구조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노후를 책임지며 그에 따라 부모의 자원이 자녀세대로 상속 또는 양도 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으나 현대 사회의 핵가족 구조 하에서의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자원 이전은 부모 부양책임 등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세대의 시각차이 등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김은정, 2013).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 되면서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세대 갈등 중 노부모 돌봄과 부양 그리고 상속을 둘러싼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갈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마.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은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일 영역에서의 압박이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되고 시간, 긴장 그리고 행동에 기반을 두어 세 가지 형태로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한정된 시간에 한 영역의 역할수행에 들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다른 영역의 역할수행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그 영역의 역할 수행이 지장을 받게 되어 발생하는 갈등, 둘째는 한 영역의 역할 수행에서 얻은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이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셋째, 한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는 효과적이었던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하는 행동에는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갈등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족양립 문제에 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기의 접근은 직장과 가정은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므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전통적 성 역할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모호해 졌고, 성별에 따라 역할 간 의미가 상이하다고 강조한 젠더 관점이 주목받기도 했다(양소남, 2011).

이렇듯 일-가족 갈등의 국내 연구 분석은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 직업-직무몰입과 같은 특정한 변수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중 연령만이 일-가족 갈등과 부적 상관성이 있고(옥선화, 2012), 일-가족 갈등의 측정방법이나 전이방향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을 위주로 여성의 돌봄 과부하, 경력단절, 남성의 돌봄 참여 부족 문제, 사회에서의 소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 가족갈등 관련 이론

본 절에서는 가족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학의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가족 갈등은 많은 경우 가족이 가진 고유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및 가족생활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몇 가지 가족학 이론¹⁾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1) 주요 가족학 이론에 관한 설명은 Boss et al.(1993: 유계숙 외 편역, 2003), Fine & Fincham(2013), Smith & Hamon(201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갈등이론

사회 갈등을 설명하는 갈등이론을 가족관계 등 대인관계에 적용한 갈등이론가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갈등 역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구성원이 서로 경쟁하므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갈등이론을 가족에 적용한 대표적인 학자인 Sprey(1969)는 갈등을 모든 관계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갈등이론에서 갈등은 변화와 진보의 토대가 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롭고 좋은 것이다(Smith & Hamon, 2012).

갈등이론가들에 따르면 가족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이다. 가족 갈등에 대해 협상하고, 의사소통 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족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대처방식은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나 분노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에 부정적이다. 즉 가족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면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2. 교환 및 자원 이론

교환 및 자원 이론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모든 관계와 선택에서 잠재적인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며,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내에서 이 자원을 분배하여 사용하므로, 개인의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공유와 분배에 가담하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상충할 수 있다. 이 때 가족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교환 및 자원 이론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 Ingersoll-Dayton et al., 2003; Walster et al., 1978)은 가족 갈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공평성 이론은 가족관계 등 대인관계 내에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주목한다. 여기서 공평성은 분배에 참여한 각 개인이 기여한 바와 얻은 것의 차이를 다른 개인과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지각할 경우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Ingersoll-Dayton et al., 2003). 예를 들어 부부 간에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 부담이 공평한지, 형제자매 간에 노부모 부양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자신이 기여한 바가 많다고 지각하는 가족구성원은 불만,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일한 분배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형제서열, 결혼지위, 경제상황 등 개인적 특성이나 성역할 태도, 전통적 가족규범 등 태도 및 규범적인 요인에 따라 가족구성원마다 공평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Sung & Lee, 2013). 공평성을 평가할 때는 실제로 기여한 것과 얻은 것(actual equity)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공평성(psychological equity)이 중요하기 때문이다(Ingersoll-Dayton et al., 2003).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많이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 젠더와 성역할 태도에 따라 공평성 지각이 다를 수 있다.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부인은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남편은 이 상황이 공평하다고 지각할 수

도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 부양 부담을 장남이 더 많이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장남은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차남은 전통적 가족규범에 따라 공평하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평성 지각의 차이는 가족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Sung & Lee, 2013).

3. 가족체계이론

일반체계이론에서 파생된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의 내적 역동성과 가족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을 하나의 전체(whole)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가족상담의 토대가 되는 이론이다. 가족체계이론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가족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가족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개별 가족 구성원을 분리하여 살펴보기보다 가족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mith & Hamon, 2012; Whitchurch & Constantine, 1993). 가족 갈등의 원인도 개인 수준의 원인보다 가족 수준의 원인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역기능적 가족교류패턴(family transactional patterns)을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보며,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교류패턴을 차단하거나 이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몇 가지 하위체계로 구성되는데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이 하위체계의 예이다. 이러한 하위체계는 상위체계인 전체 가족의 일부분이며 하위체계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의 원인은 부부체계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자녀체계나 형제자매체계의 문제가 부부 갈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4. 젠더 관점

가족은 젠더와 세대라는 씨실과 날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부인,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관계에서 형/오빠와 누나/언니, 여동생과 남동생 등 호칭만 보더라도 젠더는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족 내 성별 위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족이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가족 내 젠더관계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젠더관계의 불평등성은 오늘날 한국가족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 역할 분리가 명확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가사노동 및 가족돌봄은 부인, 며느리 등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성 이데올로기(intensive motherhood ideology)는 성별화된 돌봄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출가외인 규범에 따라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가에 헌신할 것이 기대되며,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친정 부모로부터의 상속 등 원가족에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양성평등한 가족이념이 수용되면서 현대 한국가족 내 젠더관계의 불평등성은 약화되었다.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 및 형제자매와 상호작용하는 기혼여성이 증가하는 등 친족의 상호작용도 양계화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회조사 결과나 통계청 시간사용 조사 결과를 보면 불평등한 젠더관계는 한국가족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이념에 대한 수용도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며, 이념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에서 돌봄은 여전히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의 취업과 관계없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매우 짧으며(통계청,

2010),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도 약 3%에 지나지 않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성별 격차 및 이념과 현실과의 부조화는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가족발달적 관점 및 가족스트레스 이론

가족발달적 관점 및 가족스트레스 이론에서는 가족이 경험하는 주된 생활사건(life events)과 이 사건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가족이 적응하는 시기인 전이(transitions)에 관심을 둔다. 여기서 생활사건은 가족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예측된 생활사건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건도 있다. 가족은 이러한 생활사건과 생활사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된 생활사건(expected life events)이란 결혼, 출산, 자녀의 취학,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은퇴, 배우자의 사망 등 대부분의 가족이 일정한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예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건 전후로 가족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 전이(transitions)를 경험한다. 신혼기 전이, 부모기 전이, 학부모기 전이, 은퇴 후 적응, 빈둥지기 전이 등은 전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은 새로운 가족 환경에 함께 적응해야 하는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unexpected life events)은 재난 및 재해, 사고, 실종, 유괴, 실직, 사업실패, 외도, 중대한 질병의 발병 등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가족원의 사망이나 퇴직은 시점에 따라 노인부모의 사망이나 정년퇴직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자녀나 청·장년기 배우자의 죽음, 30~40대 배우자의 실직 등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벗어나는 경우(off-time)도 많은데 이 경우도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은 일반적으로 예측한 생활사건에 비해 더욱 적응하기 어렵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이 단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등 갈등을 겪고 위기 상황으로 치달는 가족도 흔히 볼 수 있다.

6. 인간생태학적 관점²⁾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및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Bubolz & Sontag, 1993).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환경은 가족의 인접환경인 직장, 보육시설, 학교, 이웃, 지역사회 등에서부터 사회, 경제, 문화, 제도 등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된다. Bronfenbrenner (1979)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였고 Bubolz와 Sontag(1993)은 인위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가족 갈등은 개인이나 가족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회의 경제, 문화, 제도 등의 요인은 가족 갈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 등의 가족

2) 앞서 언급한 가족체계이론이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과 같은 가족체계 내의 역동성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면,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및 가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범이나 모성 이데올로기, 물질주의, 개인화, 직장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 수준의 요인이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초혼연령의 증가 등 사회-인구 수준의 요인도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 불안정성, 높은 주택비, 비싼 대학등록금 등 사회-경제 수준의 요인도 가족 갈등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또한 가족정책, 교육제도 등 사회-제도 수준의 요인도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제3절 가족갈등의 대응: 결과 및 영향

가족갈등은 대응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 및 영향은 차이를 보인다 (Garvarino & Sheman, 1980). 가족갈등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긴장감에서부터 표출된 행동, 말다툼이나 폭력의 사용(김양희, 1993; 김종숙, 1997; 전요섭·성금옥, 2008) 등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즉 가족갈등은 가벼운 불만으로 시작된 언어적 표현부터 폭력까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 갈등의 발생 자체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족 갈등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유형의 사회 갈등과는 달리 '나와 그들'간의 갈등이 아니라 '나와 우리' 또는 '우리와 우리'의 갈등이므로 더욱 고통스럽다(유영주 외, 2004). 이러한 가족갈등은 심해지면 가족구성원들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며 저주, 욕설,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의 언어적 학대와 침묵의 벽이나 위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전요섭·성금옥, 2008), 가족을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갈등과정 중에 벌어지는 싸움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불신이나 회피, 분노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Kresiberg, 1998; 유영주, 2004 재인용). 이렇게 갈등은 파괴적이고 혼

동적이며(Roesnstock & kutner, 1967), 가능한 피해야 할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Straus, 1979), 갈등의 대처과정은 인간의 적응적 성장을 도우는 긍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며(Berry, 2008), 사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히려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확립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경산·이선미, 2000).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갈등은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욕구나 견해의 차이에서 표출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다양한 가족구성원 간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은희, 2004).

이와 같이 가족 갈등은 개인 및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족 갈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수준에서도 대처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갈등, 부모-자녀 갈등 등 가족의 하위체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른 하위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집단이므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에 따르는 고통은 사회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갈등은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지므로 가족갈등대처방식은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Garvarino & Sheman, 1980).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 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족 갈등을 건설적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가족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등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갈등을 파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의 수준이 상승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심각한 경우 관계를 해체하거나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갈등과 차이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Kresiberg, 1998; 유영주, 2004 재인용).

제4절 가족갈등 관련 연구동향 분석

1. 국내 연구동향

가. 부부갈등

부부갈등으로 부부간 갈등,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신성 외, 2013; 김사라형선, 2010; 박태영 외, 2010; 김영희, 2007; 최미경, 2012; 정봉희 외, 2009; 문창희 외, 2010; 문영숙, 2011; 고동우, 2011).

부부간 갈등 연구를 보면, 강신성 외(2013)는 노년기 부부갈등요인(의사소통, 가정생활, 공격행동, 경제갈등)과 생태체계요인(폭력, 자기중심성, 가출)이 황혼이혼(이혼생각, 이혼시도)과 범죄충동(폭력, 자기중심성,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 자기중심성충동이 높을수록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 차이는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사라형선(2010)은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불안은 더 많이 경험하고 용서수준은 낮았으며, 용서수준이 높으면 덜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영 외(2010)은 재혼가족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서 재혼가족 성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재혼부부의 갈등반복과 재혼 모-자녀 간의 갈등반복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또한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혼의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재혼가족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첫째,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관계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고, 둘째, 재혼 모-자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악순환되었으며, 셋째,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 재혼가족의 특수성은 초혼과 재혼의 입장차이, 혈연과 비혈연의 관계 차이로 구분되었다.

김영희(2007)는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 방식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부부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갈등표출 대처방식을, 남편은 아내보다 철회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갈등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과 아내는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기간 8~14년 사이의 남편은 갈등회피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아내는 자신의 갈등 표출과 남편의 갈등표출이 조절효과를 갖는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동우(2011)는 부부갈등과 여가경험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첫째, 부부갈등이 클수록 해방감 및 저항의 여가경험 수준은 증가하며, 둘째, 여가정체성이 강할수록 해방감 추구하고 조화 추구의 여가경험을 하며 반대로 저항의 여가경험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편들만의 특징으로, 부부갈등이 클수록 그리고 여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일탈의 여가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최미경(2012)은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통제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319명의 남녀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부부갈등, 부모의 통제, 그리고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부부간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고, 이는 자녀의 불안, 위축,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부부갈등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부부갈등과 부모의 행동통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봉희 외(2009)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창희 외(2010)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아개념, 우울, 또래관계에 대한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갈등의 빈도가 높고 갈등 정도가 강할수록 자아개념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또래관계에서도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우울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숙(2011)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갈등정도,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나. 가족 내 세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관련 연구로는 가족 내 세대갈등 문제를 분석한 연구를 비롯하여,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간의 갈등, 부모와 청년기 자녀 간, 그리고 부모와 성인기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조성남 외, 2003; 남순현, 2004; 김영희 외, 2008; 장혜인 외, 2014; 박태영 외, 2010).

가족 내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조성남 외(2003)는 가족이라는 일차적이고 특수한 집단 속에서 표출되는 세대 간의 차이 양상을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나 세대 간 단절로 발전되거나 해소되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가족문화의 변화 양상, 부모-자녀 세대 간의 차이와 가족이 갖는 특수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 심층면접 조사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첫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내의 세대구분자체가 매우 통합적·탄력적 특성을 지니고, 둘째,

가족은 ‘기능적 통합’이 아닌 ‘정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남순현(2004)은 사회현상으로 인한 가족 내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 내 세대 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대갈등의 해결책을 탐색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현대가족의 변화, 가족 내 세대갈등, 노년기 부모-중년기 자녀 관계, 중년기 부모-청년기 자녀 관계, 노년기 조부모-청소년기 손자녀 관계, 세대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김영희 외(2008)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가족갈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 및 자기기재식 조사를 실시하여 성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우울 및 비행에 관한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은 가족 응집성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여학생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모두 우울과 비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족갈등은 우울과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인 외(2014)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갈등해결 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간 갈등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갈등해결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자녀 갈등을 다룬 최근의 질적 연구로 이영미 외(2013)는 부모기대로 인한 청소년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모가 갈등대처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심층 면담을 통해 탐색하여, 부모기대로 인한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극복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확인하는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정에서 청소년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박태영 외(2010) 위기를 맞은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는 가족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가족치료 개입 후 변화된 모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모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묶일 수 있었고, 치료개입 방법으로는 '자기 노출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다룸', '내담자와 신뢰 관계 형성하기', '내담자의 통찰을 돕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소개하기'가 적용되었다.

다. 형제자매 갈등

형제-자매 관계는 평생 내내 유지되는 독특하고 수평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점점 연구비중이 높아져가는 가족 연구 분야가 되었다(Connidis, 2001). 최근 형제-자매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상속 관련법의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노부모 부양에 있어 주부양자녀와 더불어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양 분담을 요구하게 되면서(조병은, 2006), 가족 내 주부양자녀와 다른 형제-자매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erner·Chiriboga·Tierney(1991)는 주부양자녀 이외의 형제-자매들이 노부모부양에 참여 할 때 갈등이 적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조병은(2006)은 노모 부양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지원 및 이에 대한 공평성 평가가 노모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 형제자매의 공평성 평가가 주부양자녀가 느끼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유교주의와 평등주의 가족규범이 한국의 형제자매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Sung-Lee(2013)는 1960년대 태어난 기혼 한국인 남녀를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현대 한국 가족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양립하지 못하면서도 현대 한국에서 공존하고 있는 유교적 및 평등적 가족규범 모두가 형제·자매 관계의 원동력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형제·자매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치에서 갈등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규범적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형제·자매간 비슷한 규범적 기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애로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듯 최근의 많은 연구는 단순하게 노부모를 봉양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성인 형제·자매 관계를 논의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고 (Connidis, 2007), 가족 내 형제·자매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변화하는 가족규범의 흐름에 맞는 형제·자매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 부모-성인자녀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돌봄은 주로 부양 및 돌봄,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속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등이 수행되었다(이여봉, 2009; 김혜경 외, 2010; 석재은, 2009; 김미혜, 2011; 김미혜 외, 2011; 김기경 외, 2001; 김은정, 2013)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돌봄 및 부양 관련 연구를 보면, 이여봉(2009)

은 기혼여성과 노부모 간 부양지원 모습과 세대 갈등의 연관성이 딸과 친정부모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세대 간 갈등관계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동거/비동거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기존조사자료 재분석을 통하여 며느리와 시부모의 동거경우에는 갈등수준이 크고, 시부모의 필요에 의해 동거부양이 이루어질 경우, 시부모와 대화를 하는 관계에서 높은 갈등수준이 관찰되었다.

김혜경 외(2010)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와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또는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 중 장년 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석재은(2009)은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떤 인식차이를 보이고,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보다 가족과 국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족자원(자녀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로 김미혜(2011)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가정해체 등 가족 문제로 인해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를 대신하는 경우와 여성취업 등의 이유로 인한 부분적 또는 협력적 의미의 양육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의 갈등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김미혜 외(2011)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에서 손자녀 양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밝혔다.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남성일 때, 조부모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이 높았고, 조부모가 종교가 없는 경우, 비취업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도 갈등이 높았다. 또한,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부모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가 느끼는 가족관계 만족도나 배우자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속을 둘러싼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연구를 보면, 김기경 외(2001)는 가족 내의 상속에 대한 의식과 실제 상속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현재 한국 가족의 재산상속의 의식과 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의식과 실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12곳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재산상속의 의식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그 행동은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 정도는 상속 의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 정도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2013)은 부모세대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기대, 자녀세대로의 상속계획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부모세대의 자산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둘러싸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2011년도 국민의 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젊은 세대일수록 상속에 대한 기대도, 상속계획, 상속갈등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과 부양의무간의 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높은 상속기대도는 가족 내 세대 간 상속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젊은 세대는 상속에 대한 기대도는 높은 반면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50~60대의 상속계획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상속을 둘러싼 가족 내 세대 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극히 소수이나 성인기 자녀의 부모의존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 일-가족 갈등

일과 가족 갈등 관련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 외에 여성의 돌봄 과부화와 경력단절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조운진·유성경, 2012; 이재림·손서희, 2013; 고동우, 2011; 송진영 외, 2003).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 관련 연구를 보면, 조운진·유성경(2012)은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한국의 기혼 취업 여성들의 환경적지지, 개인특성, 일-가족 양립 경험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인 취업 여성 302명의 자료를 모여 구조방정식 모형 방법을 채택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일-가족 갈등'보다는 '일-가족 향상'을

더 높게 경험하고, 일과 가정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는 여성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어 '일-가족 갈등'을 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전략인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하여 '일-가족 향상'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림·손서희(2013)는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일 관련 자원 및 지각, 자녀양육 관련 자원의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의 일-가족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330명의 맞벌이 여성을 조사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가족 갈등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고, 가족-일 갈등은 역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ABCX모델과 연결하여 설명할 때 일 관련 자원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일-가족 갈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돌봄 과부화 및 경력 단절, 남성의 돌봄 참여 부족으로 인한 소외 영역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송진영 외(2003)는 직장기혼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남편과의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여성가족패널 3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첫째, 부부갈등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분담만족도는 부부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을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과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언을 하였다.

2. 국외 연구동향

Davies·Cummings(1994)은 부모의 갈등(Marital)이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으며,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은 공격성과, 주의력 결핍, 품행장애, 비행 등의 심리적 문제(psychological)에 노출됨을 밝혔다. 즉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며, 부모의 우울성향과 신경증적 성향은 자녀의 내면화된 장애, 공격성,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 된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 내에서는 부부관계 뿐만이 아닌 아버지-아동, 어머니-아동 관계의 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Barber·Erickson(2001)은 청소년의 사회적 친밀감, 즉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로서 청소년의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는 750명의 두 집단인 11~13세와 14~17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5년과 1997년 3년 연속 매년 평가된 패널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적 주도권과 사회적 친밀감에는 대인관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는 동료, 교사, 지역사회와도 관련이 있지만, 가족관계가 가장 큰 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행동의 제어(Behavioral Control)는 가장 유의미한 가족 변수로서 작용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Psych Control)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dy·Fincham(1996)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적, 외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을 촉진시키는 속성(Conflict Promoting Attribution)이 부정적인 부부관계(Negativity in Marital Context)에 매개변인으로 하여 비효율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Ineffective Communic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부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행동은 아동의 충동적인 속성 및 부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체별과 가혹한 징벌,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가족갈등의 원인 진단

- 제1절 개인 수준 원인 진단
- 제2절 가족 수준 원인 진단
- 제3절 사회 수준 원인 진단
- 제4절 시사점



3

가족갈등의 원인 진단 <<

이 장에서는 제2장 1절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의 가족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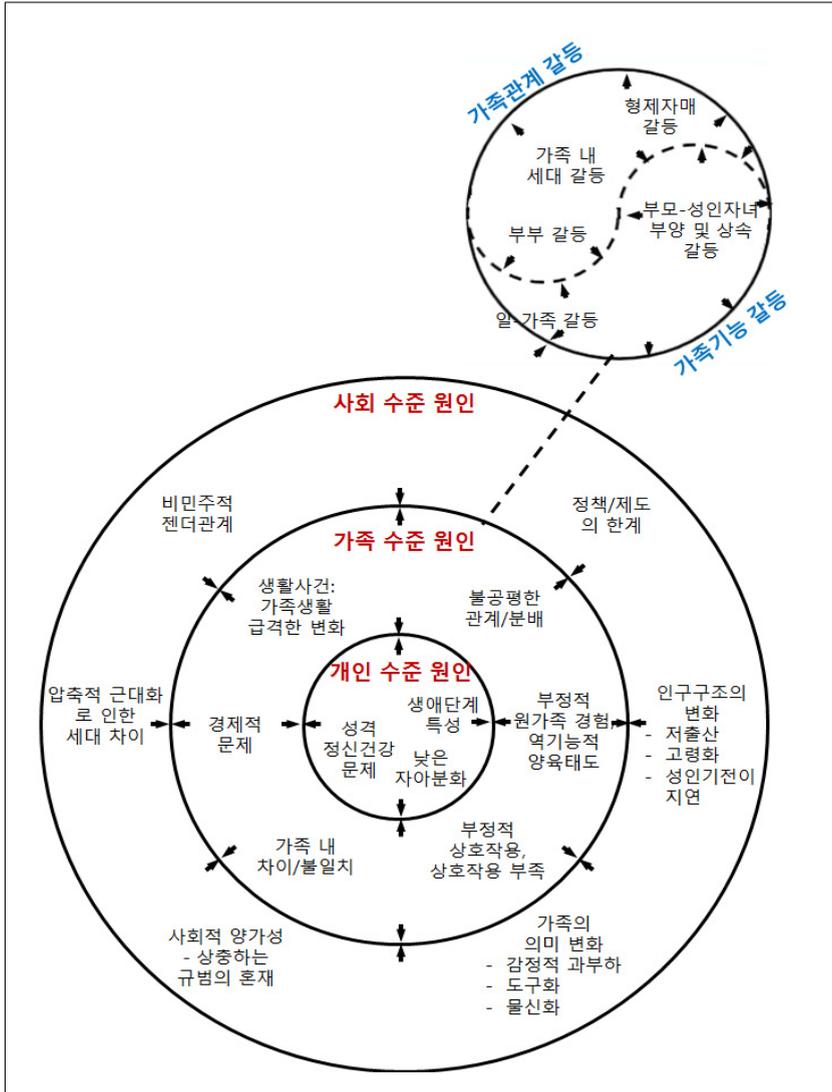
가족 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원인도 있으며, 갈등의 유형에 따라 특수한 원인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갖는 가족관계나 가족기능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 갈등이나 가족기능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갈등(부부 갈등³),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과 두 가지 유형의 가족기능 갈등(부모-성인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 일-가족 갈등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을 진단한 후, 이러한 원인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족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⁵).

가족 갈등의 원인 진단을 위해 이 장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은 제2장 2절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논의의 간명성을 위하여 이 장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가족 수준과 사회 수준으로 나누며,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사회 수준의 어떠한 측면이 가족 갈등

-
- 3) 이 장에서 부부 갈등은 이혼 이전까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경험하는 갈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 4) 일-가족 갈등은 다양한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발생하지만 이 장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가족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 5) 가족 갈등의 원인은 성격에 따라 갈등의 원인인 동시에 갈등의 결과인 것도 있다. 가족 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 장에서는 원인이 되는 요인에서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인과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논의한다.

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한다.

[그림 3-1] 가족 갈등의 생태학적 원인 진단



[그림 3-1]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진단한 가족 갈등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이 모델은 가족체계와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Gross et al.(1980)이 개발한 모델을 가족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연구자가 변형한 것이다. [그림 3-1]에서 환경은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사회 수준의 동심원으로 구성되며, 가족 수준에서 뻗어 나간 우측 상단의 원은 가족 갈등을 개념화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 갈등은 제2장 1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으로 나뉜다. 가족관계 갈등에는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이 포함되며, 가족기능 갈등에는 부모-성인자녀 부양(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 및 상속 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포함된다. 일-가족 갈등은 가족 외부의 일과 가족 내부라는 두 체계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가족갈등의 원 경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3-1] 우측 상단의 원에서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점선으로 구분하고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도록 하였다. 또한, 우측 상단 원 안의 다섯 가지 유형의 가족 갈등은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형을 가깝게 배치하였다. 가족기능 갈등 중 부모-성인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은 가족관계 갈등 중 세대 갈등 및 형제자매 갈등과 연결되므로 이 두 가지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였다. 가족기능 갈등 중 일-가족 갈등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부의 역할 갈등을 핵심으로 하므로 가족관계 갈등 중 부부 갈등과 가깝게 배치하였다.

[그림 3-1]의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사회 수준의 동심원 안에는 가족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진단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갈등의 원인 역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동심원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 갈등의 개

인 수준 원인으로는 생애단계 특성,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아분화를 포함하였다. 둘째, 가족 수준 원인으로는 생활사건(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문제, 가족 내 차이와 불일치, 부정적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 부족, 부정적 원가족 경험 및 역기능적 양육태도, 불공평한 관계 및 분배를 포함하였다. 셋째, 사회 수준 원인으로는 비민주적 젠더관계,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세대 차이, 사회적 양가성(상충하는 규범의 혼재), 가족의 의미 변화(감정적 과부하, 도구화, 물신화),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정책 및 제도의 미흡을 포함하였다. 개인, 가족, 사회 수준의 원인은 다른 수준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수준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넣었다. 또한 그림에 제시한 원인 이외에도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심원 안에 충분한 여백을 두었다.

제1절 개인 수준 원인 진단

1. 생애단계 특성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인의 생애과정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음을 보고 생애단계 또는 발달단계별 특성에 주목해 왔다. 생애단계별 특성은 개인이 가족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애단계별 특성에 따라 가족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애단계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생애단계 특성이 어떻게 가족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하기도 하는 아동기(childhood)는 신

체, 언어 및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아동기에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에서부터 애착 형성 등 심리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양육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자로서 상당한 시간, 에너지, 재화를 아동에게 투입해야 한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부모는 제한된 시간, 에너지, 재화의 한도 내에서 아동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양립해야 하므로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adolescence)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개인 내적·외적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Blos(1967)는 이차개별화(the second individuation)를 제시하였다. 이차개별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전지전능하다고 여겼던 부모를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래집단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일탈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예측불가능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청소년 자녀와 이를 통제하려는 부모 사이의 갈등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이다.

청년기(early adulthood 또는 emerging adulthood)는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기이다.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기(transition to adulthood)로, Arnett(2000)은 청년기가 청소년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닌 새로운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용어를 주창하였다. 발현성인기의 특징은 정체성 탐색, 불안정,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낀 느낌, 자기에게 집중,

가능성의 시기라는 점인데(Arnett, 2000),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청년의 취업과 결혼이 지연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 자녀’는 이 시기 부모-자녀관계를 특징 짓고 있다. 청년기 자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한편으로는 의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양가적 속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중성은 청년기의 부모-자녀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부모-자녀 갈등과 같은 가족 내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청년기는 ‘3포세대’,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듯이 취업난, 스펙경쟁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라는 점과 함께 ‘등골 브레이크’ 등의 용어를 통해 나타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이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에 위험요소가 된다.

중년기(middle adulthood)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시기이다. 중년기 부모는 대체로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자녀를 두고 있어서 자녀의 교육, 결혼 등을 뒷바라지하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증가한다(한경혜·이정화, 2012). 이러한 중년기의 특성은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자녀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가족 내 세대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도구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년기는 노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중년기 자녀는 노부모와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높아져(한경혜·이정화, 2012)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즉 중년기는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자녀를 지원하는 동시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가 많은 등 양방향의 부모-성인자녀 돌봄 갈등에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late adulthood)는 노화에 결과로 신체적 기능의 쇠퇴를 경험

하며,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면서 가족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자녀의 진수에 따라 부부만 남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도 많지만,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서로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성인자녀 부부 및 손자녀와의 세대관계 역시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노년기의 세대관계는 세대별 경험이나 관심사, 가치관의 차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노부모-성인자녀 갈등,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조부모-손자녀 갈등 등 관계 측면의 가족 내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가족기능 갈등과도 관련이 있다. 노부모는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며,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 지원 등을 통해서 성인자녀를 지원하기도 한다. 반대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쇠퇴나 건강의 악화, 수입의 감소, 사회관계망의 축소 등으로 의존성이 증가하면 성인자녀의 경제적·도구적·정서적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지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방이 제공하는 지원이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이나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을 겪게 된다.

2.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건강 문제도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성격적 특성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로는 낮은 자존감, 불안정 애착, 우울, 신경증, 불안, 회피 성향, 의존성, 스트레스, 통제적인 성격, 내적 통제성 부족, 까다로운 기질, 폭력성, 중독,

이기주의, 미성숙 등 매우 다양하다.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는 배우자와 목표, 의견 등에서 불일치를 지각하는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함으로써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알콜, 약물, 도박 등에 대한 중독이나 폭력성, 의처증 또는 의부증은 부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해결하기도 어렵다.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우면 갈등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김광웅·문수경, 2005)도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 대학생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는 연구(장휘숙, 2009)도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와 공격성, 폭력, 비행, 가출, 절도 등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를 보이기도 하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청소년 자녀가 이러한 문제행동이나 중독을 경험할 경우 부모는 자녀를 보호, 감독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청소년 자녀와 잦은 충돌 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성격 특성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도 가족 내 세대 갈등에 대한 위험 요인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회피 성향, 통제적인 성격, 내적 통제성 부족 등 심리적 부적응은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부모-자녀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알콜, 약물, 도박 중독이나 학대, 폭력적 성향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를 위기 상황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이다.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나 노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특성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노부모의 의존적 성향

과 노부모-성인자녀 갈등에 정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박인아·엄기욱, 2007)가 있으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가구주이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안지연·한은영, 2013)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는 일-가족 갈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격 특성 중 외향성, 성취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는 일-가족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주·한주희, 2009). 다른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일-가족 갈등 간에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유성경 외, 2011).

3. 낮은 자아분화

낮은 자아분화 수준은 가족상담 분야에서 가족관계 갈등의 주된 배경요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1982)의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인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내적 차원에서 자아분화는 감정을 사고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자아분화는 가족관계 등 대인관계에서 관계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정서에 융합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아분화 척도인 DSI-R(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를 개발한 Skowron & Schmitt(2003)은 자아분화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의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에 휩싸여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 둘째, 자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타인의 압력이 있을 때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나-입장("I" position), 셋째,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의 강도가 높아질 때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자 하게 되는 상태인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넷째,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타인의 가치, 기대, 신념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타인 융합(fusion with others)이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이다.

자아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되지 못할 경우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능력이나,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잃지 않는 능력인 자아분화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가족관계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아분화가 잘 되지 못하면 부모와 나, 나와 자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좌우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려고 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못하고 자율성이 부족하며 의존적이고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Bowen, 1982). 부모로부터 분화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썩어루족 자녀로 인한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은 한 가지 예이다. 또 다른 예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모나 자녀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거나,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부모-자녀 갈등 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결혼 후에 원가족(family of origin)과 생식가족(family of creation)을 분리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많다(정문자·이종원, 2004; 한영숙, 2007). 원가족과 생식가족을 분리하지 못하는 낮은 자아분화 수준의 개인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중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

문에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표 3-1〉 부모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 부부들

* 부모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 부부들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른바 ‘깡겨루족’들의 이혼 사례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게는 결혼은 당사자 간 문제라는 당연한 원칙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송 조서관은 “부모의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듯 이뤄지는 이혼이 많다”고 전했다.

(중략) 송 조서관은 이혼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부부들은 조정할 때도 부모를 데리고 온다”며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권유해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이 집안싸움으로 되는 순간 온 가족이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혼 후에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계속 만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자료: 1) 노진호(2014. 3. 15). [현장 속으로] 가정법원서 들여다본 이혼 풍속도. 중앙일보.
 2)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62050&cloc=olink|article|default

제2절 가족 수준 원인 진단

1. 생활사건: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

생활사건(life events)이란 가족생활에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상의 사건이다. 가족은 생활사건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가족갈등의 가능성을 높인다. 제2장 2절 발달적 관점 및 가족스트레스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가족 수준에서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는 예측된 생활사건 때문인 경우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인 경우도 있다.

예측된 생활사건(expected life events)이란 결혼, 출산, 자녀의 취학,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은퇴,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등 대부분의 가족이 일정한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건이다. 가족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전이(transitions)를 경험한다. 신혼기 전이, 부모기 전이, 은퇴 후 적응, 빈둥지기 전이 등은 전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은 새로운 가족 환경에 함께 적응해야 하는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첫 자녀의 출생이라는 생활사건 전후의 부모기 전이(transition to parenthood)는 양육자로서 상당한 시간, 에너지, 재화를 어린 자녀에게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의 공유시간이나 역할분담에서 큰 변화와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에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다(Feeney et al., 2001). 이 과정에서 새로 부모가 된 두 사람은 부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종단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생 후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luwer, 2010; Twenge et al., 2003).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돌보는 역할과 책임을 더 많이 맡고 역할 과부하를 겪으면서 자녀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게 될 경우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부모는 제한된 시간, 에너지, 재화의 한도 내에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양립해야 하므로 자녀의 출생이라는 생활사건은 일-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맞벌이 부인은 자녀돌봄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면서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은퇴(retirement) 역시 예측된 생활사건이면서도 부부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다. 특히 한국의 중노년기 가족에서 남

편은 단독으로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생활보다는 일 중심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퇴로 부양자 역할을 상실한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권력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고 식사 등 일상 생활을 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남성 우월적 부부관계를 추구하면서 부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이삼식 외, 2011).

한국 가족에서 자녀의 결혼은 자녀의 진수나 독립을 의미하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다. 성인이 되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와는 달리 한국 가족에서는 결혼을 통해 자녀가 독립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이라는 생활사건을 전후로 진정한 의미의 빈둥지기 전이(transition to the empty nest)를 경험하는 부모가 많다. 자녀의 결혼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새로 형성한 가족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와 둘만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자녀의 독립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부부만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울, 내적 갈등 등의 빈둥지 증후군과 함께 부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자녀의 독립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결혼한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부모-성인자녀 갈등,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최근에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도구적 지원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함으로써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이나 상속 관련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unexpected life events)이란 재난 및 재해, 사고, 실종, 유괴, 실직, 사업실패, 중대한 질병의 발병 등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은 일반적으로 예측한 생활사건에 비해 더욱 적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이 더욱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다양한 가족 관계 갈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관계의 해체나 단절을 경험하는 가족도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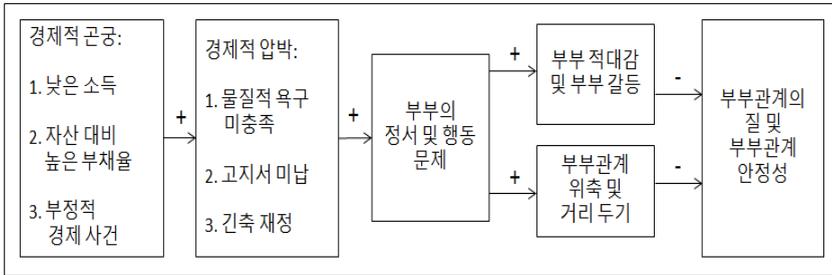
2. 경제적 문제

소득이나 자산은 가족생활에서 스트레스원이나 변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거나 가족기능의 수행을 어렵게 하므로, 가족관계 갈등이나 가족기능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족은 다른 소득 계층의 가족보다 가족 갈등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경혜 외, 2011)에서는 부부 갈등의 원인 중 경제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3년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 중 경제 문제는 성격 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14).

Conger et al.(2010)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통해서 가족 관계 갈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그림 3-2]과 [그림

3-3]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el)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개인적 문제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관계 위축, 거리 두기 등의 가족관계 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부부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형제자매 갈등을 유발하는 과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2] 부부관계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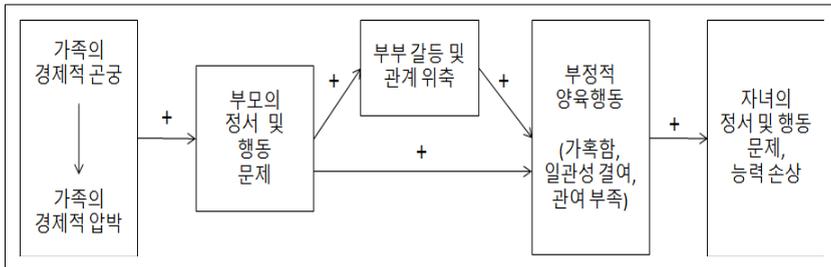
자료: Conger et al. (2010)를 변안함.

[그림 3-2] 부부관계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경제적 곤궁(economic hardship)은 낮은 소득, 자산 대비 높은 부채율, 부정적인 경제사건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으로 이어져서 가족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과금, 집세 등 고지서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긴축재정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가족이 경제적 압박을 겪게 되면 이로 인해 부부는 우울, 불안, 분노, 소외 등의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와 약물사용, 반사회적 행동 등의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s)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며, 그 결과 부부관계에서 적대적인 상호작용

용이나 부부 갈등(couple hostility & conflict) 및 배우자에 대한 지지적인 행동의 철회와 거리두기(couple withdrawal & distancing)가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부부 갈등 및 상호작용의 악화는 부부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부관계 안정성을 낮추게 된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실증적 연구 결과 한국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 이후 수집한 한국 부부의 자료에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한 Kwon et al.(2003)은 경제적 압박은 부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인의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거쳐 부부 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가족 스트레스 모델이 한국 상황에도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이미숙 외(2000)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긴장사건이 부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빈곤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서 가족 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강수진, 2010).

[그림 3-3]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확장: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료: Conger et al. (2010)를 변안함

[그림 3-3]는 부부관계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자녀와의 관계로 확장시킨 모델이다. 확장된 모델에 따르면 부부 갈등은 가혹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관여를 하지 않는 부정적 양육행동(harsh, inconsistent, uninvolved parenting)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child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impaired competence)를 유발하게 된다. Conger 등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최종 결과로 설명했지만, [그림 3-2]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자녀의 이러한 정서 및 행동 문제는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적대감, 관계 위축, 거리두기로 이어짐으로써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형제자매 갈등도 유발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기능 갈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노부모의 생활비나 용돈, 병원비 등 경제적 부양을 위한 소득이나 자산을 필요로 한다.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직접 돌보지 못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를 위해서도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성인자녀의 부양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김지영, 2005). 따라서 노부모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도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양 부담감 등 높은 수준의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을 겪을 것이다.

캥거루족, 헬리콥터 부모 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준비 비용, 주택비 등 성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로서의 역할 갈등이나 부담감, 죄책감 등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부모의 성인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다.

한편,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가족 및 친족 간의 경제적 상호부조를 기대하는 한국 가족의 특성상 경제적 문제는 성인기 형제자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ung & Lee, 2013). 실제로 형제자매의 생활고,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은 형제자매 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가 경제적 지원이나 대출, 빚보증, 사업자금 지원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겪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가 노부모 부양 등에서 다른 형제자매보다 기여도가 적을 경우, 특히 장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 지차남의 기여도가 클 경우 형제자매 관계 갈등이나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Sung & Lee, 2013).

경제적 어려움은 상속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상속법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 시, 피상속자의 자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 받고 피상속자의 배우자는 그 1.5배를 받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분을 더 요구하고 다른 자녀나 형제자매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 갈등이나 상속 문제로 인한 형제자매 갈등을 겪기도 한다.

3. 가족 내 차이와 불일치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 성격, 의견, 기대 등의 차이나 불일치는 서로 부족한 부분이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존중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더욱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A와 B는 다르다’와 ‘A와 B는 틀리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현대 한국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차이나 불일치의 영역은 다양하다. 가치, 태도, 신념, 이념의 차원일 수도 있으며, 성격, 생활양식, 습관 등 일상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 부모부양, 성역할, 종교,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구성원들은 가치, 태도, 신념, 이념의 차이를 겪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사소한 생활습관이나 역할분담에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수많은 순간에 불일치를 겪게 된다.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불일치에 적절하게 협상·적응하지 못하면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성격유형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높은 갈등을 경험하였다(이하식·김경연, 2005). 가족이 경험하는 차이보다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경직성(rigidity)이 부부 갈등 등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Knox & Schacht, 2010).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는 가족과는 달리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가족이 더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원가족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었으므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차원에서 차이를 경험한다. 이러한 차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차이에 적응하고 협상하는데 실패하면 부부 갈등을 겪게 된다. 2013년 우리나라 이혼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점(통계청, 2014)은 차이와 불일치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배우

자는 최대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원가족에서 성장하였고, 다른 배우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는 원가족에서 성장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각기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받은 의사소통 규칙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규칙에 대해 협상하고 재조정하지 않으면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04).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간 심리적 육구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허진자고 재홍, 2008).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역시 부부 갈등과 유사하게 두 가족의 배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경우가 많다. 시부모나 처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의 원가족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기보다 시가 또는 처가의 문화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반면,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의 원가족 문화를 고집하고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4. 부정적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 부족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가족은 언어적·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집합이다. 따라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내 상호작용은 가족관계의 핵심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족관계 갈등의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 방식이 역기능적이거나 상호작용 자체가 부족하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가족 내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 또는 제2장 2절 가족체계이론에서 언급한 역기능적 가족교류패턴(family transactional patterns)은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의 주된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의사소통 방식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족 내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한 가지로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인 유형(개방형 또는 친밀형)과 역기능적인 유형(폐쇄형 또는 권위형, 비난형, 불성실형, 희생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정현숙, 2009). 이러한 유형 분류를 사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가족의 갈등 수준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현숙(2009)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권위형, 어머니가 비난형 의사소통을 할 때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높았다.

부부 갈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상호작용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Gottman이 제시한 부부의 네 가지 파괴적인 감정 반응(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이 있다(Gottman et al., 1998). 네 가지 파괴적인 감정 반응에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있는데, 부부가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갈등이 악화된다. 여기서 비난(criticism)은 배우자의 성격이나 특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고, 방어(defensiveness)는 핑계를 대거나 잘못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경멸(contempt)은 모욕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려는 취지로 배우자의 자아감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신공격, 비아냥거림, 비꼬는 농담, 배우자가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담쌓기(stonewalling)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기, 대화의 주제 바꾸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집 나가기 등이다.

이상과 같은 Gottman의 부정적 상호작용 방식은 부부 갈등 이외에도 세대 갈등이나 형제자매 갈등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상자의 내용은 한

잡지에 소개된 장서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인데, Gottman의 부정적 상호 작용 패턴 중 비난, 방어, 경멸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장모 이렇게 하면 장서갈등 생긴다!

장모 이렇게 하면 장서갈등 생긴다!

1. 사위 이름을 불러가며 하대한다면
2. 소소한 물건을 사주고 꾸준히 생색을 낸다면
3. 돈을 빌미로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면
4. 사위의 사생활에 엄마처럼 잔소리를 퍼붓는다면

(중략)

7. 처자식 앞에서 사위를 무시한다면
8. 사위들을 사사건건 비교한다면
9.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한다면
10. 딸을 통하지 않고 사위에게 직접 불만을 내뱉는다면 (후략)

자료: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4&contents_id=8193

한편, 가족 내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 자체의 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결과 부부 갈등,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과 같은 가족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부 간에도 자녀양육이나 경제활동 등 가족 내 역할이나 책임에 몰입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나 상호 작용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자녀 간에도 상당수의 가족이 부모는 일터에서, 자녀는 학교나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와 30분 미만으로 대화하거나 전혀 대화하지 않는 청소년이 약 50%에 달했다(여성가족부, 2012).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자녀의 16.8%가 본인 부모와

명절,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만 접촉하였고, 배우자의 부모와 특별한 날에만 접촉한다는 비율은 26.7%로 더 높았다(여성가족부, 2010).

이러한 부부 간,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의 부족은 서로의 일상생활이나 심리상태, 관심사나 걱정거리 등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가족의 응집성이나 결속도,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나 가족으로서의 결속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호 이해 관계가 상충될 경우 부부 갈등,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과 같은 가족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에서 부양, 상속 문제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서로 협상을 해야 할 때 다른 가족구성원을 배려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이나 일-가족 갈등과 같은 가족기능 갈등을 겪게 될 위험도 커진다.

5. 부정적 원가족 경험 및 역기능적 양육태도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개인의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이 가족관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태어난 가족인 원가족(family-of-origin)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폭력, 학대, 갈등, 애착대상이나 역할모델의 부재 등)이나 상처는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갈등적이거나 폭력적인 원가족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투사되어 부부 갈등이나 가족 내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원가족 경험은 세대 간 전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나 형제자매관계로 이어져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형제자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부모로서의 역할 모델을 찾지 못한 경우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부모-자녀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한 가지도 성장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델이 부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 한국가족에서 기대되는 친구 같은 아버지 ‘프렌디’는 부양자 역할만을 수행하던 과거의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과거와 같이 부양자 역할에만 충실한 나머지의 자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모-자녀 갈등을 경험하거나, 현대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모델 없이 스스로 역할 정체성과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원가족 경험과 함께 가족관계 갈등의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권순명, 1993)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부모의 통제적·권위주의적 양육태도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Baumrind(199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형(민주형), 권위주의형, 허용형,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멘토 같은 권위형(민주형)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통제적 성격의 권위주의형 부모와 방임형, 허용형 부모 모두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Parker 등(1979)은 양육태도를 돌봄과 과보호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 중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및 청년 자녀의 자율성 확립, 진로 결정 등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권소희·이재림, 2014). 양육태도에 대한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

제, 간섭, 과호보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자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적 부모-자녀관계 관계는 자녀가 청소년기나 청년기인 경우에도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중·노년기에도 지속될 경우 뿌리 깊은 가족 내 세대 갈등으로 남은 우려가 있다.

〈표 3-3〉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늦게 태어난 내 탓이지

***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늦게 태어난 내 탓이지**

(전략) 재영씨는 부모님의 지원을 최대한 받고 싶다. 형만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서울에 20평대 방 두 개짜리 집을 구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도 보태달라고 부모님께 말했다. “차별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엄마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미안해 하는 엄마를 보면 ‘결혼한다고 부모님을 벗겨 먹는 건가...’ 싶다가도, 잘사는 형을 보면 ‘공평하게는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형이 밋지는 않다.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게 부러울 뿐이다.

예전에는 제사 등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장남의 무게가 있으니까 부모가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게 용인될 수도 있었다. 요즘 세상에 장남 따로 차남 따로가 어디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신은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드리지만 형은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재영씨 집안은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 부모님은 장남이라고 꼭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옛날식 강요도 하지 않는다. 장남이라고 집에서 해준 것에 비하면 형이 장남으로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부모님은 집 에다 결혼 비용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 이제 아이까지 봐주고 있다. 조카를 계속 봐 줘야 할 텐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도 부모 덕만 보려고 한다고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였다면 겪지 않을 일을 둘째라 겪는다고 생각하니 재영씨는 더 포기하기 힘들어졌다. 부모님께 자신은 늘 두번째였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도 옷도 형이 늘 먼저였는데 이젠 결혼에서도 밀린다. 누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둘째로 태어났다.

자료: 1) 김민경(2013. 12. 6),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늦게 태어난 내 탓이지. 한겨레.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326.html

부모의 차별적인 양육태도는 형제자매 갈등의 원인이 된다(전귀연·임주영, 2006). 장남, 맏이, 아들, 막내 등 특정한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자녀는 가족관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

다. 남아선호나 장자우대 전통이 있는 한국 가족의 특성상 부모가 장남이나 아들에게 가족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에서 소외된 자녀는 차별을 받았다는 상처를 안게 되고 편애의 대상이 된 형제자매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자매 갈등의 위험은 매우 크다. 또한 갈등적 형제자매 관계는 노부모 부양 부담을 분담하거나 부모 사망 후 재산을 분할할 때, 형제자매 간의 의견 일치나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갈등은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이나 상속 갈등을 유발할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

6. 불공평한 관계 또는 분배

제2장 2절에서 소개한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공평성 이론에 따르면 자원의 분배나 안정적인 인간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와 얻은 것의 차이를 다른 개인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이때 자신이 그 분배나 관계에 타인보다 기여한 바가 많고 얻은 것은 적다고 지각하면 불만, 분노 등을 경험하며, 자신이 기여한 바가 적은 반면 얻은 것은 많다고 지각하면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 전자와 후자 모두 그 분배나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에 공평성 이론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는 자녀나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사노동을 하고, 재산증식을 위해서 경제적 기여를 하기도 하며, 애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 감정, 시간, 에너지 등의 자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

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가 비슷하게 기여하고 비슷하게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공평한 관계가 되어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 비해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더 많이 기여하면서도 얻는 것이 적다고 지각할 경우 그 관계는 불공평한 관계가 된다. 불공평한 부부관계에서 얻는 것이 적은 배우자는 불만, 분노, 적대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기여하는 것이 적은 배우자는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관계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의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부인이 수행한다면, 부인은 더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성인기 형제자매가 공유하게 되는 가족 내 역할,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이나 가족의례에서의 역할 분담에서도 공평성이 중요하다(Sung & Lee, 2013). 두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을 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정서적·도구적 부양에 더 많은 돈,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양의 분담에서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불만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으며, 기여도가 적은 형제자매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형제자매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할 경우 형제자매 갈등과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명절, 제사, 생일, 결혼 등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의례에서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형제자매 갈등, 특히 며느리들 간의 동서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Sung & Lee, 2013).

부모의 사망 후 재산상속은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속법 상에서는 자녀간의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분할

과정에서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의 규모,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도, 생활고 등을 토대로 더 많은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 형제자매 간에 선호하는 재산분할의 기준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협의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지각하는 형제자매는 불만을 느끼고 다른 형제자매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 상속 갈등 및 형제자매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3절 사회 수준 원인 진단

1. 비민주적 젠더관계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젠더관계는 가족관계 갈등 및 가족기능 갈등의 중요한 배경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적인 젠더 관계와 가부장제는 조선시대 중반 이후 강화되었으며, 이 때 정착된 남녀의 내외규범은 산업화 시대에 공사영역의 이분법적 분리 규범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남성 1인 부양자 모델을 확립하였다.

오늘날 젠더관계의 평등성이 증가하고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부장제의 제도적 기반은 사라졌으나, 한국 가족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성의 부양자 역할과 여성의 돌봄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 및 노인 돌봄이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성별화된 돌봄이 유지되고 있다. 자녀를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도 존재한다. 친족법이나 상속법에서 아들과 딸, 남편과 부인을 차별하는 조

항이 사라졌으나 실제 가족생활에서는 출가외인 이념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 외도, 폭력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성별로 다른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문화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비민주적 젠더관계는 오늘날에도 한국 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족기능의 수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화된 아동 및 노인 돌봄 관행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자녀는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도 강력하다. 그 결과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양립하면서 수많은 취업모가 일-가족 갈등, 기능적 과부하,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다(손서희·이재림, 2014; 이재림·손서희, 2013).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성의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12년에도 2.8%에 그쳐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여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일-가족 갈등,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취업모가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거나(손서희·이재림, 2014) 남성과는 달리 자녀양육기 여성에서만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현상은 성별화된 돌봄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손자녀 돌봄의 책임은 조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이재림, 2013; Lee & Bauer, 2010, 2013). 이 때 조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의 한 가지 예이다.

자녀 돌봄이 어머니 위주로 이루어지고 모성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부모-자녀관계 역시 어머니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것은 한국 가족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가족관계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와 밀착되기도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 모-자녀관계는 친밀한 동시에 간섭적이고 갈등적인 양가적 속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모-자녀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소외된다. 아버지의 소외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인 돌봄 역시 부인, 며느리, 딸 등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은 부인 등 배우자가 53.0%, 며느리와 딸이 수발하는 경우가 26.4%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2). 특히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을 며느리에게 기대하면서 ‘효부’를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노인 돌봄을 의지할 경우 시부모를 부양하는 며느리는 부담감, 시간과 공간 사용의 구속, 육체적 부담,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을 겪게 된다. 며느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부양 관련 갈등이 시부모에게 표출될 경우 고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이 남편에게 표출될 경우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여러 명의 성인자녀와 며느리 중 한 명의 며느리에게만 부양 부담이 집중될 경우 형제자매 갈등이나 동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이외에도 한국 가족에서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부계적 특성이 강한 한국 가족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kin-keeper로서 명절, 제사, 생일, 가족모임 등에서 음식 및 선물 준비나 친족의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가족의 ‘명절 증후군’ 등은 가족의례가 여성에게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례 및 친족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긴장을 초래함으로써 고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할 분담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며느리들 사이의 동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지나친 역할이 가족 갈등의 위험 요인이라면, 기혼 딸을 출가외인으로 간주하는 젠더관계의 비민주성도 가족 갈등의 위험 요인이다.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분할에서 기혼 딸을 차별하는 관습은 최근 상속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상속법에서는 협의분할 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균분상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상속에 대해 협의를 할 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기혼 딸을 배제하거나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기혼 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상속 갈등이나 형제자매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했다는 아래의 기사는 출가외인 이념 등 젠더관계와 상속 갈등 및 형제자매 갈등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표 3-4〉 별들의 '권리 찾기' 늘어

딸들의 '권리 찾기' 늘어

(전략)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하 유류분 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 사람들은 한결같이 “60대 이상 부모 세대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 사상과 남녀차별 의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류분 소송에서 여성 원고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번 재산을 ‘대물림한다’는 생각과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노후에 부양을 받으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50대 여성 김모 씨를 비롯한 3명의 자매는 오빠 2명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심각히 고민했다. 수백억 원대 재산가였던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남기고 딸들에게 집 한 채를 나눠 가지라고 했기 때문. 김 씨 자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과 아들이라고 해외유학을 보내주고 사업자금을 대준 것까진 이해한다. 그런데 유언이 공개되고 우리가 불만을 표시하자 오빠들조차 ‘출가외인이 왜 친정 재산을 탐내느냐’고 몰아붙였다. 그게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오빠들과 갈등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자신들의 몫으로 더 받기로 한 자매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우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게 더 억울하다”고 했다.

자료: 1) 박은경(2014, 2.) [세태 리포트] '젠' 앞에선 가족애도 실종. 신동아, 653호 (p247~255)
 2)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1/21/201401210500001/201401210500001_1.html

젠더관계의 평등성이 증가함에 따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젠더관계에 대한 수용도에서의 성별 격차가 가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남아선호 사상이나 출가외인 이념이 약화되는 등 젠더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젠더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와 양성평등한 성역할 분담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가족관계의 민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때로 부부 갈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남성 우위의 위계적 부부관계와 평등한 부부관계를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적 또는 탈전통적 태도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0).

이렇듯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성별격차는 부부의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남성 우위의 위계적인 젠더관계와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반면, 부인은 양성평등한 젠더관계와 성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면, 이 부부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상대방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여기서 젠더에 따른 부부의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는 가족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는가, 부부의 섹슈얼리티를 누가 주도하는가, 외도나 폭력에 대해 성별 이중기준(double standards)을 적용하는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불일치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평등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의 마찰을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정현숙, 2009)한 바 있다.

2.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세대 차이

세대 차이는 가족 내 세대 갈등과 같은 가족관계 갈등과 부모-성인 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과 같은 가족기능 갈등에서 중요한 잠재적 요인이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세대가 다른 가족구성원은 세대별로 이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차이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09)로 대표되는 한국의 근대화는 세대별 경험과 정서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박경숙 외, 2013).

오늘날 세대별 특성은 각 세대에 붙여진 이름만으로도 차별성이 드러난다. 산업화·근대화 세대인 노부모세대에서부터 5060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있으며, 7080 세대가 주축이 되는 X세대, Y세대에 이어 N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가 있고, 현재는 7080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고 있다(최원기, 2006).

〈표 3-5〉는 현대 한국의 세대 갈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소개되는 산업화·근대화 세대(5060세대, 베이비붐 세대), 민주화 세대(386세대), 정보화 세대(N세대)가 경험한 역사적·사회적 특수성과 세대별 가족관계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정현숙, 2013). 이렇듯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서로 다른 인생의 시기에 경험한 세대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때 가치, 태도, 신념, 이념의 차이나 습관, 생활양식에서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세대 차이가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수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표 3-6〉은 다양한 학자들의 진단을 정현숙(2013)이 요약한 것이다.

<표 3-5>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고려한 세대구분과 특징

세대 구분	역사적, 사회적 특징 (김문조, 2003; 함인희, 2013 등; 박길성 등, 2005)	결혼, 가족관계적 특징*
산업화 세대/ 근대화 세대/ 5060 세대 베이비 붐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4.19, 5.16을 경험 • 베이비붐 세대(1954년부터 61년까지 출생한 집단): 절대적 빈곤의 유년기, 중고등학교시절 반공교육, 새마을 운동, 근대화 경험, 사회적 정체감이나 세대적 동질감 부족 • 성장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민해움 • 가족과 국가에 헌신 • 기성세대로서의 권위 상실 • '97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은퇴압박에 직면함 • 열심히 일하고도 고령화 대비에 취약함 •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에 미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도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결합이 강조 되는 제도적 결혼(institutional marriage)# • 가족이데올로기
민주화 세대/ 386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해움 • 386세대 위의 시기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등을 공유한 집단 • 뉴미디어를 활용해 사회활동을 경험함 •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동시 추구 • 개인적 욕구와 공동체적 가치사이서 고민함 • 경제적 풍요와 외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함 • 2002년 대선 후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부상 • 고용불안과 자녀교육에 사달림 • 마지막 유교적 전통주의 수용자, 높은 현실 적응력, 연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인구학적 혁명(저출산, 고령화)과 2차 인구학적 혁명(인구감소현상과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을 동시에 경험 • 동료애, 우정,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는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
정보화 세대/ N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통신기기의 활용으로 정보환경에 친숙, 정보화 선두 •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 • 정치경제적 이념보다 문화코드로 동질감을 느낌 • 한국적 규범, 가치보다 세계적 기준 중시 • 생존보다 삶의 질 추구 • 청년실업의 직접적 피해자 • 가상세계에서 공동체 구축 • 독립성, 자율성, 적극적 자기표현, 익명성, 자기중심적 행동유형과 사교광식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민족주의적 성향, 국가나 사회 위해 개인희생은 감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혁명의 세대(Goldschneider, 2000),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역세대회의 주역(박길성 등, 2005) •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 (부부관계에서 역할이 유연해지고, 두 사람 간 협상이 자유롭고, 자신의 자아감의 발달이 중요한 민족의 척도가 되는 결혼)# • 부부관계에서 평등에 대한 강조(가사에 대한 공평한 분담, 공동의 의사결정, 비위계적인 의사소통, 평등적인 성관계와 상호존중과 호의 등)(Harris, 2006)

주: 세대구분과 특징은 김문조(2003), 함인희(2013), 박길성 등(2005) 등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가족관계적 특징은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을 정리하여 저자가 추가함(Burgess & Locke, 1945)
 자료: 정현숙(2013).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p. 33.

〈표 3-6〉 다양한 학자들의 세대차이와 갈등의 원인과 결과, 방안

연구자	세대	원인	결과/방안
Attias-Donfut & Arber (2000)	복지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대 젊은 세대와 성인세대간의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가치관이나, 의식과 행동차이 최근 갈등은 젊은 세대, 성인세대, 은퇴자 세대 등 3세대 간의 경제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와 혜택의 합리적인 분배
박영균 (2009)	청소년 -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디지털 분리현상)로 인한 갈등 사회문화(정치, 경제, 계층, 대중매체 등)의 변화로 인한 세대간 경험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역할 등의 변화로 인한 갈등 연령별 발달단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신뢰의식, 가족의식과 정치의식에서의 차이
남순현 (2004)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족으로의 변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 가족의 심리적 자원으로써 애정, 보살핌과 같은 관계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족유형 가변성 수용 각 세대의 상호 교환적 가치 수용 효에 대한 재조명
이창호 (2002)	청소년 - 성인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적 조건과 경험의 차이 인간발달단계상 특성, 변화수용 능력차이 일상적 행동과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및 가치관 차이 자기효능감 차이 	
조성남·최유정 (2003)	부모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 자녀간 상호적인 권위 인정 집단주의에서 개인중의로 변화(부모와 자녀의 분절된 하루주기, 자녀들 요구 중심의 의식주 생활방식으로 변화, 개별적인 여가 양식,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 부모자녀간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변화 의사소통 기술 부족과 빈번한 감정적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정에 기반한 부모의 양보/협의 자녀세대의 부모세대 이해 양계적 친족 관계 정착으로 자녀와 부모세대 통합 종교, 의례 등 이벤트적 활동으로 가족공동체 형성
함인희 (2013)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축적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이질적인 생애사에 따른 세대정서의 차이 세대갈등 속에 포함된 계급갈등적 요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젊은세대의 사회적 치적 파워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간 편견 극복, 세대별 가치관/정체성 이해를 위해 교육 공정한 분배정책, 연령차별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N세대 정치사회화 및 새로운 정치문화 구축

자료: 정현숙(2013).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p. 15.

세대 간의 극명한 차이는 가족 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 가족의 초고령 노인(oldest-old)은 노부모가 권력과 자원을 갖지 못하고 성인자녀에게 일방적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이삼식 외, 2011). 이들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자녀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과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세대이다. 이러한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 부양과 성인자녀 지원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인 2030세대는 노인부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3포 세대', '88세대'로서 스스로를 부양하기에도 벅찬 세대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샌드위치 세대와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2030세대 간에는 호혜성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렇듯 불공평한 세대관계는 가족 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부양의식에서의 차이는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부모-성인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7〉 며느리만 '시월드'? 사위들에겐 '처월드' 있다

*** 며느리만 '시월드'? 사위들에겐 '처월드' 있다**

'시월드'의 고충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다. 난 남자였으니까. 이게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결혼한 뒤에야 알았다. 며느리에게 시월드가 있듯, 사위들에겐 '처월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처월드엔 거침없는 독설 하이킥을 날리시는 장모님이 계셨다. 당신 딸도 살췌는데 사위만 보면 살 빼라 하고, 당신 딸이 술 더 먹는 데 사위만 보면 술 끊으라고 하고, 당신 딸 씹씹이 헤픈 건 생각 안 하시고 돈 많이 벌라신다. 올 엄마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자료: 1) 한겨레. (2012. 10. 19) 며느리만 '시월드'? 사위들에겐 '처월드' 있다. 한겨레.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629.html

이질적인 생애경험으로 인한 세대 차이는 매우 사소한 지점에서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자녀양육 방식 차이나 가사노동 방식 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생활습관의 차이로 장모와 사위가 장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3. 사회적 양가성: 상충하는 규범의 혼재

사회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lence)이란 ‘태도, 신념, 행동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규범적 기대’ 또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규범적 기대가 상충함’을 의미한다(Merton & Barber, 1963: 94-95, 99). 사회적 양가성 개념은 가족 내 역할에 대해 상충하는 규범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양가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Connidis & McMullin, 2002)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전통, 근대, 탈근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한국가족에는 유교적이고 위계적인 가족규범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규범이 공존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해서도 상충하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양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모 부양이 아들, 특히 장남의 책임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맡아야 한다거나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기대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장경섭, 2009), 유교적 가족규범과 평등적 가족규범의 편의주의적 혼재(성미애, 2012; Sung & Lee, 2013),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신수진·최준식, 2002)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한 가족 내에서도 성별, 연령, 형제서열, 취업여부 등에서 따라 상충하는 기대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국 가족에서 사회적 양가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부모-자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와 같이 세대 관계에 대한 규범이나 기대이다. 세대 간 위계나 부모부양, 상속 등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효 규범, 장유유서, 장자우대, 출가외인 등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세대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모부양이나 상속에서 장남과 지차남,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적인 규범과 가치가 존재한다. 이렇듯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대관계 규범과 가치가 혼재하는 사회적 양가성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의 역할, 자녀나 손자녀의 역할에 대해 세대별로 매우 다른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부모세대 또는 조부모세대는 세대별 위계에 따른 수직적인 세대관계를 기대하지만, 자녀세대 또는 손자녀세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대관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부모는 효 규범이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자녀는 부모와 평등한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으로서 자녀의 선택이나 자율성을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주장한다면 기대의 차이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형제자매 갈등도 사회적 양가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Sung & Lee(2013)는 장유유서, 장자우대, 출가외인 등 위계적·차별적 가족 규범과 수평적·평등적·민주적 가족 규범이 혼재하면서 형제관계와 및 며느리들 간의 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한국 형제자매관계 및 동서관계의 특수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장남과 맏며느리는 노부모 부양이나 가족의례에 대한 책임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평등규범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차남 및 차남의 며느리와 책임을 분담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차남 및 차남의 며느리는 전통적 규범을 토대로 장남과 맏며

느리가 갖고 있는 특권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형제 또는 동서 간에 상충하는 규범이 존재할 경우 관계에 긴장 요소가 되고 서로에게 불만을 갖게 됨으로써 형제자매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속 갈등에도 사회적 양가성이 영향을 미친다. 상속법 상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가외인으로 여겨지는 기혼 딸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속분을 받는 경우에 상속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자 형제들은 출가외인 등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따라 기혼 여자형제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여자 형제들은 양성평등한 상속법에 의거하여 균분 상속을 기대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가 상속과 관련하여 수용하는 가족규범이 상충되면 상속의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상속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4. 가족의 의미 변화: 감정적 과부하, 도구화, 물질주의

사회적으로 부부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도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도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이 제도로서의 의미보다 우애적인 결합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고(한남제, 1989), 그 결과 부부관계에서 친밀성, 정서적 충족, 애정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 간의 낭만적 사랑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대상임을 인식하게 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서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은밀한 사적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게 되고, 감정적 과부하(emotional overloading)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장경섭, 2009)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을 강조하고 분홍색, 꽃다발, 키스 등 여성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묘사하고 표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이 여성화(feminization of love)되는 결과를 낳았다(Cancian, 1986). 즉 부부의 사랑이 서정주의적으로 묘사되고 여성화되면서,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높은 기대를 하게 되고 낭만적인 방식인 방식의 애정표현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한국 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도구화 및 정서적 기능의 약화를 특징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1; 장경섭, 2009).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자녀의 성적과 대학입시 준비, 스펙 경쟁, 취업 준비 등이 부모-자녀관계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는 도구화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과보호하며, 자녀는 학벌·출세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여 물질주의적 성향을 띤 세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아이러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출세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가족 내 세대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도 같은 맥락에 있다.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과소비와 과시소비로 대표되면서 주류 소비 집단으로 등장하였다(장경섭, 2009). 이들은 고급 브랜드를 소비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상품을 일컫는 ‘등골 브레이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체면 문화와 결합

한 결혼식 역시 매우 화려해서 ‘부모의 눈물로 웨딩마치’를 울린다고 할 정도이다(김수혜 외, 2012). 그 결과 부모는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기능적 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부담을 주면서 가족 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물질주의의 영향은 재산 증여 및 상속 갈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조차도 지원하지 않아서 했다가 생활고를 겪는 상속 빈곤층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는 한 가지 예이다(박민제, 2014). 또한 부모가 사망한 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자매가 법정 분쟁이나 싸움을 벌이고 결국에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사례는 도구화된 가족관계와 물질주의가 상속 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준다.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도 도구화된 세대관계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시가나 처가로부터 생활비, 주거비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거나, 손자녀 양육지원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로 인해 시부모 또는 처부모와 도구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이재림, 2013; Lee & Bauer, 2013).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편익주의적인 세대 관계로 인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타협을 하기 어려워 지고 결국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과 같은 가족 내 세대 갈등을 겪게 된다.

5.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성인기 전이 지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에 간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나 평균 기대수명 등의 인구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고

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곧 백세시대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노년기가 길어지는 것은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은퇴하고 자녀가 결혼한 후 한 명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 두 사람만이 생활하기는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노년기 부부만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부의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남성 노인은 남성 우위의 부부관계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기대하는 반면, 여성 노인은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남성 노인이 은퇴한 후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도 부인의 일방적인 가사노동이나 수발을 요구할 경우, 부인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과거 남성 지배적 노인 부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오늘날 여성 노인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남성 노인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노년기가 장기화되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를 노인이 수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노인이 장기간 수발할 경우, 돌보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고 이것이 돌봄을 받는 배우자에게 표출되면서 노인의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의 결과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의 위험도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노부모를 수발하는 성인자녀가 피로 누적, 심리적 부담 등 기능적 과부하 증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노인 자녀가 노부모를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도 증

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과 소자녀화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부모-자녀 갈등 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의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자녀에게 몰입하고 헌신하는 경향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그 결과 며느리나 사위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위험도 높아졌다.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초혼 및 출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 청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이 지연되는 현상도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이러한 성인기 전이의 지연(delayed transition to adulthood) 또는 성인발현기(emerging adulthood)의 출현(Arnett, 2000)은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 및 가족 내 세대 갈등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녀를 지원하느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의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노후가 장기화되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자녀의 기대와는 달리 부모는 재산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므로(이삼식 외, 2011) 이것이 세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정책 및 제도의 한계

현 정책 및 제도의 과도한 가족 의존성은 가족의 과부하를 초래함으로

써 가족기능 갈등 및 가족관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섭(2011)은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그리고 명시적·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의무·권리를 강화하고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제도적 가족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제 제도 및 관행에 나타난 제도적 가족주의를 분석한 결과, 장경섭 외(2013)는 정책 및 제도가 명시적으로 가족 의존적인 경우도 있으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정책 및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가족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교육제도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가정하는 것은 전자의 예이며, 청년 자녀의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소득을 부모의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정책의 과도한 가족 의존성은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제도적 가족주의 하에서 가족은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돌봄과 부양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돌봄과 부양은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이나 일-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서 노부모로부터 증여를 요구하는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이나 부모 사망 후 상속분을 더 주장하게 되는 상속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역할에 의존하는 교육제도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입시 위주로 도구화되면서 가족 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부관계마저도 자녀교육에 밀리면서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성인자녀 지원 관련 갈등 역시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의 지원으로 대체하는 제도적 가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정책 및 제도의 가족 의존성 이외에 학벌 지상주의의 입시 위주 교육제도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학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애정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은 심각하게 부족해 졌다. 또한 자녀는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모는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고 희생한 결과,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그 결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가족 내 세대 갈등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부모-청소년 자녀관계의 문제는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성인자녀 지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소통이 부족한 상태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노인이 된 이후에도 쉽사리 좁혀지지 못하고 부양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노부모 부양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제4절 시사점

지금까지 가족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원인, 가족 내적 과정,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거시적 요인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기존 접근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사회 수준의 다양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였다.

개인 수준의 원인으로는 생애단계 특성,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아분화 등 기존에 가족상담, 심리학, 아동학, 인간발달학, 정신의

학 등에서 주로 논의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애단계 특성과 가족 갈등을 연결해서 진단함으로써 가족 갈등이 정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가족 수준의 원인으로는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사건, 경제적 문제나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와 불일치, 가족 내 부정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패턴, 상호작용 부족, 부정적 원가족 경험,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불공평한 관계 및 분배와 같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진단하였다. 가족관계 갈등 및 가족기능 갈등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수준의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수준의 원인으로는 비민주적 젠더관계,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세대 차이, 상충하는 규범이 혼재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양가성, 감정적 과부하·도구화·물신화 등과 같은 가족의 의미 변화, 저출산·고령화·성인기 전이 지연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 및 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 수준의 원인을 진단한 결과, 가족 갈등은 대부분 한국 사회가 압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의 양상이 변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가족 갈등이 가족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사회 수준의 갈등이나 위험 요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족 갈등의 원인 진단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매우 다면적이고 복합적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 역시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복잡성과 다원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

제1절 분석대상 특성

제2절 전반적 가족갈등 양상

제3절 가족관계 갈등양상

제4절 가족기능 갈등양상

제5절 가족갈등 유형별 대응욕구

제6절 시사점



4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 <<

제1절 분석대상 특성

가족갈등 양상 및 욕구 도출을 위해 일반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와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 태도 및 실태조사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부 및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일가족 양립환경과 갈등경험, 원인 및 갈등대처방식,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가. 인구적 특성

조사완료된 일반국민 1,000명의 인구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508명, 여성 492명으로 각각 50.8%와 49.2%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이 19.6%, 30대 21.0%, 40대와 50대는 46.4%, 60대는 13.0%로 중장년층이 전체 연령의 67.4%를 차지하였다. 이들 평균연령은 43.23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또는 동거가 67.6%로 2/3을 상회하였고, 사별·이혼·별거는 2.2%로 미미하였으며, 미혼은 30.2%로 거의 1/3 분포에 이른다. 기혼자의 결혼기간을 보면 10년 미만이 14.5%에

불과하였고, 10~20년 미만 21.6%, 20~30년 미만 26.4%, 그리고 30년 이상이 37.5%로 평균 결혼기간은 23.76년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8	50.8
여성	492	49.2
연령		
19~29세	196	19.6
30~39세	210	21.0
40~49세	243	24.3
50~59세	221	22.1
60~69세	130	13.0
평균연령(세)	43.2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676	67.6
사별이혼별거	22	2.2
미혼	302	30.2
결혼기간		
5년 미만	46	6.6
5~10년 미만	55	7.9
10~20년 미만	151	21.6
20~30년 미만	184	26.4
30년 이상	262	37.5
평균 결혼기간(년)	23.76	
자녀수		
없음	204	29.2
1명	94	13.5
2명	315	45.1
3명 이상	85	12.2
형제자매유무		
있음	938	93.8
없음	62	6.2
동생유무		
있음	234	23.4
없음	108	10.8
비해당	658	6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자녀수는 무자녀 비율이 29.2%로 거의 1/3에 이르며 1~2명이 58.6%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3명 이상은 12.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자녀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93.8%로 대다수에 해당되었고, 동서가 있는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나.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이하는 10.4%에 불과하였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32.6%로 1/3에 이르고, (전문) 대학 이상은 57.0%로 과반수를 상회하여 고학력의 사회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비율은 72.6%, 비근로자는 27.4%로 거의 3/4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없음을 포함하여 200만원 미만은 17.0%, 200~300만원대는 37.0%로 1/3정도이었고, 400만원 15.6%, 500만원 이상은 30.4%로 소득분포가 높은 편이었다. 맞벌이 부부여부는 33.7%로 1/3에 해당되었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는 33.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4-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학력		
중학교 이하	104	10.4
고등학교	326	32.6
(전문) 대학 이상	570	57.0
근로여부		
근로자	726	72.6
비근로자	274	27.4

구분	빈도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1	17.0
200~299만원	138	15.6
300~399만원	190	21.4
400~499만원	138	15.6
500만원 이상	270	30.4
맞벌이 여부여부		
맞벌이 부부임	337	33.7
맞벌이 부부아님	339	33.9
비해당	324	3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다. 가구특성

가구특성을 보면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인 비율이 47.4%, 가구주 배우자 30.5%이었고, 가구주의 자녀는 20.8%로 1/5이었다.

가구원의 규모는 1~2인가구는 28.5%, 3~4인 가구 55.2%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5인 이상은 16.3%로 우리나라 가구원수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구 16.8%, 1인 가구 10.2%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표 4-3〉 응답자의 가구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74	47.4
가구주의 배우자	305	30.5
가구주의 자녀	208	20.8
기타	13	1.3

구분	빈도	비율
가구원수		
1인	102	10.2
2인	183	18.3
3~4인	552	55.2
5인 이상	163	16.3
가구형태		
1인가구	102	10.2
부부가구	168	16.8
부부+미혼자녀	613	61.3
한부모+미혼자녀	17	1.7
3세대가구	71	7.1
기타	29	2.9

주: 1) 가구주와의 관계의 기타에는 가구주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포함됨.

2) 가구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2.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상속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족 내 세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가족돌봄과 상속갈등의 원인 및 대처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가. 인구적 특성

조사완료된 일반국민 1,000명의 인구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50.8%, 여성 49.2%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40.6%, 40대와 50대는 46.4%, 60대는 13.0%이었고, 평균연령은 43.56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또는 동거가 69.8%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사별·이혼·별거는 4.8%로 미미하였으며, 미혼은 25.4%

로 거의 1/4 분포에 이른다. 기혼자의 결혼기간을 보면 10년 미만이 15.6%에 불과하였고, 10~20년 미만이 23.2%, 20~30년 미만 27.9%, 그리고 30년 이상이 33.2%로 평균 결혼기간은 23.09년으로 나타났다.

자녀규모는 무자녀 비율이 25.7%로 1/4에 해당되었고, 1~2명이 66.3%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3명 이상은 7.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친부모가 생존한 비율은 75.3%로 3/4에 이르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가 생존한 비율은 48.6%로 과반수 정도이었다.

〈표 4-4〉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8	50.8
여성	492	49.2
연령		
19~29세	196	19.6
30~39세	210	21.0
40~49세	243	24.3
50~59세	221	22.1
60~69세	130	13.0
평균연령(세)	43.56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698	69.8
사별이혼별거	48	4.8
미혼	254	25.4
결혼기간		
5년 미만	54	7.2
5~10년 미만	63	8.4
10~20년 미만	173	23.2
20~30년 미만	208	27.9
30년 이상	248	33.2
평균 결혼기간(년)	23.09	

구분	빈도	비율
자녀수		
없음	192	25.7
1명	201	26.9
2명	294	39.4
3명 이상	59	7.9
친부모 생존여부		
생존	753	75.3
사망	247	24.7
시부모/장인장모 생존여부		
생존	486	48.6
사망	239	23.9
비해당	275	27.5

주: 1) 친부모의 생존에는 두 분 모두 생존한 경우와 한분만 생존한 경우 모두 포함됨.

2) 시부모/장인장모 생존에는 두 분 모두 생존한 경우와 한분만 생존한 경우 모두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나.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이하는 11.0%에 불과하였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34.7%로 1/3에 이르고, (전문) 대학 이상은 54.3%로 절반을 넘어 교육수준의 향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비율은 77.3%, 비근로자는 22.7%로 3/4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없음을 포함하여 200만원 미만은 14.8%, 200~300만원대는 36.1%로 1/3정도이었고, 400만원 16.6%, 500만원 이상은 32.4%로 중간소득층 이상이 많았다. 생활비 부담자는 가구주 본인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28.9%로 맞벌이로 인한 생활비부담자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4-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학력		
중학교 이하	110	11.0
고등학교	347	34.7
(전문) 대학 이상	543	54.3
근로여부		
근로자	773	77.3
비근로자	227	22.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1	14.8
200~299만원	141	15.9
300~399만원	179	20.2
400~499만원	147	16.6
500만원 이상	287	32.4
생활비 부담자		
가구주 본인	563	56.3
가구주 배우자	50	5.0
가구주+배우자	289	28.9
가구주의 성인자녀	38	3.8
가구주 부모	18	1.8
기타	42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다. 가구특성

가구특성을 보면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인 비율이 46.7%, 가구주 배우자 32.1%이었고, 가구주의 자녀 18.4%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원의 규모는 1~2인가구 26.1%, 3~4인 가구 59.6%로 3/5의 분포를 보였고, 5인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구 15.2%, 3세대가구 8.5%, 1인 가구 7.9% 순이었다.

〈표 4-6〉 응답자의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67	46.7
가구주의 배우자	321	32.1
가구주의 자녀	184	18.4
기타	28	2.8
가구원수		
1인	78	7.8
2인	183	18.3
3~4인	596	59.6
5인 이상	143	14.3
가구형태		
1인가구	79	7.9
부부가구	152	15.2
부부+미혼자녀	611	61.1
한부모+미혼자녀	38	3.8
3세대가구	85	8.5
기타	35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제2절 전반적 가족갈등 양상

1. 가족갈등 발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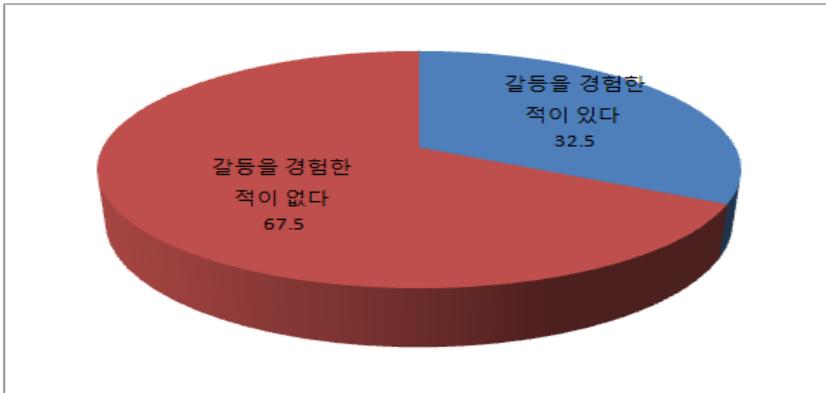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라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가족가치관 약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에 따라 가족기능 약화 등으

로 가족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가족가치 약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며,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인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의 심화가 예상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가족갈등 경험측정은 최근 1년간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였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⁶⁾ 조사결과,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주: 전체 가족갈등 발생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가구규모 및 가구형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자녀유무별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⁶⁾ 기존 면접조사에서 이루어진 가족갈등 경험측정은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화조사라는 한계상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구원규모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18.6%~35.0%로 가구원규모가 많을수록 가족갈등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 3세대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순으로 가족간에 갈등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여기에 1인가구를 포함한 이유는 최근 분거로 인한 1인가족의 분포가 높고, 원가족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자녀가구가 무자녀가구보다 가족갈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7〉 가구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명)

구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계(수)	χ^2
전체	32.5	67.5	100.0(1,000)	
가구규모				
1인	18.6	81.4	100.0(102)	10.037*
2인	33.9	66.1	100.0(183)	
3~4인	33.9	66.1	100.0(552)	
5인 이상	35.0	65.0	100.0(163)	
가구형태				
1인 가구	18.6	81.4	100.0(102)	15.697**
부부가구	36.9	63.1	100.0(168)	
부부+미혼자녀가구	33.9	66.1	100.0(613)	
한부모+미혼자녀가구	23.5	76.5	100.0(17)	
3세대 가구	38.0	62.0	100.0(71)	
기타	17.2	82.8	100.0(29)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35.8	64.2	100.0(204)	.923
유자녀가구	39.7	60.3	100.0(49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경제요인인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을 보면, 생활비 부담자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생활비 부담자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41.5%,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36.8%로 전체보다 높았으며, 가구주 본인과 성인자녀가 부담하는 경우는 22.2%~31.4%로 전체보다 낮았다. 이는 생계책임자가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가족갈등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가구소득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33.0%~34.7%로 가구소득이 300만원~500만원의 소득층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8〉 가구소득 및 생활비부담자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명)

구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계(수)	χ^2
전체	32.5	67.5	100.0(1,000)	
가구소득				.167
200만원 미만	33.8	66.2	100.0(151)	
300만원 미만	34.1	65.9	100.0(138)	
400만원 미만	34.7	65.3	100.0(190)	
500만원 미만	34.1	65.9	100.0(138)	
500만원 이상	33.0	67.0	100.0(270)	
생활비부담자				16.331**
가구주 본인	31.4	68.6	100.0(558)	
가구주의 배우자	41.5	58.5	100.0(82)	
가구주와 배우자	36.8	63.2	100.0(247)	
가구주의 성인자녀	22.2	77.8	100.0(36)	
가구주의 부모	12.5	87.5	100.0(48)	
기타	37.9	62.1	100.0(2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의 특성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을 보면 가구주 연령 및 결혼상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근로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18.0%~43.0%로 50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족갈등 경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3배 높은 가족갈등 경험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가구주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저학력층인 경우 고학력층보다 가족갈등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구주가 비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보다 가족갈등 경험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9〉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명)

구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계(수)	χ^2
전체	31.9	68.1	100.0(474)	
가구주 성				
남성	31.5	68.5	100.0(387)	.107
여성	33.3	66.7	100.0(87)	
가구주 연령				
19~39세	18.0	82.0	100.0(139)	19.253***
40~49세	37.7	62.3	100.0(138)	
50~59세	33.9	66.1	100.0(118)	
60~69세	43.0	57.0	100.0(79)	
가구주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36.3	63.7	100.0(364)	18.651***
사별·이혼·별거	36.4	63.6	100.0(22)	
미혼	12.5	87.5	100.0(88)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1	58.9	100.0(56)	3.685
고등학교	34.0	66.0	100.0(147)	
(전문) 대학 이상	28.8	71.2	100.0(271)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	30.5	69.5	100.0(416)	2.761
비근로	41.4	58.6	100.0(5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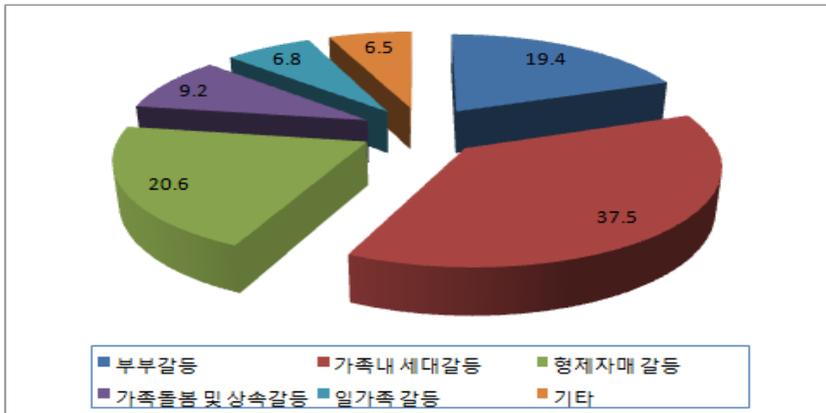
2. 가족갈등 유형

가족갈등 유형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이다.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이 19.4%로 전체 응답자의 1/5이 해당되었고, 가족 내 세대갈등은 37.5%로 1/3을 초과하였다. 그 중 부모와 자녀갈등이 28.3%로 많았고, 고부 및 장서 간 갈등도 9.2%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20.6%로 1/5 수준이었다. 그중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16.3%로 많았고, 동서 간 갈등은 4.3%로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가족기능상에서 오는 갈등은 16.0%로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은 9.2%이었고, 일가족 갈등은 6.8%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타도 6.5%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4-2]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을 보면 가구규모 및 가구형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유무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0〉 가구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구분	가족관계 갈등						가족기능 갈등		기타	계(수)	χ^2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일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고부 및 장서 갈등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형제 자매 갈등	동서간 갈등					
전체	19.4	28.3	9.2	-	16.3	4.3	9.2	6.8	6.5	100.0(325)	
가구규모											
1인	-	21.1	-	-	26.3	-	10.5	21.1	21.1	100.0(19)	46.882**
2인	29.0	17.7	3.2	-	17.7	8.1	12.9	1.6	9.7	100.0(62)	
3~4인	19.8	31.0	10.7	-	12.8	4.8	9.1	6.4	5.3	100.0(187)	
5인 이상	14.0	33.3	14.0	-	22.8	-	5.3	8.8	1.8	100.0(57)	
가구형태											
1인 가구	-	21.1	-	-	26.3	-	10.5	21.1	21.1	100.0(19)	51.205**
부부가구	29.0	17.7	3.2	-	17.7	8.1	12.9	1.6	9.7	100.0(62)	
부부+미혼 자녀가구	19.8	31.6	11.3	-	14.2	4.2	8.0	5.7	5.2	100.0(212)	
3세대 가구	7.4	33.3	14.8	-	18.5	-	11.1	14.8	-	100.0(27)	
기타	20.0	20.0	-	-	40.0	-	-	20.0	-	100.0(5)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24.7	19.2	2.7	-	20.5	6.8	13.7	2.7	9.6	100.0(73)	13.437
유자녀가구	20.9	26.5	13.3	-	13.8	4.6	9.2	6.6	5.1	100.0(196)	

주: 1)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는 가족 내 세대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며, 일가족갈등도 많은 편이었다. 2인가구는 부부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이 다소 많았고, 가족 돌봄 및 상속갈등도 전체보다 많았다. 3~4인 가구는 부부갈등과 가족 내 세대갈등 특히 부모와 자녀 간과 고부 및 장서 간에 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인 이상 가구는 가족 세

대갈등이 거의 절반을 보였고, 형제자매 갈등도 높은 편이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는 부부갈등이 높았고, 형제자매와 동서 간에 갈등도 높은 편이었으며 가족 돌봄 및 상속갈등도 타 가구보다 높았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갈등과 가족 내 세대갈등이 62.7%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3세대가구는 가족 내 세대갈등이 48.1%로 거의 과반수를 보였으며, 형제자매 간 갈등과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그리고 일가족 갈등도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자녀유무별로는 무자녀가구는 부부갈등과 형제자매 간 갈등, 그리고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이 높은 편인데 비해, 유자녀가구는 부모와 자녀 간과 고부 및 장서 간의 세대갈등이 39.8%로 높은 편이었고, 일가족갈등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로 가족갈등 발생원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 비해 부부갈등과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외에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가족돌봄에서 오는 갈등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에서는 일가족 양립에서 오는 갈등도 타 소득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과 고부 및 장서 간에 세대갈등이 높은 편이었고, 동서 간 갈등도 타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생활비 부담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부부 및 고부·장서와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타 생활비 부담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가구주 배우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가구주와 배우자인 경우는 부부 및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많았고, 일가족에서 오는 갈등도 다소 나타났다.

〈표 4-11〉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구분	가족관계 갈등						가족기능 갈등		기타	계(수)	χ^2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일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고부 및 장서 갈등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형제 자매 갈등	동서간 갈등					
전체	19.4	28.3	9.2	-	16.3	4.3	9.2	6.8	6.5	100.0(32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6	21.6	3.9	-	17.6	3.9	13.7	7.8	11.8	100.0(51)	28.258
300만원 미만	23.4	21.3	8.5	-	17.0	2.1	6.4	8.5	12.8	100.0(47)	
400만원 미만	19.7	19.7	9.1	-	21.2	3.0	13.6	6.1	7.6	100.0(66)	
500만원 미만	12.8	36.2	12.8	-	14.9	8.5	8.5	6.4	-	100.0(47)	
500만원 이상	19.1	37.1	10.1	-	12.4	4.5	6.7	6.7	3.4	100.0(89)	
생활비 부담자											
가구주 본인	20.6	22.9	10.9	-	18.9	5.1	9.1	6.3	6.3	100.0(175)	28.820
배우자	17.6	41.2	2.9	-	8.8	-	5.9	5.9	17.6	100.0(34)	
가구주+배우자	22.0	31.9	9.9	-	13.2	5.5	8.8	6.6	2.2	100.0(91)	
기타	4.0	36.0	4.0	-	20.0	-	16.0	12.0	8.0	100.0(25)	

주: 생활비 부담자의 기타에는 가구주의 성인자녀 및 부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특성별로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을 보면, 가구주 결혼 상태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는 미혼에 비해 부부갈등, 고부 및 장서와 동서 간 갈등 그리고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등이 다소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는 기혼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친형제자매 간 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에 비해 부부갈등과 친형제자매 간 갈등, 그리고 일가족갈등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인 경우는 남성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과 동서 간 갈등, 그리고 가족 돌봄에서 오는 갈등이 높은 편이었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 갈등과 고부 및 장서 간 갈등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 많았으며, 40대는 부부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많았다. 50대는 친형제 자매와 동서 간 갈등이 많았고, 가족 돌봄과 상속갈등도 다소 많았다. 60대는 부모와 자녀 간과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고등학교는 부부와 부모 자녀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간 갈등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전문) 대학이상은 부부 간 갈등과 고부 및 장서갈등, 그리고 가족 돌봄 및 상속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12〉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구분	가족관계 갈등						가족기능 갈등		기타	계(수)	χ ²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일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고부 및 장서 갈등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형제 자매 갈등	동서간 갈등						
전체	23.8	17.9	6.0	-	23.2	3.3	7.9	10.6	7.3	100.0(151)	
가구주 성											
남성	24.6	16.4	7.4	-	25.4	2.5	7.4	10.7	5.7	100.0(122)	8.181
여성	20.7	24.1	-	-	13.8	6.9	10.3	10.3	13.8	100.0(29)	
가구주 연령											
19~39세	24.0	28.0	12.0	-	16.0	-	-	8.0	12.0	100.0(25)	23.227
40~49세	26.9	15.4	7.7	-	17.3	3.8	9.6	15.4	3.8	100.0(52)	
50~59세	22.5	7.5	5.0	-	27.5	7.5	10.0	10.0	10.0	100.0(40)	
60~69세	20.6	26.5	-	-	32.4	-	8.8	5.9	5.9	100.0(34)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25.7	17.9	6.4	-	22.9	3.6	8.6	9.3	5.7	100.0(140)	14.579*
미혼	-	18.2	-	-	27.3	-	-	27.3	27.3	100.0(11)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7	13.0	-	-	30.4	4.3	8.7	8.7	13.0	100.0(23)	7.674
고등학교	24.0	22.0	6.0	-	26.0	4.0	4.0	8.0	6.0	100.0(50)	
(전문) 대학 이상	24.4	16.7	7.7	-	19.2	2.6	10.3	12.8	6.4	100.0(78)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자	23.6	17.3	7.1	-	23.6	3.1	7.1	12.6	8.5	100.0(127)	9.203
비근로자	25.0	20.8	-	-	20.8	4.2	12.5	-	16.7	10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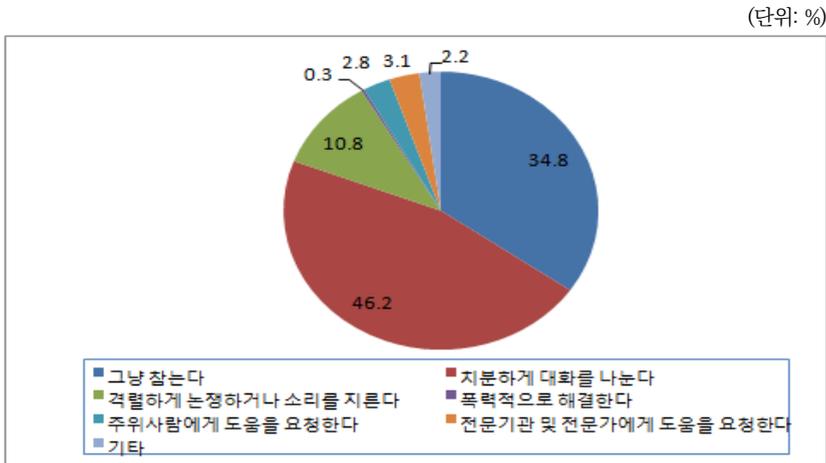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3. 가족갈등 대처방식

가족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이다.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식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6.2%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며, 그냥 참는다고도 34.8%로 1/3에 해당된다. 이외에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10.8%,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주위사람 또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대다수의 응답자의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가정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4-3] 가족갈등의 대처방식



주: 분석대상자는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가족갈등의 대처방식을 보면, 가구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형태 및 자녀유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규모별로는 전체와 유사하게 그냥 참는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많았으며, 이외에 1인 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고, 3인 이상 가구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가구형태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부부가구, 그리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유무별로는 무자녀가구가 유자녀가구에 비해 참거나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다소 많았으며, 이에 비해 유자녀가구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

〈표 4-13〉 가족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가족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χ^2
전체	34.8	46.2	10.8	0.3	2.8	3.1	2.2	100.0(325)	
가구규모									
1인	26.3	52.6	5.3	-	5.3	-	10.5	100.0(19)	29.336*
2인	50.0	43.5	1.6	-	3.2	1.6	-	100.0(62)	
3~4인	31.6	47.1	12.8	-	2.7	3.2	2.7	100.0(187)	
5인 이상	31.6	43.9	15.8	1.8	1.8	5.3	-	100.0(57)	
가구형태									
1인 가구	26.3	52.6	5.3	-	5.3	-	10.5	100.0(19)	25.160
부부가구	50.0	43.5	1.6	-	3.2	1.6	-	100.0(62)	
부부+미혼자녀 가구	30.7	46.7	14.2	0.5	2.4	3.8	1.9	100.0(212)	
3세대 가구	37.0	44.4	7.4	-	3.7	3.7	3.7	100.0(27)	
기타	40.0	40.0	20.0	-	-	-	-	100.0(5)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49.3	42.5	2.7	-	2.7	1.4	1.4	100.0(73)	11.821
유자녀가구	29.6	50.5	9.7	0.5	3.1	4.1	2.6	100.0(196)	

주: 1)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도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로 가족갈등 대처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집단 간에 유사한 대처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족갈등 대처방식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14> 가구소득 및 생활비부담자별 가족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폭력적 으로 해결한다	주위사람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χ^2
전체	34.8	46.2	10.8	0.3	2.8	3.1	2.2	100.0(32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3	45.1	7.8	2.0	2.0	3.9	2.0	100.0(51)	17.706
300만원 미만	51.1	31.9	6.4	-	2.1	4.3	4.3	100.0(47)	
400만원 미만	28.8	50.0	12.1	-	3.0	3.0	3.0	100.0(66)	
500만원 미만	29.8	44.7	17.0	-	4.3	2.1	2.1	100.0(47)	
500만원 이상	33.7	49.4	10.1	-	2.2	3.4	1.1	100.0(89)	
생활비 부담자									
가구주 본인	36.6	43.4	9.1	-	2.9	4.0	4.0	100.0(175)	23.222
배우자	32.4	44.1	17.6	2.9	-	2.9	-	100.0(34)	
가구주+배우자	29.7	52.7	11.0	-	4.4	2.2	-	100.0(91)	
기타	44.0	44.0	12.0	-	-	-	-	100.0(25)	

주: 생활비 부담자의 기타에는 가구주의 성인자녀 및 부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의 특성별로 가족갈등 대처방식을 보면,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주의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근로여부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보다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외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다소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대체로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에서 그냥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외에 40~5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60대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15〉 가구주특성별 가족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폭력적 으로 해결한다	주위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χ^2
전체	32.5	50.3	7.9	-	3.3	2.6	3.3	100.0(151)	
가구주 성									
남성	31.1	54.9	7.4	-	4.1	-	2.5	100.0(122)	22.657***
여성	37.9	31.0	10.3	-	-	13.8	6.9	100.0(29)	
가구주 연령									
19-39세	24.0	64.0	8.0	-	4.0	-	-	100.0(25)	28.333*
40-49세	15.4	57.7	9.6	-	3.8	5.8	7.7	100.0(52)	
50-59세	50.0	37.5	12.5	-	-	-	-	100.0(40)	
60-69세	44.1	44.1	-	-	5.9	2.9	2.9	100.0(34)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33.6	50.0	7.9	-	2.9	2.9	2.9	100.0(140)	3.514
미혼	18.2	54.5	9.1	-	9.1	-	9.1	100.0(11)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2.2	43.5	-	-	-	4.3	-	100.0(23)	13.252
고등학교	36.0	42.0	12.0	-	6.0	2.0	2.0	100.0(50)	
(전문) 대학 이상	24.4	57.7	7.7	-	2.6	2.6	5.1	100.0(78)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자	31.5	52.0	8.7	-	2.4	1.6	3.9	100.0(127)	7.762
비근로자	37.5	41.7	4.2	-	8.3	8.3	-	100.0(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4.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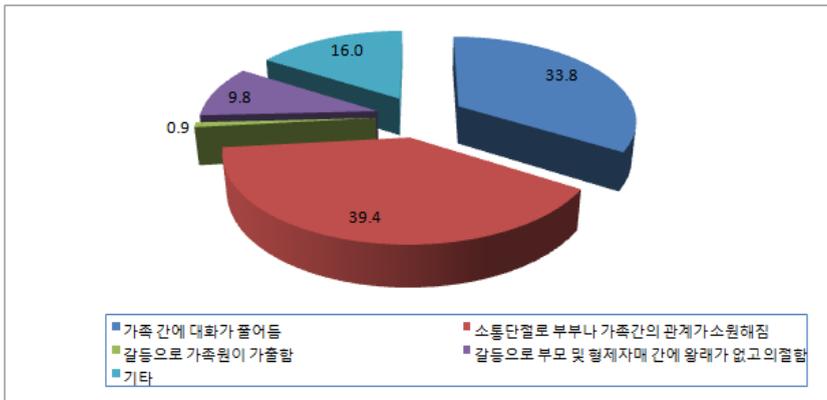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실태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이다.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는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어가는 경우는 33.8%로 많았으며,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절하는 비율은 9.8%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1% 미만이나 갈등으로 가족

원이 가출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소통 단절부터 의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서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4]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가족갈등으로 인한 변화를 보면, 가구형태와 자녀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규모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는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한다는 비율이 15.8%로 전체보다 높았으며, 부부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와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와 미혼자녀가구는 소통 단절로 부부나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는 경우가, 3세대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유무별로도 전체와 비슷하였으며,

무자녀가구는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 없고 단절되는 경우가, 유자녀 가구는 소통단절로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경우가 전체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가구규모별로는 가구형태별로 나타난 변화 양상과 유사하였다.

〈표 4-16〉 가족규모, 형태 및 자녀유무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명)

구분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듦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기타	계(수)	χ^2
전체	33.8	39.4	0.9	9.8	16.0	100.0(325)	
가구규모							
1인	26.3	31.6	-	15.8	26.3	100.0(19)	14.136
2인	35.5	30.6	-	17.7	16.1	100.0(62)	
3~4인	32.1	42.2	1.6	8.6	15.5	100.0(187)	
5인 이상	40.4	42.1	-	3.5	14.0	100.0(57)	
가구형태							
1인 가구	26.3	31.6	-	15.8	26.3	100.0(19)	26.471*
부부가구	35.5	30.6	-	17.7	16.1	100.0(62)	
부부+미혼자녀 가구	31.1	46.2	1.4	6.6	14.6	100.0(212)	
3세대 가구	59.3	11.1	-	11.1	18.5	100.0(27)	
기타	20.0	40.0	-	20.0	20.0	100.0(5)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32.9	30.1	-	20.5	16.4	100.0(73)	10.721*
유자녀가구	32.1	42.3	1.0	7.7	16.8	100.0(196)	

주: 1)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 포함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로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향을 보면 가구소득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3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300만원 이상은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편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여부별로는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가족갈등으로 대화가 줄어들거나 소통단절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높은 데 비해, 비근로자는 가족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전체보다 상당히 높아서 갈등상태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표 4-17〉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부담자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명)

구분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듦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기타	계(수)	χ^2
전체	33.8	39.4	0.9	9.8	16.0	100.0(32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9.4	31.4	-	15.7	23.5	100.0(51)	18.466
300만원 미만	29.8	42.6	2.1	14.9	10.6	100.0(47)	
400만원 미만	34.8	39.4	1.5	13.6	10.6	100.0(66)	
500만원 미만	36.2	42.6	-	10.6	10.6	100.0(47)	
500만원 이상	33.7	41.6	-	3.4	21.3	100.0(89)	
생활비 부담자							
가구주 본인	28.6	41.7	0.6	11.4	17.7	100.0(175)	11.632
배우자	35.3	38.2	2.9	11.8	11.8	100.0(34)	
가구주+배우자	38.5	39.6	1.1	5.5	15.4	100.0(91)	
기타	52.0	24.0	-	12.0	12.0	100.0(25)	

주: 생활비 부담자의 기타에는 가구주의 성인자녀 및 부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의 특성별로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가구주특성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명)

구분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듦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기타	계(수)	χ^2
전체	35.1	35.1	-	11.3	18.5	100.0(151)	
가구주 성							
남성	36.9	34.4	-	10.7	18.0	100.0(122)	.953
여성	27.6	37.9	-	13.8	20.7	100.0(29)	
가구주 연령							
19~39세	60.0	20.0	-	4.0	16.0	100.0(25)	14.849
40~49세	30.8	36.5	-	9.6	23.1	100.0(52)	
50~59세	25.0	42.5	-	10.0	22.5	100.0(40)	
60~69세	35.3	35.3	-	20.6	8.8	100.0(34)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35.0	35.0	-	12.1	17.9	100.0(140)	1.834
미혼	36.4	36.4	-	-	27.3	100.0(11)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8	21.7	-	17.4	26.1	100.0(23)	3.878
고등학교	36.0	36.0	-	8.0	20.0	100.0(50)	
(전문) 대학 이상	34.6	38.5	-	11.5	15.4	100.0(78)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자	35.4	36.2	-	9.4	18.9	100.0(127)	2.689
비근로자	33.3	29.2	-	20.8	16.7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보다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성은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의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가족갈등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19~30세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40세 이상은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그리고 60대는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으로 부정적인 변화의 단계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미혼인 경우는 사별·이혼·별거에 비해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거나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경

우가, 사별·이혼·별거는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제3절 가족관계 갈등양상

1. 부부관계 및 갈등양상

가. 부부관계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며 부부관계는 부부관, 의사결정방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족 내 부부 역할에 대한 견해로 남편의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49.8%, 반대가 48.7%로 비슷하였다.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 책임이라는 찬성이 21.0%, 반대가 78.1%로 반대가 3.7배 높았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찬성이 38.2%, 반대가 60.1%로 반대가 1.6배 높았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찬성이 27.2%, 반대가 71.8%로 반대가 2.6배 높았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및 사회참여 욕구 증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남편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책임자라는 전통적인 역할관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가정 내 역할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4-19〉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모르겠음	계(수)	평균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3.6	35.1	38.1	11.7	1.5	100.0(1,000)	2.49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 책임이다	29.5	48.6	17.7	3.3	0.9	100.0(1,000)	1.95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6	41.5	28.3	9.9	1.7	100.0(1,000)	2.30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23.2	48.6	22.1	5.1	1.0	100.0(1,000)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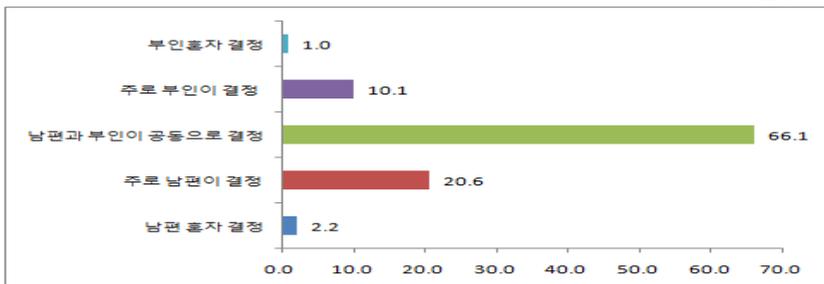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부부간의 권력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인 의사결정형태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유배우인 676명이다.

의사결정형태로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로 남편이 결정이 20.6%, 주로 부인이 결정이 10.1%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이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서 다소 남편의 권력구조가 남아 있으나 상당부분 양성 평등적 권력구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5] 부부의 가정생활에 중요한 일의 결정방식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조사결과 나타난 실제 부부관계를 보면, 부부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는 비율은 61.9%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2.6%에 불과하였다. 부부의 견해가 비슷한 편이라는 비율은 58.6%, 그렇지 않다는 22.9%로 1/5에 해당되었다. 부부가 신뢰하는 편이라는 82.6%로 대다수가 해당되었으며, 부부생활(성생활)에 만족한 편이라는 69.1%, 그렇지 않다는 10.4%로 적은 편이었다. 이는 부부 간에 신뢰도는 높은 편이나 대화, 가치관 공유 및 부부생활은 보통을 초과하는 정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0〉 부부 간의 관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계(수)	평균
우리부부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2.4	10.2	25.6	33.6	28.3	100.0(676)	3.75
우리부부는 견해가 비슷한 편이다	4.4	18.5	18.5	44.8	13.8	100.0(676)	3.45
우리부부는 서로 신뢰하는 편이다	1.5	4.7	11.1	46.4	36.2	100.0(676)	4.11
우리부부는 부부생활(성생활)에 만족한 편이다	2.7	7.7	20.6	48.1	21.0	100.0(676)	3.7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나. 부부갈등 수준 및 원인

부부갈등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676명이다. 최근 1년 간 부부가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0%로 기혼 응답자의 1/3이 부부갈등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응답자는 28.7%, 여성응답자는 35.1%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갈등 경험이 6.4%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0%~35.3%로 60대 후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30대, 60대 초반, 20대 순으로 높아서 황혼기와 중장년층에서 부부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4-6] 응답자의 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그림 4-7] 응답자의 연령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주: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갈등의 원인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에는 생활습관, 경제 및 자녀교육 문제가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고부간에 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8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생활습관과 고부간 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은 다소 감소한 반면 경제문제와 육아문제가 다소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문제가 갈등원인으로 노출되고 있음이 짐작된다.

<표 4-21> 부부갈등 원인 변화

구분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육아 문제	시부모님과의 관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본인 남편 직장 생활	본인 남편 친구 관계	부부간 가사 부담	본인 남편 생활 습관	기타	계
2007년	16.3	12.0	3.1	7.0	0.8	2.7	1.7	4.0	17.2	88.1	100.0
2008년	14.7	9.8	3.7	4.3	0.3	2.1	1.3	3.4	16.2	70.7	100.0
2010년	17.0	10.3	4.0	3.9	0.5	1.4	1.4	2.6	16.5	6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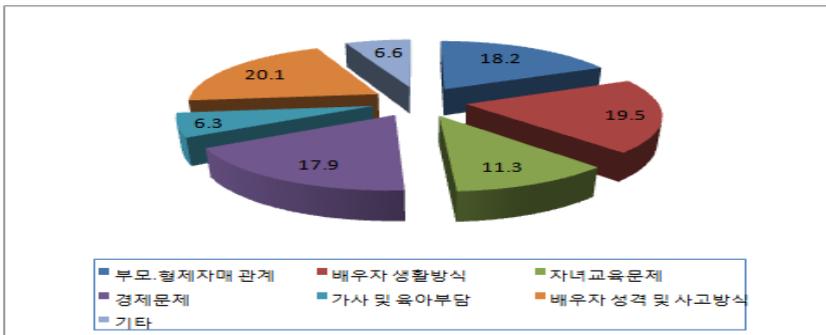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재구성.

이에 비해 본 전화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부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 원인의 분석대상자는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676명 중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216명으로 부부갈등의 원인은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

식이 2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 생활방식이 19.5%로 많았고 이어서 부모 및 형제자매관계가 18.2%, 경제문제 17.9%, 그리고 자녀교육문제 11.3%, 기타(성 및 직장생활, 친구관계) 6.6%, 가사 및 육아부담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2010년과 비교할 때, 배우자 및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는 갈등 원인으로 증가하였고, 경제문제 및 자녀교육문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부부갈등 원인

(단위: %)



주: 부부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부부갈등 원인은 가구형태, 자녀유무 및 가구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차이를 보여서 부부가구는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는 자녀교육, 경제 및 가사 및 육아부담 문제, 3세대 가구는 부모와 형제자매 관계, 그리고 경제문제 갈등이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부부 갈등 비율	부부갈등 원인							계(수)	χ^2
		부모형제 자매 관계	배우자 생활 방식	자녀교육 문제	경제 문제	가사 및 육아 부담	배우자 성격 및 사고 방식	기타 (성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전체	32.0	18.2	19.5	11.3	17.9	6.3	20.1	6.6	100.0(216)	
가구형태										
부부가구	28.6	11.4	20.0	-	17.1	4.3	34.3	12.9	100.0(48)	31.569*
부부+미혼자녀 가구	33.4	17.2	19.6	13.9	19.1	8.1	16.7	5.3	100.0(144)	
3세대 가구	33.9	35.3	17.6	20.6	14.7	-	8.8	2.9	100.0(20)	
기타	22.2	40.0	20.0	-	-	-	40.0	-	100.0(4)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27.5	11.1	19.4	-	16.7	4.2	36.1	12.6	100.0(50)	20.983*
유자녀가구	33.6	19.9	19.9	14.5	18.0	7.2	15.7	4.8	100.0(166)	*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5	14.1	18.8	4.7	20.3	3.1	26.6	12.6	100.0(31)	36.616*
300만원 미만	36.4	2.4	23.8	14.3	21.4	4.8	26.2	7.2	100.0(32)	
400만원 미만	33.1	20.9	16.7	12.5	19.4	9.7	11.1	9.8	100.0(47)	
500만원 미만	36.2	25.0	10.4	14.6	16.7	6.3	22.9	4.2	100.0(38)	
500만원 이상	26.9	20.0	25.3	12.0	12.0	8.0	21.3	1.3	100.0(56)	

주: 1) 부부갈등 비율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2) 부부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은 경제문제, 여성은 배우자 생활방식 때문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연령층은 부모형제자매 관계, 자녀교육 및 경제문제, 그리고 가사 및 육아부담 때문에, 50대와 60대 연령층은 배우자 생활방식 및 성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4-23> 유배우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부부 갈등 비율	부부갈등 원인							계(수)	χ^2
		부모·형제 자매 관계	배우자 생활 방식	자녀교육 문제	경제 문제	가사 및 육아 부담	배우자 성격 및 사고 방식	기타 (성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전체	32.0	18.2	19.5	11.3	17.9	6.3	20.1	6.6	100.0(216)	
성별										
남성	28.7	18.2	16.2	11.5	18.9	7.4	20.3	7.4	100.0(96)	3.390
여성	35.1	18.2	22.4	11.2	17.1	5.3	20.0	6.0	100.0(120)	
연령										
19~39세	30.1	18.9	13.5	5.4	10.8	21.6	21.6	8.1	100.0(37)	37.645**
40~49세	33.9	13.0	16.9	11.7	22.1	5.2	24.7	6.5	100.0(77)	
50~59세	32.2	14.5	26.1	8.7	14.5	1.4	24.6	10.1	100.0(69)	
60~69세	29.5	6.1	6.1	6.1	24.2	-	45.5	12.1	100.0(15)	
결혼기간										
5년 미만	32.6	21.7	8.7	8.7	8.7	30.4	17.4	4.3	100.0(15)	43.038*
5~10년 미만	37.0	19.1	19.0	4.8	19.0	14.3	19.0	4.8	100.0(20)	
10~20년 미만	32.5	25.3	10.1	16.5	21.5	7.6	15.2	3.8	100.0(49)	
20~30년 미만	33.9	22.0	27.5	16.5	14.3	2.2	13.2	4.4	100.0(61)	
30년 이상	29.0	8.7	22.1	4.8	20.2	1.9	30.8	11.5	100.0(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7.5	13.0	31.5	3.7	13.0	1.9	29.6	7.4	100.0(33)	20.673
고등학교	30.4	15.8	20.4	11.1	21.3	2.8	19.4	9.4	100.0(70)	
(전문)대학 이상	31.6	21.8	14.7	14.1	17.3	10.3	17.3	4.5	100.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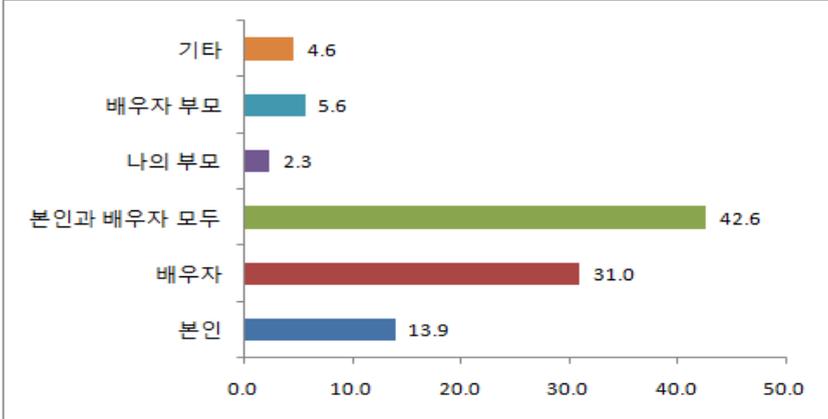
주: 1) 부부갈등 비율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2) 부부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부부갈등 원인제공자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인 676명 중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216명이다.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를 살펴보면, 부부모두가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가 31.0%, 응답자 본인 13.9%로 많았으며, 이외에 배우자 및 친부모 때문도 7.9%로 적지 않았다. 이는 부부갈등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외에 부모 등의 가족관계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그림 4-9]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

(단위: %)



주: 부부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갈등 원인제공자의 특성을 보면 전체와 유사하였다. 그중 가구형태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부부가구와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갈등 원인제공이 부부와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한편, 3세대가구는 이외에 배우자 부모 때문이 다소 높아서 가족구성 형태가 가족갈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4>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의 원인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기타	계(수)	χ^2
전체	13.9	31.0	42.6	2.3	5.6	4.6	100.0(216)	
가구형태								
부부가구	10.4	33.3	43.8	2.1	6.3	4.2	100.0(48)	15.025
부부+미혼자녀가구	16.0	31.9	41.0	2.1	4.9	4.2	100.0(144)	
3세대 가구	10.0	20.0	50.0	-	10.0	10.0	100.0(20)	
기타	-	25.0	50.0	25.0	-	-	100.0(4)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10.0	34.0	44.0	2.0	6.0	4.0	100.0(50)	1.032
유자녀가구	15.1	30.1	42.2	2.4	5.4	4.8	100.0(16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7	35.5	45.2	-	3.2	6.5	100.0(31)	14.183
300만원 미만	15.6	31.3	50.0	-	3.1	-	100.0(32)	
400만원 미만	17.0	27.7	36.2	4.3	8.5	6.4	100.0(47)	
500만원 미만	7.9	42.1	44.7	-	2.6	2.6	100.0(38)	
500만원 이상	16.1	25.0	42.9	3.6	7.1	5.4	100.0(56)	

주: 부부갈등 원인 제공자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부부모두와 본인을 원인제공자로 지적한 반면, 여성응답자는 배우자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부부 모두 보다 높았고, 이외에 배우자 부모 때문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은 부부갈등 원인제공자로 부부 모두와 배우자 부모를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배우자를 지적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25〉 유배우 갈등경험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기타	계(수)	χ^2
전체	13.9	31.0	42.6	2.3	5.6	4.6	100.0(216)	
성별								
남성	25.0	13.5	50.0	5.2	-	6.3	100.0(96)	51.432***
여성	5.0	45.0	36.7	-	10.0	3.3	100.0(120)	
연령								
19~39세	10.8	21.6	45.9	-	16.2	5.4	100.0(37)	24.886
40~49세	13.0	28.6	49.4	5.2	2.6	1.3	100.0(77)	
50~59세	15.9	34.8	33.3	1.4	5.8	8.7	100.0(69)	
60~69세	15.2	39.4	42.4	-	-	3.0	100.0(33)	
결혼기간								
5년 미만	13.3	20.0	46.7	6.7	13.3	-	100.0(15)	23.283
5~10년 미만	10.0	20.0	45.0	5.0	10.0	10.0	100.0(20)	
10~20년 미만	8.2	30.6	44.9	4.1	10.2	2.0	100.0(49)	
20~30년 미만	19.7	32.8	34.4	-	4.9	8.2	100.0(61)	
30년 이상	14.1	35.2	46.5	1.4	-	2.8	100.0(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	48.5	30.3	-	3.0	9.1	100.0(33)	15.623
고등학교	14.3	32.9	47.1	-	4.3	1.4	100.0(70)	
(전문) 대학 이상	15.0	24.8	43.4	4.4	7.1	5.3	100.0(113)	

주: 부부갈등 원인 제공자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다. 부부갈등 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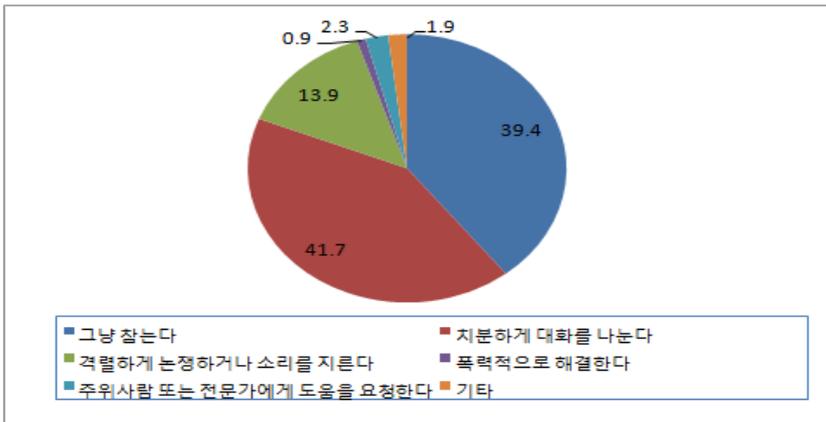
부부갈등의 대처방식은 유배우인 676명 중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216명이다.

부부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식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1.7%로 2/5이며, 그냥 참는다도 39.4%로 1/3을 초과하였다. 이외에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13.9%,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발생한 대다수의 가정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4-10] 부부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주: 부부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 결혼기간 및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갈등의 대처방식은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그중 부부가구와 3세대가구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와 40대, 그리고 60대 연령층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였다.

144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구분	그냥 참는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χ^2
5년 미만	-	80.0	13.3	6.7	-	-	100.0(15)	49.782***
5-10년 미만	10.0	65.0	20.0	-	5.0	-	100.0(20)	
10-20년 미만	26.5	53.1	18.4	-	-	2.0	100.0(49)	
20-30년 미만	50.8	32.8	11.5	-	4.9	-	100.0(61)	
30년 이상	54.9	26.8	11.3	1.4	1.4	4.2	100.0(71)	
교육수준								19.214*
중학교 이하	48.5	24.2	15.2	3.0	3.0	6.1	100.0(33)	
고등학교	48.6	38.6	8.6	-	4.3	-	100.0(70)	
(전문)대학 이상	31.0	48.7	16.8	0.9	0.9	1.8	100.0(113)	

주: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라. 황혼기 부부갈등

부부은퇴 여부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676명이다.

전화조사결과, 부부의 은퇴여부를 보면 부부모두 은퇴하지 않은 비율은 84.9%로 대다수에 해당되었고, 남편만 은퇴 6.5%, 부인만 은퇴 4.6%, 부부모두 은퇴한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중에서 부부 중 하나라도 은퇴한 비율은 15.1%이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은퇴한 비율을 보면 남성은 13.2%, 여성은 17.0%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약 2%~52%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의 은퇴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결혼기간별로도 연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4-28〉 유배우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여부

(단위: %, 명)

구분	부부 모두 은퇴하지 않음	남편만 은퇴함	부인만 은퇴함	부부 모두 은퇴함	계(수)	χ^2
전체	84.9	6.5	4.6	4.0	100.0(676)	
성별						2.003
남성	86.8	5.7	4.2	3.3	100.0(334)	
여성	83.0	7.3	5.0	4.7	100.0(342)	
연령						191.831***
19~39세	94.3	-	5.7	-	100.0(123)	
40~49세	98.2	-	1.8	-	100.0(227)	
50~59세	84.6	6.5	5.6	3.3	100.0(214)	
60~69세	48.2	26.8	7.1	17.9	100.0(112)	
결혼기간						126.686***
5년 미만	93.5	-	6.5	-	100.0(46)	
5~10년 미만	94.4	-	5.6	-	100.0(54)	
10~20년 미만	98.0	-	2.0	-	100.0(151)	
20~30년 미만	94.4	2.2	3.3	-	100.0(180)	
30년 이상	66.1	16.3	6.5	11.0	100.0(245)	

주: 부부은퇴 여부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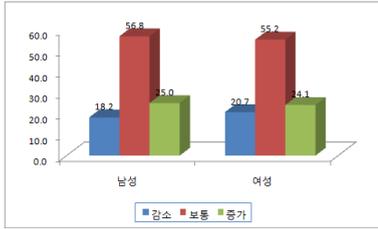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부부은퇴에 따른 갈등변화의 분석대상자는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676명 중 은퇴한 응답자 10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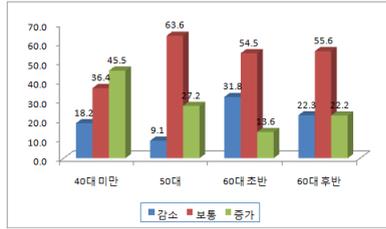
부부가 은퇴한 이후에 배우자와 갈등의 변화를 보면, 보통이 5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갈등이 증가한 비율은 24.5%, 갈등이 감소한 비율은 19.6%로 은퇴 가정에서 1/4 가정만이 은퇴 후 갈등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은퇴 후 부부의 갈등변화는 응답자의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증가한 비율 25.0%로, 감소한 비율(18.2%)보다 다소 많았고, 여성은 증가가 24.1%, 감소가 20.7%로 남성보다 다소 낮았다. 연령별로는 갈등이 증가한 비율은 약 19%~46%로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을 하였다. 은퇴 후 부부갈등이 감소하였다는 비율은 60대 연령층에서 높았다.

[그림 4-11] 응답자의 성별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단위: %)



[그림 4-12] 응답자의 연령별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단위: %)



주: 부부은퇴에 따른 갈등변화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상태 676명 중 은퇴한 102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결혼기간별 특성을 보면 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은퇴 후 부부갈등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고학력층인 경우는 은퇴 후 부부갈등이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4-29> 은퇴한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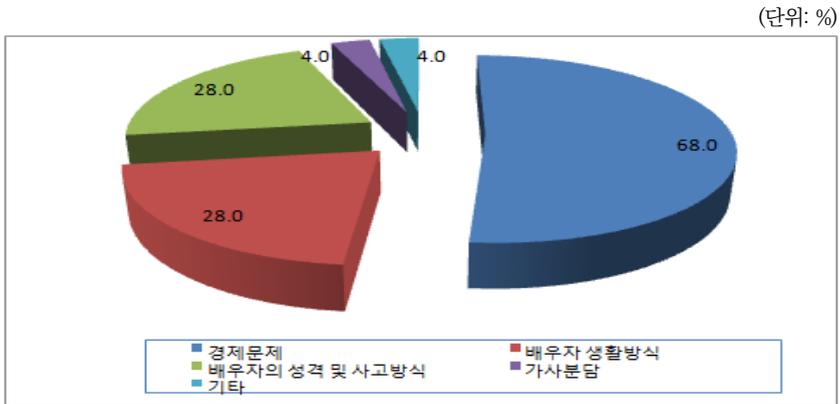
구분	매우 감소함	감소함	보통	증가함	매우 증가함	계(수)	χ^2	평균 점수	F값 (t값)
전체	5.9	13.7	55.9	23.5	1.0	100.0(102)		3.0	
성별									
남성	6.8	11.4	56.8	25.0	-	100.0(44)	1.272	3.0	(.000)
여성	5.2	15.5	55.2	22.4	1.7	100.0(58)		3.0	
연령									
19~49세	18.2	-	36.4	45.5	-	100.0(11)	16.834*	3.1	1.127
50~59세	6.1	3.0	63.6	24.2	3.0	100.0(33)		3.2	
60~69세	3.4	22.4	55.2	19.0	-	100.0(58)		2.9	
결혼기간									
20년 미만	22.2	-	33.3	44.4	-	100.0(9)	18.737*	3.0	.084
20~30년 미만	10.0	10.0	50.0	20.0	10.0	100.0(10)		3.1	
30년 이상	3.6	15.7	59.0	21.7	-	100.0(83)		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	17.6	47.1	29.4	2.9	100.0(34)	10.914	3.1	2.151
고등학교	-	12.5	62.5	25.0	-	100.0(32)		3.1	
(전문)대학 이상	13.9	11.1	58.3	16.7	-	100.0(36)		2.8	

주: 부부은퇴에 따른 갈등변화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상태 676명 중 은퇴한 102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부부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의 분석대상자는 은퇴자 102명 중 갈등이 증가한 25명이다.

부부의 은퇴 후 갈등의 증가원인은 경제문제가 68.0%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다음은 배우자 생활방식과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등이 각각 28.0%이었으며, 가사분담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은퇴 후 갈등원인은 부부 간에 관계적인 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3] 부부 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



주: 부부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의 분석대상자는 은퇴자 102명 중 갈등이 증가한 2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도 부부의 은퇴 후에 갈등이 증가하는 원인은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중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문제, 배우자 생활방식, 성격 및 사고방식 등 경제와 배우자의 요인 등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40대 이하의 배우자 생활방식, 성격 및 사고방식 등 배우자의 원인과 가사분담 등에 집중된 반면, 50대와 60대는 경제문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기간별로는 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경제문제, (전문) 대학 이상은 배우자 생활방식, 성격 및 사고방식 등이 갈등의 증가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4-30〉 갈등이 증가한 은퇴자 특성별 부부의 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

(단위: %, 명)

구분	경제문제	배우자 생활방식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가사분담	기타
전체	68.0	28.0	28.0	4.0	4.0
성별					
남성	63.6	18.2	18.2	9.1	9.1
여성	71.4	35.7	35.7	-	-
연령					
19~49세	20.0	40.0	40.0	20.0	-
50~59세	88.9	22.2	44.4	-	-
60~69세	72.7	27.3	9.1	-	9.1
결혼기간					
20년 미만	25.0	25.0	50.0	25.0	-
20~30년 미만	33.3	66.7	33.3	-	-
30년 이상	83.3	22.2	22.2	-	5.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84.2	21.1	21.1	5.3	5.3
(전문) 대학 이상	16.7	50.0	50.0	-	-
(분석대상수)	(25)	(25)	(25)	(25)	(25)

주: 부부은퇴 후 갈등증가 원인의 분석대상자는 은퇴자 102명 중 갈등이 증가한 2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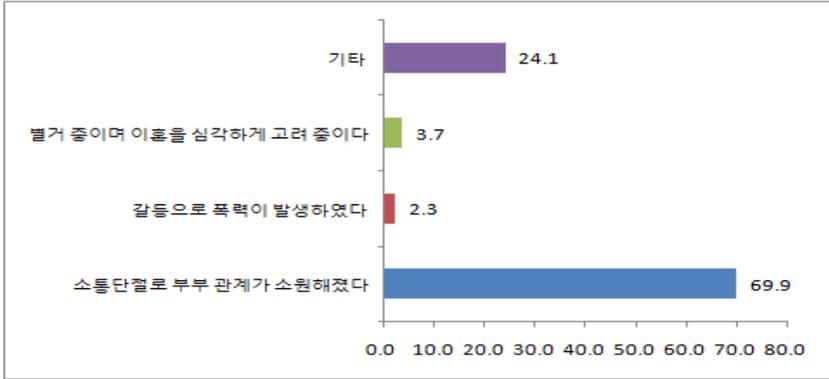
마.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이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부부간에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69.9%로 다수에 해당되었고, 미미하나 별거 중이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비율이 3.7%,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2.3%로 부부갈등으로 폭력과 이혼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주: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중에서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가족갈등으로 폭력발생이 높은 편이었고,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소통단절과 이혼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무자녀가구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폭력발생이 전체보다 높았고, 유자녀가구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별거 중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응답자와 60대 연령층,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폭력발생이 높았고, 또한 여성과 30대 이하와 50대 연령층, 저학력층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다. 응답자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150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표 4-31> 가구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

(단위: %, 명)

구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별거 중이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기타	계(수)	χ^2
전체	69.9	2.3	3.7	24.1	100.0(216)	
가구형태						
부부가구	60.4	4.2	2.1	33.3	100.0(48)	16.278
부부+미혼자녀 가구	75.0	2.1	4.9	18.1	100.0(144)	
3세대 가구	50.0	-	-	50.0	100.0(20)	
기타	100.0	-	-	-	100.0(4)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62.0	4.0	2.0	32.0	100.0(50)	3.588
유자녀가구	72.3	1.8	4.2	21.7	100.0(16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4.8	6.5	12.9	25.8	100.0(31)	22.115*
300만원 미만	75.0	3.1	3.1	18.8	100.0(32)	
400만원 미만	70.2	-	2.1	27.7	100.0(47)	
500만원 미만	86.8	-	2.6	10.5	100.0(38)	
500만원 이상	66.1	3.6	-	30.4	100.0(56)	

주: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표 4-32> 부부갈등 경험자 특성별 최근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

(단위: %, 명)

구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별거 중이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기타	계(수)	χ^2
전체	69.9	2.3	3.7	24.1	100.0(216)	
성별						
남성	72.9	1.0	1.0	25.0	100.0(96)	4.802
여성	67.5	3.3	5.8	23.3	100.0(120)	
연령						
19~39세	59.5	-	5.4	35.1	100.0(37)	13.530
40~49세	79.2	2.6	-	18.2	100.0(77)	
50~59세	68.1	1.4	7.2	23.2	100.0(69)	
60~69세	63.6	6.1	3.0	27.3	100.0(33)	

구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별거 중이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기타	계(수)	χ^2
결혼기간						
5년 미만	53.3	-	6.7	40.0	100.0(15)	12.857
5-10년 미만	60.0	-	5.0	35.0	100.0(20)	
10-20년 미만	83.7	-	-	16.3	100.0(49)	
20-30년 미만	72.1	3.3	3.3	21.3	100.0(61)	
30년 이상	64.8	4.2	5.6	25.4	100.0(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8.5	6.1	15.2	30.3	100.0(33)	21.766**
고등학교	78.6	1.4	2.9	17.1	100.0(70)	
(전문)대학 이상	70.8	1.8	0.9	26.5	100.0(113)	

주: 부부갈등으로 인한 변화의 분석대상자수는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경험한 21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2. 가족 내 세대갈등

가. 자녀양육 및 부양관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하여 자녀양육 가치관과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화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견해로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찬성이 85.5%, 반대가 13.9%로 찬성이 반대보다 6.2배 높았다. 노후를 위해서 자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찬성이 53.1%, 반대가 46.4%로 찬성이 다소 높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라는 찬성이 51.8%, 반대가 47.2%로 찬성이 높았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라는 견해는 찬성이 49.6%, 반대가 49.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결혼하여 자녀를 통한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는 찬성이 높은 편이었으나 노후를 위한 자녀의 필요성, 자녀성공의 동일시, 자녀우선주의 등은 찬성이 과반수에 불과 해 기존 자녀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부부와 부모중심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33>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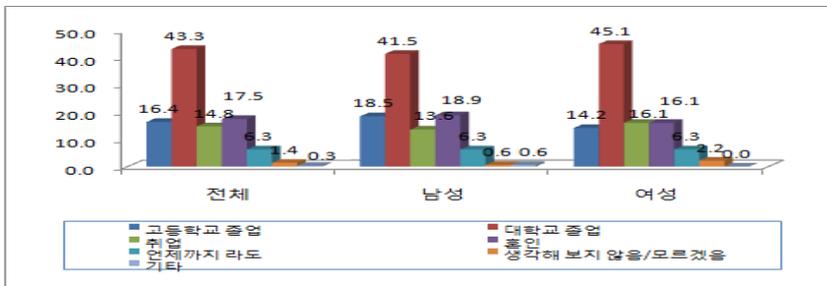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모르겠음	계(수)	평균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2.6	11.3	34.3	51.2	0.6	100.0(1,000)	3.35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	9.3	37.1	32.8	20.3	0.5	100.0(1,000)	2.64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12.1	35.1	34.8	17.0	1.0	100.0(1,000)	2.57
살아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8.9	40.3	36.1	13.5	1.2	100.0(1,000)	2.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전화조사결과, 자녀양육 책임시기에 대한 견해는 대학교 졸업까지가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17.5%,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6.4%, 취업할 때까지 14.8%, 언제까지라도 6.3%이었다. 자녀양육 시기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로 응답이 높는데 비해 최근으로 오면서 혼인과 취업 시기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5] 응답자의 성별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견해

(단위: %)



주: 분석대상은 일반국민 1,000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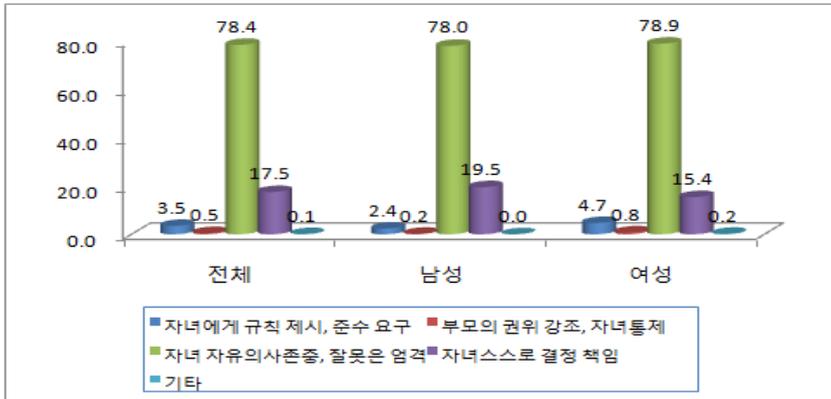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외에 혼인시기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은 대학교 졸업과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하여 남녀 간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

전화조사결과, 이상적인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견해는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엄격한 부모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든 것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부모가 17.5%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고 지키기를 요구하는 의견과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 엄격한 부모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림 4-16] 응답자의 성별 이상적인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견해

(단위: %)



주: 분석대상은 일반국민 1,000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나. 부모-자녀 관계 및 갈등양상

1)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

전화조사결과, 청소년기 자녀유무 분석대상자는 기혼자인 746명으로 그 중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비율은 36.7%, 청소년기 자녀가 없는 비율은 63.3%이었다. 응답자자의 성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나,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표 4-34〉 응답자의 특성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 유무

(단위: %, 명)

구분	청소년기 자녀 유무		청소년기 자녀 연령			χ^2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비율	(분석대상수)	만 15~17세	만 18~24세	계(수)	
전체	36.7	(746)	31.8	68.2	100.0(371)	
성별						5.295*
남성	35.8	(366)	37.8	62.2	100.0(172)	
여성	37.6	(380)	26.6	73.4	100.0(199)	
연령						43.527***
19~39세	13.5	(165)	60.0	40.0	100.0(20)	
40~49세	65.8	(231)	41.7	58.3	100.0(218)	
50~59세	43.6	(220)	11.9	88.1	100.0(126)	
60~69세	10.2	(130)	-	100.0	100.0(7)	
결혼기간						134.622***
10년 미만	3.2	(117)	-	-	100.0(0)	
10~20년 미만	45.7	(173)	79.8	20.2	100.0(94)	
20~30년 미만	81.3	(208)	16.3	83.7	100.0(258)	
30년 이상	9.7	(248)	5.3	94.7	100.0(19)	

주: 1) 청소년기 자녀유무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기혼상태인 746명임.

2) 청소년기 자녀 연령별 분석대상자수는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3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표 4-35〉 부모와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계(수)	평균
만 15~17세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임	2.5	3.4	19.5	40.7	33.9	100.0(118)	4.00
	자녀를 이해하는 편임	-	2.5	18.6	48.3	30.5	100.0(118)	4.07
	자녀를 믿는 편임	-	-	11.0	48.3	40.7	100.0(118)	4.30
만 18~24세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임	2.4	7.1	11.9	46.0	32.5	100.0(252)	3.99
	자녀를 이해하는 편임	1.2	2.4	18.3	48.0	30.2	100.0(252)	4.04
	자녀를 믿는 편임	-	-	9.9	49.6	40.5	100.0(252)	4.31

주: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3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부모와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관계는 연령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나 자녀를 믿는 경우는 만 18~24세 연령층이 만 15~17세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자녀를 이해하는 경우는 만 15~17세 연령층이 높았다. 이는 대다수의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결과, 부모특성별로 자녀양육시 어려움을 체감하는 비율은 85.0%로 대다수의 부모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부담이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의 학업성적 및 진로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와 차이가 없으나 아버지는 비교적 양육부담과 학업성적을, 어머니는 진로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높아서 어머니의 자녀진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양육부담과 학업성적이 어려움으로 다소 높았고 장년층에서는 진로문제가 높아서 자녀양육 주기에 따른 욕구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표 4-36〉 부모특성별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시 어려운 비율	어려움 유형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부모 권위 없음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생활태도	게임 중독	기타	(분석대상)
전체	85.0	32.5	26.9	1.7	0.8	19.6	1.0	0.3	1.3	0.9	(1,051)
성별											
남성	82.2	37.0	27.5	1.9	0.7	11.9	0.8	0.3	1.3	0.9	(510)
여성	87.5	28.2	26.4	1.4	1.0	26.8	1.3	0.3	1.3	0.9	(541)
연령											
30~40세 미만	81.6	40.0	24.9	1.1	0.6	11.7	2.8	-	-	0.5	(104)
40~50세 미만	85.7	32.6	31.0	1.5	0.9	16.7	0.8	0.5	1.3	0.5	(678)
50~60세 미만	84.3	29.3	17.8	2.4	0.9	30.0	0.7	-	1.1	2.1	(263)
60~70세 미만	-	77.4	-	-	-	22.6	-	-	-	-	(3)
70세 이상	87.8	-	-	-	-	18.8	-	-	69.0	-	(3)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청소년자녀와의 갈등경험의 분석대상자는 기혼자 중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응답자 371명이다. 부모관점에서 최근 1년간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간에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45.4%로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 특히 청소년자녀의 연령이 만 15~17세인 경우 부모의 갈등경험은 44.1%, 만 18~24세는 43.3%로 자녀의 연령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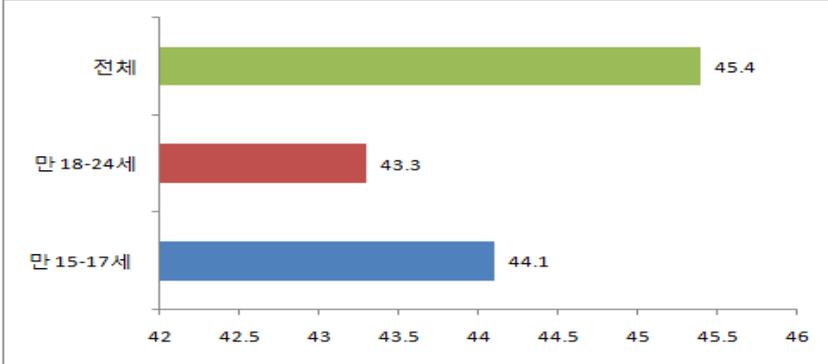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는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응답자 371명 중에서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24명이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간의 갈등 원인은 생활습관이 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업문제 22.7%, 취업 및 진로문제 11.3%로 많은 편이었으며, 이외에도 돈 문제, 이성 및 동성친구, 가사 돕는 문제, 다른 형제와의 불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갈등원인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중에서 만 15~17세는 친구 및 생활습관, 만 18~24세는 취업 및 진로로 인한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그림 4-17]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갈등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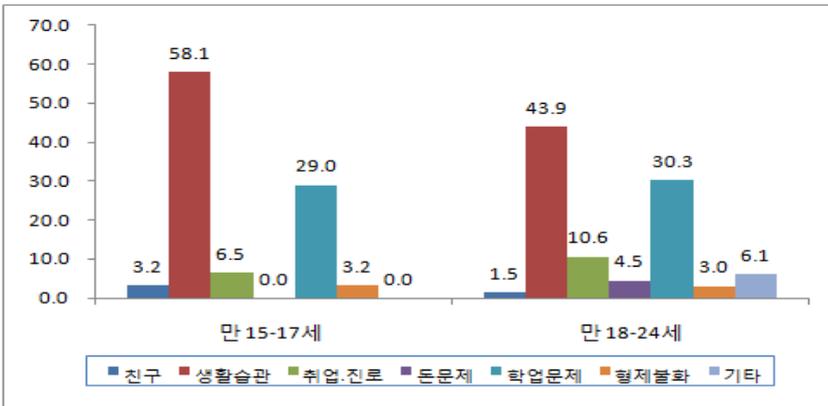
(단위: %)



주: 분석대상은 기혼자 중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3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그림 4-18]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갈등경험 원인

(단위: %)



주: 분석대상은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371명 중에서 갈등을 경험한 12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표 4-37〉 부모특성별 최근 1년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비율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원인								계(수)	χ^2
		이성 및 동성 친구	가사 돕는 문제	생활 습관	취업 및 진로 문제	돈문제	학업 문제	다른 형제 와의 불화	기타		
전체	45.4	3.3	3.3	48.7	11.3	4.7	22.7	2.7	3.3	100.0(124)	
성별											
남성	42.0	1.5	6.0	53.7	11.9	4.5	19.4	3.0	-	100.0(55)	10.100
여성	48.3	4.8	1.2	44.6	10.8	4.8	25.3	2.4	6.0	100.0(69)	
연령											
30~39세	55.0	-	-	58.3	-	-	16.7	8.3	16.7	100.0(11)	15.111
40~49세	45.4	3.6	4.8	49.4	8.4	3.6	25.3	2.4	2.4	100.0(69)	
50~69세	43.1	2.3	-	45.5	18.2	6.8	22.7	2.3	2.3	100.0(44)	
결혼기간											
20년 미만	46.9	2.6	2.6	57.9	5.3	-	18.4	7.9	5.3	100.0(38)	19.872
20~30년 미만	46.7	4.1	2.1	43.3	14.4	7.2	24.7	1.0	3.1	100.0(79)	
30년 이상	29.2	-	12.5	50.0	12.5	-	25.0	-	-	100.0(7)	

주: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비율 분석대상은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274명이며, 청소년갈등원인 분석은 갈등을 경험한 12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경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30대 연령층에서, 결혼기간이 10~30년 미만인 경우 전체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갈등원인도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가사돕는 문제,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 많았고, 여성은 이성 및 동성친구, 학업문제 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는 생활습관이, 또한 30대는 다른 형제와의 불화가, 40대와 60대는 학업문제 등이 전체보다 높았다.

〈표 4-38〉 부모특성별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기타	계(수)	χ^2
전체	8.1	63.7	24.2	4.0	100.0(124)	
성별						
남성	10.9	56.4	25.5	7.3	100.0(55)	4.468
여성	5.8	69.6	23.2	1.4	100.0(69)	
연령						
30~39세	9.1	63.6	27.3	-	100.0(11)	1.688
40~49세	5.8	65.2	24.6	4.3	100.0(69)	
50~69세	11.4	61.4	22.7	4.5	100.0(44)	
결혼기간						
20년 미만	2.6	60.5	28.9	7.9	100.0(38)	11.217
20~30년 미만	8.9	67.1	22.8	1.3	100.0(79)	
30년 이상	28.6	42.9	14.3	14.3	100.0(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0.8	64.6	23.1	1.5	100.0(65)	3.434
(전문) 대학 이상	5.1	62.7	25.4	6.8	100.0(59)	

주: 1)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대처 분석은 갈등을 경험한 124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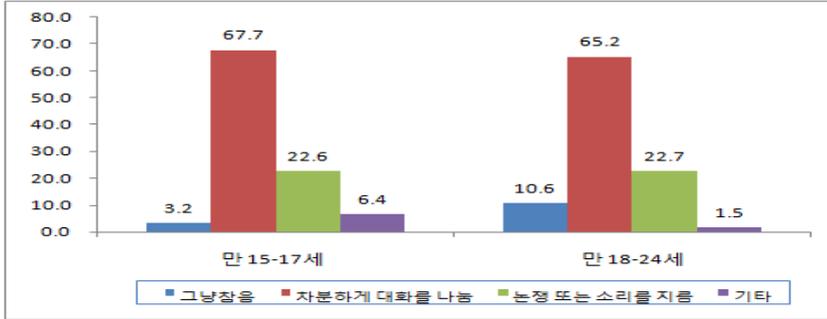
2) 기타에는 학교 및 교사,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24명이다.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방식은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63.7%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24.2%이었으며, 그냥 참는다는 8.1%로 미미하였다. 이외에 학교 및 교사, 주위사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극히 미미하였다. 대체로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은 비폭력적인 형태로 해결되고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9] 청소년기자녀의 연령별 청소년자녀와의 갈등대처 방식

(단위: %)



주: 분석대상은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대처 분석은 갈등을 경험한 12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2)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전화조사결과,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유무 분석대상자는 기혼자 746명으로 그 중 성인기 자녀가 있는 비율은 41.3%이었다. 성인기 자녀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35.7%, 미혼이 64.3%로 2/3의 분포를 보였고 성인기 자녀의 순위별로 부모와의 동거율을 보면 첫째자녀는 36.0%, 둘째는 29.4%로 첫째가 다소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가 있는 비율이 다소 많았고, 그중에서 남성은 성인기 자녀 중 미혼이, 여성은 기혼이 다소 많았으며, 자녀순위별 동거율은 전체와 유사하였다. 연령별로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비율은 11.7%~96.2%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인기 자녀의 결혼상태는 응답자의 연령이 적은 경우 미혼이, 연령이 많은 경우 기혼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첫째와 둘째 모두 응답자의 연령이 적은 경우 동거율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동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4-39〉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유무, 결혼상태 및 동거율

(단위: %, 명)

구분	성인기 자녀가 있는 비율	성인기 자녀 결혼상태			성인기 자녀와의 동거율	
		기혼	미혼	계(수)	첫째	둘째
전체	41.3	35.7	64.3	100.0(308)	36.0	29.4
성별						
남성	40.4	31.8	68.2	100.0(148)	35.8	32.2
여성	42.1	39.4	60.6	100.0(160)	36.6	26.8
연령						
40~49세	11.7	7.4	92.6	100.0(27)	63.0	46.2
50~59세	70.9	14.7	85.3	100.0(156)	44.2	46.9
60~69세	96.2	68.0	32.0	100.0(125)	20.0	10.9
결혼기간						
20~30년미만	31.7	-	100.0	100.0(66)	62.1	58.3
30년 이상	97.6	45.5	54.5	100.0(242)	28.9	26.2

주: 성인기 자녀 분석대상수는 746명이며, 성인기자녀의 결혼상태와 첫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308명, 둘째자녀와의 동거여부는 24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가 75.0%로 부모의 다수가 해당되었고, 자녀를 이해하는 편이다 88.3%, 자녀를 믿는 편이다는 91.6%로 나타나서 대다수의 부모가 성인기 자녀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간에 경제적인 도움 교류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34.1%,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았다가 21.1%이었고, 성인기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4.5%로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성인기 자녀와 부모 간에 경제적 도움 교류는 65.9%이었고,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자녀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4-40>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계(수)	평균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임	1.9	7.5	15.6	41.2	33.8	100.0(308)	3.97
자녀를 이해하는 편임	1.9	2.6	7.1	52.6	35.7	100.0(308)	4.18
자녀를 믿는 편임	1.0	1.3	6.2	48.7	42.9	100.0(308)	4.31

주: 성인기자녀와의 관계 분석대상수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308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표 4-41> 부모특성별 부모와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간 경제적 도움교류

(단위: %, 명)

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았다	본인(부모)만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성인기 자녀만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양쪽 모두 경제적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계(수)	χ^2
전체	21.1	40.3	4.5	34.1	100.0(308)	
성별						
남성	17.6	51.4	4.7	26.4	100.0(148)	15.421**
여성	24.4	30.0	4.4	41.3	100.0(160)	
연령						
40~49세	18.5	51.9	-	29.6	100.0(27)	23.454**
50~59세	21.8	48.1	1.3	28.8	100.0(156)	
60~69세	20.8	28.0	9.6	41.6	100.0(125)	
결혼기간						
20~30년 미만	16.7	57.6	-	25.8	100.0(66)	12.569**
30년 이상	22.3	35.5	5.8	36.4	100.0(24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5	26.5	7.2	45.8	100.0(83)	24.792*
300만원 미만	23.9	30.4	6.5	39.1	100.0(46)	
400만원 미만	13.3	55.6	4.4	26.7	100.0(45)	
500만원 미만	17.5	62.5	-	20.0	100.0(40)	
500만원 이상	19.0	47.6	3.2	30.2	100.0(63)	
응답자 근로여부						
근로	21.2	43.8	3.7	31.3	100.0(217)	5.089
비근로	20.9	31.9	6.6	40.7	100.0(91)	

주: 성인기자녀와의 경제적 교류 분석대상수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308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가,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적 교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연령층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가 많은 데 비해, 60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와 서로 경제적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 4-42〉 부모특성별 최근 1년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비율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원인								계(수)
		이성 친구 및 결혼 문제	생활비 부담 등 경제 문제	생활 습관	성격 및 정서 문제	직장 및 취업 문제	배우자 및 부모 문제	손자녀 양육	기타	
전체	28.6	11.3	12.3	28.3	16.0	22.6	0.9	3.8	4.7	100.0(88)
성별										
남성	31.1	16.7	11.1	31.5	11.1	24.1	-	1.9	3.7	100.0(46)
여성	26.3	5.8	13.5	25.0	21.2	21.2	1.9	5.8	5.8	100.0(42)
연령										
40~59세	28.4	9.6	3.8	30.8	13.5	32.7	-	3.8	5.8	100.0(52)
60~69세	28.8	13.9	13.9	22.2	16.7	19.4	2.8	5.6	5.6	100.0(36)
결혼기간										
20~30년 미만	33.3	-	9.1	36.4	18.2	27.3	-	-	9.1	100.0(22)
30년 이상	27.3	14.3	13.1	26.2	15.5	21.4	1.2	4.8	3.6	100.0(6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9	10.5	10.5	21.1	10.5	21.1	5.3	10.5	10.5	100.0(14)
300만원 미만	43.5	4.5	22.7	36.4	13.6	4.5	-	9.1	9.1	100.0(20)
400만원 미만	24.4	9.1	-	54.5	18.2	18.2	-	-	-	100.0(11)
500만원 미만	32.5	11.8	11.8	29.4	17.6	29.4	-	-	-	100.0(13)
500만원 이상	28.6	9.1	9.1	18.2	22.7	36.4	-	-	4.5	100.0(18)
근로여부										
근로	29.5	13.3	10.7	30.7	18.7	21.3	-	1.3	4.0	100.0(64)
비근로	26.4	6.5	16.1	22.6	9.7	25.8	3.2	9.7	6.5	100.0(24)

주: 성인기자녀와의 갈등경험 분석대상수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308명이며, 갈등원인은 갈등을 경험한 88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성인가자녀와의 갈등경험 분석대상은 성인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 308명으로 부모관점에서 최근 1년간 부모와 성인기 자녀 간에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28.6%로 성인기 자녀를 가진 응답자의 1/3에 못 미친다.

부모특성별로 보면,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경험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8%p 높았고, 결혼기간이 30년 미만인 응답자가 6.0%p 높았으며, 근로 중인 응답자가 비근로자보다 3.1%p 높았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갈등발생 원인 변화를 보면, 2007년에는 남편과 경제, 그리고 가족·친척·친지 문제, 생활습관과 직장취업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비해 2008년에는 비슷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졌고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43〉 부모-기혼자녀 간의 갈등원인 변화

(단위: %)

구분	경제적 문제	남편 문제	결혼 및 이성 친구 문제	가족·친척·친지 문제	자녀교육·돌보는 문제	자녀 출산문제	직장·취업문제	생활습관 문제
2007년	25.0	36.5	17.2	21.0	16.0	12.5	19.7	21.0
2008년	28.1	35.3	20.0	25.0	19.2	13.8	22.6	25.0
2010년	23.9	31.8	18.6	20.8	17.32	13.4	19.3	20.8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이에 비해 본 전화조사결과 나타난 갈등원인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성인기 자녀 간의 갈등원인 분석대상은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88명으로 부모와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원인은 생활습관이 2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 및 취업문제가 22.6%로 많았다. 이어서 성격 및 정서문제가 16.0%, 생활부담 등 경제문제는 12.3%, 이성 친구 및 결혼문제는 11.3% 이었다. 이외에 미미하나 손자녀 양육과 배우자 및 부모문제도 갈등원인

으로 지적되었다. 본 조사결과는 기혼과 미혼의 성인기 자녀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혼자녀의 갈등원인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자녀의 직장·취업과 생활습관, 경제문제 등은 비중 있는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별로 갈등원인을 보면, 남성응답자는 자녀의 이성 친구 및 결혼문제, 생활습관, 그리고 직장 및 취업문제 등이 많은 반면, 여성은 경제문제와 자녀의 성격·정서 문제가 많아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모 연령이 40~50대인 경우는 자녀의 생활습관과 직장 및 취업문제에 갈등원인이 집중된 반면, 60대는 이성 친구 및 결혼문제, 경제문제, 자녀성격·정서문제 등이 다소 많았으며, 결혼기간별로도 연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의 근로여부별로는 근로자는 자녀의 이성친구·결혼문제, 생활습관, 성격·정서 등 비경제적인 요인 등에 집중된 반면, 비근로자인 경우는 경제문제와 직장 및 취업문제 등 경제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부모의 경제적인 요인이 자녀와의 갈등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방식은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58.0%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그냥 참는다는 25.0%,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12.5%로 다소 적은 편이었으며, 극히 일부이나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부모의 특성별로는 남성인 경우는 차분하게 대화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높은 편이었고 여성은 그냥 참는다고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차분한 대화와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전체보다 높았고, 60대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결혼기간, 가구소득 및 근로여부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44〉 부모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전체	25.0	58.0	12.5	2.3	2.3	100.0(88)
성별						
남성	19.6	60.9	15.2	-	4.3	100.0(46)
여성	31.0	54.8	9.5	4.8	-	100.0(42)
연령						
40~59세	17.3	61.5	17.3	1.9	1.9	100.0(52)
60~69세	36.1	52.8	5.6	2.8	2.8	100.0(36)
결혼기간						
20~30년 미만	18.2	54.5	18.2	4.5	4.5	100.0(22)
30년 이상	27.3	59.1	10.6	1.5	1.5	100.0(6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2.9	50.0	7.1	-	-	100.0(14)
300만원 미만	20.0	70.0	-	5.0	5.0	100.0(20)
400만원 미만	9.1	54.5	27.3	-	9.1	100.0(11)
500만원 미만	15.4	69.2	15.4	-	-	100.0(13)
500만원 이상	33.3	44.4	22.2	-	-	100.0(18)
근로여부						
근로	20.3	59.4	14.1	3.1	3.1	100.0(64)
비근로	37.5	54.2	8.3	-	-	100.0(24)

주: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88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다. 고부 및 장서 관계 및 갈등양상

1) 고부 및 장서 관계

전화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1,000명 중에서 고부(장서)의 분석대상자수는 725명이며, 그 중 동거여부는 생존자 486명이다.

고부의 생존여부는 두 분 모두 살아계신 비율이 32.9%이었고 한분만 살아계신 비율은 31.0%,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비율은 36.1%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비율이 전체보다 낮았다. 한편, 장서의 생존여부는 두 분 모두

살아계신 비율이 35.0%, 한분만 살아계신 비율은 35.3%,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비율 29.7%로 나타나서 전체보다 살아계신 비율이 높았다.

생존하신 고부 및 장서를 대상으로 동거여부를 보면, 고부와 함께 사는 비율은 6.4%에 불과하며,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23.0%로 많았다. 또한 장서와 함께 사는 비율은 4.8%로 고부보다 낮았으며,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비율은 25.9%로 높았다. 이는 응답자의 형제간의 순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45〉 기혼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 생존과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고부(장서) 생존여부				고부(장서) 동거여부			
	두분 모두 살아 계심	한분만 살아 계심	두분 모두 돌아 가심	계(수)	함께 살고 계심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심	기타	계(수)
전체	33.9	33.1	33.0	100.0(725)	5.6	24.5	70.0	100.0(486)
성별								
남성	35.0	35.3	29.7	100.0(357)	4.8	25.9	69.3	100.0(251)
여성	32.9	31.0	36.1	100.0(368)	6.4	23.0	70.6	100.0(235)
연령								
19~29세	94.1	5.9	-	100.0(17)	-	41.2	58.8	100.0(17)
30~39세	70.3	25.7	4.1	100.0(148)	4.9	15.5	79.6	100.0(142)
40~49세	38.7	40.9	20.4	100.0(225)	5.6	22.3	72.1	100.0(179)
50~59세	15.1	39.2	45.8	100.0(212)	7.0	30.4	62.6	100.0(115)
60~69세	5.7	21.1	73.2	100.0(123)	6.1	45.5	48.5	100.0(33)
결혼기간								
5년 미만	77.8	16.7	5.6	100.0(54)	5.7	22.6	71.7	100.0(53)
5~10년 미만	77.3	15.9	6.8	100.0(88)	4.8	14.5	80.6	100.0(62)
10~20년 미만	57.4	32.4	10.1	100.0(148)	5.2	21.3	73.5	100.0(155)
20~30년 미만	28.4	40.4	31.3	100.0(208)	5.8	27.5	66.7	100.0(138)
30년 이상	7.3	29.8	62.9	100.0(248)	6.4	34.6	59.0	100.0(78)

주: 고부(장서) 생존 및 동거여부 분석대상수는 725명이며, 동거여부는 생존자 48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전화조사결과, 고부의 생활비 부담자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이 24.3%, 부모와 자녀 공동부담이 20.0% 순이었다. 한편 장서의 생활비 부담자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은 49.4%이었고, 이어서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이 27.1%, 부모와 자녀 공동 부담이 21.1%로 고부와 장서 모두 주로 부모님 당사자가 해결하며, 자녀가 일부 도와주는 형태를 보였다.

〈표 4-46〉 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의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부모와 자녀 공동부담	국가 및 사회	기타	계(수)	χ^2
전체	51.6	25.7	20.6	0.8	1.2	100.0(486)	
성별							
남성	49.4	27.1	21.1	0.4	2.0	100.0(251)	4.509
여성	54.0	24.3	20.0	1.3	0.4	100.0(235)	
연령							
19~39세	71.7	6.3	21.4	0.6	-	100.0(159)	77.405***
40~49세	48.0	27.9	20.7	1.7	1.7	100.0(179)	
50~59세	36.5	41.7	20.9	-	0.9	100.0(115)	
60~69세	27.3	51.5	15.2	-	6.1	100.0(33)	
결혼기간							
5년 미만	79.2	1.9	18.9	-	-	100.0(53)	80.043***
5~10년 미만	74.2	6.5	17.7	1.6	-	100.0(62)	
10~20년 미만	54.2	20.6	23.9	-	1.3	100.0(155)	
20~30년 미만	38.4	37.7	21.0	2.2	0.7	100.0(138)	
30년 이상	33.3	46.2	16.7	-	3.8	100.0(7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2	51.9	22.2	-	3.7	100.0(27)	26.334
300만원 미만	52.4	33.3	12.7	-	1.6	100.0(63)	
400만원 미만	53.3	21.5	23.4	1.9	-	100.0(107)	
500만원 미만	50.0	22.0	24.4	2.4	1.2	100.0(82)	
500만원 이상	55.0	24.9	18.9	-	1.2	100.0(169)	

주: 전체 1,000명 중 고부(장서)의 생활비 부담자는 고부(장서)가 생존한 48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며느리(사위)와 고부(장서) 간의 관계는 고부(장서)와 며느리(사위)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는 58.5%로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였고, 고부(장서)는 며느리(사위)를 이해하는 편이다는 70.4%로 다수 해당되었으며, 고부(장서)는 며느리(사위)를 믿는 편이다는 79.6%로 나타나서 며느리(사위)와 고부(장서) 간의 관계는 친밀도는 다소 떨어지나 신뢰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표 4-47〉 고부(장서)와의 관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계(수)	평균
고부(장서)와 며느리(사위)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임	2.5	13.8	25.3	38.3	20.2	100.0(486)	3.60
고부(장서)는 며느리(사위)를 이해하는 편임	2.7	6.6	20.4	50.6	19.8	100.0(486)	3.78
고부(장서)는 며느리(사위)를 믿는 편임	1.6	4.5	14.2	53.1	26.5	100.0(486)	3.98

주: 분석대상자는 전체 1,000명 중 고부(장서)가 생존한 48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양상

고부(장서)와의 갈등경험의 분석대상수는 고부 및 장서가 생존한 응답자 486명이다. 자녀관점에서 고부(장서)와의 갈등경험 비율은 28.2%로 1/4 이상이 고부(장서) 간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높아서 고부 간 갈등이 장서 간에 갈등보다 배가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체로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고부(장서) 갈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고부간에 갈등발생 원인 변화를 보면 이성 및 생활습관, 경제 및 남편문제, 직장취업 등이 다른 원인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2008년에는 이외에 가족친척·친지 문제와 자녀교육·돌봄, 그리고 자녀출산 문제가 갈등 원인으로 대두되었으며 2010년은 2007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48〉 고부간의 갈등원인 변화

(단위: %)

구분	경제적 문제	남편 문제	결혼 및 이성친구 문제	가족 친척·친지 문제	자녀교육 돌보는 문제	자녀출산 문제	직장취업 문제	생활습관 문제
2007년	22.8	22.0	29.7	19.4	15.4	16.2	20.4	23.5
2008년	28.9	27.8	27.7	25.5	19.1	22.2	26.2	26.4
2010년	25.7	25.6	24.8	22.9	17.7	19.5	23.6	24.6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이에 비해 본 조사결과 나타난 고부와의 갈등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부와의 갈등 원인의 분석대상수는 갈등을 경험한 137명으로 그중 성격 및 사고방식이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명절 및 제사문제 등을 포함한 가족 및 집안 행사 때문이 20.4%, 생활방식이 18.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문제, 부모부양 및 돌봄 등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서와의 갈등 원인도 고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조사결과 나타난 고부(장서) 간의 갈등원인은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원인분류상의 차이점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림에도 공통적으로 생활방식 또는 생활습관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49〉 응답자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갈등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고부(장서)와의 갈등비율	고부(장서) 갈등원인							계(수)	χ^2
		부모 부양 및 돌봄	경제 문제	재산 상속 문제	생활 방식	성격 및 사고방식	가족 및 집안행사 (명절제사 문제 포함)	기타 (배우자 부모문제)		
전체	28.2	7.3	8.0	2.9	18.2	36.5	20.4	6.6	100.0(137)	
성별										
남성	19.5	6.1	8.2	4.1	106.3	38.8	20.4	6.1	100.0(49)	.785
여성	37.4	7.9	8.0	2.3	19.3	35.2	20.4	6.8	100.0(88)	
연령										
19-39세	28.9	8.7	4.3	2.2	17.4	39.1	15.2	13.0	100.0(46)	12.376
40-49세	28.5	4.0	13.7	2.0	15.7	39.2	23.7	2.0	100.0(51)	
50-69세	27.0	10.0	5.0	5.0	22.5	30.0	22.5	5.0	100.0(40)	
결혼기간										
5년 미만	26.4	21.4	-	-	14.3	28.6	14.3	21.4	100.0(14)	40.988*
5-10년 미만	27.4	0	5.9	5.9	11.8	41.2	29.4	5.9	100.0(17)	
10-20년 미만	26.5	7.2	17.1	-	22.0	41.5	8.9	4.9	100.0(41)	
20-30년 미만	29.7	2.4	7.3	-	14.6	39.0	34.1	4.9	100.0(41)	
30년 이상	30.8	12.5	-	12.5	25.0	25.0	20.8	4.2	100.0(2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1.1	10.7	3.6	7.1	17.9	28.6	28.6	3.6	100.0(28)	10.464
400만원 미만	25.2	3.7	11.1	-	14.8	44.4	18.5	7.4	100.0(27)	
500만원 미만	25.6	14.4	4.8	-	14.3	38.1	19.1	9.6	100.0(21)	
500만원 이상	28.4	6.3	8.3	4.2	20.8	37.5	14.6	8.3	100.0(48)	

주: 고부(장서)와의 갈등비율의 분석대상수는 486명이며, 갈등원인은 그중 고부(장서)와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137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고부 간에 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37명으로 그 중에서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고, 다음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1/3 정도이었으며,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장서 간에 갈등 대처방식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50〉 응답자의 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계(수)	χ^2
전체	59.9	37.2	2.9	100.0(137)	
성별					
남성	57.1	36.7	6.1	100.0(49)	2.779
여성	61.4	37.5	1.1	100.0(88)	
연령					
19~39세	50.0	45.7	4.3	100.0(46)	2.955
40~49세	64.7	33.3	2.0	100.0(51)	
50~69세	65.0	32.5	2.5	100.0(40)	
결혼기간					
5년 미만	42.9	42.9	14.3	100.0(14)	9.172
5~10년 미만	64.7	35.3	-	100.0(17)	
10~20년 미만	63.4	34.1	2.4	100.0(41)	
20~30년 미만	61.0	39.0	-	100.0(41)	
30년 이상	58.3	37.5	4.2	100.0(2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7.1	35.7	7.1	100.0(28)	3.301
400만원 미만	66.7	33.3	-	100.0(27)	
500만원 미만	52.4	42.9	4.8	100.0(21)	
500만원 이상	60.4	37.5	2.1	100.0(48)	

주: 갈등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고부(장서)와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137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라. 형제자매 및 동서 갈등

1) 형제자매 관계 및 갈등양상

전화조사결과, 응답자의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93.8%로 대다수가 해당되었고, 응답자의 형제자매 순위는 첫째인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둘째, 넷째이상, 셋째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1〉 응답자의 특성별 형제자매 유무 및 순위

(단위: %, 명)

구분	형제자매 유무			순위				
	형제자매 있음	형제자매 없음	계(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계(수)
전체	93.8	6.2	100.0(1,000)	37.3	27.4	13.5	21.8	100.0(938)
성별								
남성	92.9	7.1	100.0(508)	36.7	30.9	11.4	21.0	100.0(472)
여성	94.7	5.3	100.0(492)	38.0	23.8	15.7	22.5	100.0(466)
연령								
19~29세	93.9	6.1	100.0(196)	53.8	39.1	6.0	1.1	100.0(184)
30~39세	94.3	5.7	100.0(210)	38.9	33.3	13.1	14.7	100.0(198)
40~49세	95.1	4.9	100.0(243)	31.2	25.1	13.4	30.3	100.0(231)
50~59세	92.8	7.2	100.0(221)	35.6	17.6	16.1	30.8	100.0(205)
60~69세	92.3	7.7	100.0(120)	24.2	20.8	21.7	33.3	100.0(120)

주: 친형제자매 순위의 분석대상수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에서 친형제자매가 있는 938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형제자매관계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이라는 52.1%로 과반수 정도이었고, 부모님이나 집안 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67.7%, 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편이다 46.9%,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이다 40.2%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 부양 및 경제적 도움은 일부 형제자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2〉 형제자매 간 관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계(수)	평균
형제자매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이다	8.2	23.1	16.5	36.2	15.9	100.0(938)	3.28
형제자매는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6.5	11.2	14.6	47.4	20.3	100.0(938)	3.64
형제자매는 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편이다	24.5	17.1	11.5	36.1	10.8	100.0(938)	2.92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이다	22.5	22.2	15.1	32.8	7.4	100.0(938)	2.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형제자매 갈등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형제자매가 있는 938명이고, 갈등원인은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86명이다.

최근 1년간 형제자매 간에 갈등비율은 19.8%이었고, 갈등원인은 성격 및 사고방식이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 및 집안 행사 때문이 17.7%, 경제문제와 부모부양 때문은 모두 12.4%, 생활방식 때문이 11.8%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형제자매 간 갈등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높은 편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형제자매 간 갈등이 많았다. 이는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53〉 응답자의 특성별 최근 1년간 형제자매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형제자매 갈등 비율	형제자매 갈등 원인							계(수)	χ ²
		부모 부양	경제 문제	재산 상속 문제	가족 및 집안행사 (명절·제사 포함)	생활 방식	성격 및 사고 방식	기타		
전체	19.8	12.4	12.4	5.9	17.7	11.8	34.9	4.8	100.0(186)	
성별										
남성	21.0	11.4	14.6	5.7	21.1	12.2	30.9	4.1	100.0(99)	4.811
여성	18.7	16.8	15.9	6.5	11.2	14.0	31.8	3.7	100.0(87)	
연령										
19~29세	15.2	-	3.6	-	3.6	14.3	71.4	7.1	100.0(28)	36.660*
30~39세	14.6	13.8	10.3	3.4	17.2	17.2	31.0	6.9	100.0(29)	
40~49세	24.7	12.3	15.8	7.0	21.1	7.0	33.3	3.5	100.0(57)	
50~59세	25.4	19.2	17.3	9.6	19.2	7.7	21.2	5.8	100.0(52)	
60~69세	16.7	10.0	5.0	5.0	25.0	25.0	30.0	-	100.0(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6	19.2	11.5	15.4	19.2	-	34.6	-	100.0(19)	13.222
고등학교	22.0	11.7	20.8	5.2	13.0	16.9	28.6	3.9	100.0(67)	
(전문)대학 이상	18.7	14.2	12.6	4.7	18.1	13.4	32.3	4.7	100.0(100)	

주: 1) 형제자매 갈등 비율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938명임.
 2) 형제자매 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수는 형제자매 갈등을 경험한 18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형제자매 간 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186명으로 그중에서 그냥 참는다가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37.1%,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1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미하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절한다는 심각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표 4-54〉 응답자의 특성별 형제자매 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형제자매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형제자매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형제자매와 의절한다	주위사람 또는 전문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χ^2
전체	45.2	37.1	12.4	0.5	2.7	1.1	1.1	100.0(186)	
성별									
남성	47.5	35.4	12.1	1.0	2.0	1.0	1.0	100.0(99)	1.681
여성	42.5	39.1	12.6	-	3.4	1.1	1.1	100.0(87)	
연령									
19~29세	35.7	21.4	39.3	3.6	-	-	-	100.0(28)	54.573 **
30~39세	31.0	44.8	17.2	-	-	6.9	-	100.0(29)	
40~49세	42.1	49.1	3.5	-	3.5	-	1.8	100.0(57)	
50~59세	61.5	25.0	7.7	-	3.8	-	1.9	100.0(52)	
60~69세	45.0	45.0	5.0	-	5.0	-	-	100.0(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7.9	26.3	5.3	-	10.5	-	-	100.0(19)	12.006
고등학교	49.3	32.8	14.9	-	1.5	1.5	-	100.0(67)	
(전문)대학 이상	40.0	42.0	12.0	1.0	2.0	1.0	2.0	100.0(100)	

주: 형제자매 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형제자매 갈등을 경험한 18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2) 동서관계 및 갈등양상

전화조사결과, 응답자 중에서 동서가 있는 비율은 68.4%이었으며, 동서순위는 첫째가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동서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4-55〉 응답자의 특성별 동서(남편형제의 배우자) 유무 및 순위

(단위: %, 명)

구분	동서 유무			순위				
	동서 있음	동서 없음	계(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계(수)
전체	68.4	31.6	100.0(342)	42.3	33.8	12.4	11.5	100.0(234)
연령								
19-39세	44.1	55.9	100.0(59)	38.5	46.2	11.5	3.8	100.0(26)
40-49세	70.4	29.6	100.0(115)	46.9	33.3	11.1	8.6	100.0(81)
50-59세	75.2	24.8	100.0(109)	45.1	25.6	15.9	13.4	100.0(82)
60-69세	76.3	23.7	100.0(59)	31.1	42.2	8.9	17.8	100.0(45)
결혼기간								
10년 미만	41.9	58.1	100.0(43)	55.6	33.3	11.1	-	100.0(18)
10-20년 미만	60.2	39.8	100.0(83)	54.0	34.0	6.0	6.0	100.0(50)
20-30년 미만	81.1	18.9	100.0(90)	35.6	35.6	16.4	12.3	100.0(73)
30년 이상	73.8	26.2	100.0(126)	38.7	32.3	12.9	16.2	100.0(93)

주: 동서유무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 상태인 342명이고, 그 중 동서순위는 동서가 있는 23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유배우인 응답자 676명 중 동서가 있는 342명을 대상으로 동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동서와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이다는 31.6%로 1/3에도 못 미쳤고, 동서와는 부모님이나 집안 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45.7%, 동서와는 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편이다 42.8%, 동서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편이다 20.1%로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부모님 부양 및 경제적 도움은 일부 형제자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서갈등 비율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 상태인 응답자 676명 중 남편의 형제자매가 있는 342명으로 최근 1년간 동서 간에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29.5%로 친형제자매의 갈등경험보다 9.7%p 높았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60대가 60대 미만보다 동서 간에 갈등이 다소 높았고, 결혼기간별로는 양극화를 보여 결혼기간이 20년 미만과 30년 이상인 경우에 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56〉 동서 간 관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계(수)	평균
동서와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이다	26.1	29.9	12.4	23.9	7.7	100.0(342)	2.57
동서와는 시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21.8	19.2	13.2	33.3	12.4	100.0(342)	2.95
동서와는 시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분담하는 편이다	30.3	17.5	9.4	32.5	10.3	100.0(342)	2.75
동서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이다	50.4	16.7	12.8	17.5	2.6	100.0(342)	2.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동서 간에 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67명이다. 갈등원인은 경제문제가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 및 사고방식이 29.0%, 명절 및 제사문제 10.1%, 시부모 부양 8.7%, 가족 및 집안 행사 때문이 7.2%, 생활방식과 재산상속 문제 모두 4.3% 순이었다. 친형제자매와 비교할 때 경제 및 부양 때문이 약 3배 높았고, 명절·제사를 포함한 가족 및 집안 행사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0세 미만은 성격 및 사고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명절·제사 등을 포함한 가족 및 집안행사 때문은 21.8%로 1/5에 해당되었다. 이에 비해 60대는 경제문제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시부모 부양도 전체보다 2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기간별로는 연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서와의 갈등을 경험한 69명을 대상으로 갈등의 대처방식을 조사한 결과, 그냥 참는다가 68.1%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동서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15.9%이었으며, 이어서 동서와 의절한다가 10.1% 적지 않아서 동서 간 갈등이 의절로까지 심각한 현상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형제자매와 비교할 때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약 23%p 높았으며, 의절

하는 경우는 약 4배 높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나 60세 미만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높은 데 비해, 60대는 동서와 의절한다가 전체 보다 약 3배 높았다. 결혼기간별로는 20년 미만인 경우 동서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높은 편이었으며, 동서와 의절하는 경우는 20년 미만과 30년 이상이 높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4-57〉 응답자의 특성별 최근 1년간 동서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동서 갈등 비율	동서갈등 원인							계(수)
		사부모 부양	경제 문제	재산 상속 문제	명절제사문제	가족 및 집안행사	생활 방식	성격 및 사고 방식	
전체	29.5	8.7	36.2	4.3	10.1	7.2	4.3	29.0	100.0(69)
연령									
60세 미만	29.1	7.3	30.9	3.6	12.7	9.1	3.6	32.7	100.0(55)
60-69세	31.1	14.3	57.1	7.1	-	-	7.1	14.3	100.0(14)
결혼기간									
20년 미만	32.4	9.1	27.3	9.1	9.1	13.6	9.1	22.7	100.0(22)
20-30년 미만	24.7	-	27.8	-	16.7	-	-	55.6	100.0(18)
30년 이상	31.2	13.8	48.3	3.4	6.9	6.9	3.4	17.2	100.0(29)

주: 1) 동서갈등 비율의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상태인 676명 중 남편의 형제자매가 있는 342명임.
 2) 동서갈등원인의 분석대상자는 갈등을 경험한 69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표 4-58〉 응답자의 특성별 동서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동서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동서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동서와 의절한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계(수)
전체	68.1	15.9	1.4	10.1	1.4	2.9	100.0(69)
연령							
60세 미만	67.3	20.0	1.8	5.5	1.8	3.6	100.0(55)
60-69세	71.4	-	-	28.6	-	-	100.0(14)
결혼기간							
20년 미만	54.5	18.2	4.5	13.6	4.5	4.5	100.0(22)
20-30년 미만	77.8	16.7	-	-	-	5.6	100.0(18)
30년 이상	72.4	13.8	-	13.8	-	-	100.0(29)

주: 동서 간에 갈등 대처방식의 분석대상자는 동서 갈등을 경험한 69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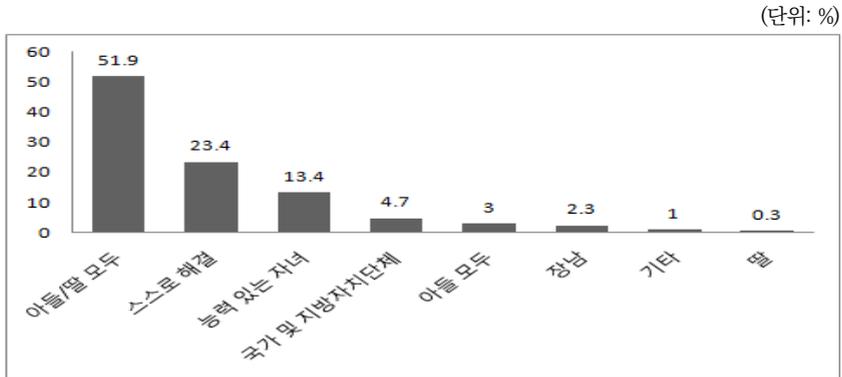
제4절 가족기능 갈등양상

1. 가족돌봄 환경 및 갈등 양상

가. 가족돌봄에 대한 견해

노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과반수이상인 51.9%가 아들딸 모두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3.4%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4%는 능력 있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낮게 나타났고, 아들(3.0%), 장남(2.3%)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0]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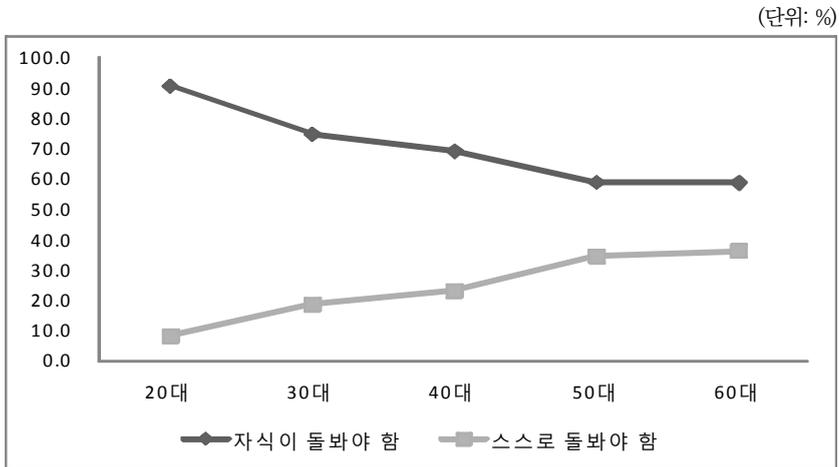
이는 과거 가부장적제도 내의 장남 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 인식이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스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과거 보다 많이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대가 5%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 반해 가족 내 부양과 개인 부양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현 돌봄 정책 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로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는 장남, 아들 모두, 딸과 아들·딸 모두, 그리고 능력 있는 자녀를 모두 포함한 비율은 남성(74.7%)이 여성(66.8%) 보다 높았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이(27.0%)이 남성(19.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4-21] 응답자의 연령별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주: 자식이 돌봐야 함은 장남, 아들모두, 딸, 아들/딸 모두, 능력있는 자녀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의 합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59〉 응답자의 특성별 노부모 부양책임자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장남	아들 모두	딸	아들/딸 모두	능력 있는 자녀	스스로 해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타	계(수)	χ^2
전체	2.3	3.0	0.3	51.9	13.4	23.4	4.7	1.0	100.0(1,000)	
성별										
남성	3.3	4.5	0.2	53.3	13.4	19.9	4.7	0.6	100.0(508)	17.680**
여성	1.2	1.4	0.4	50.4	13.4	27.0	4.7	1.4	100.0(492)	
연령										
19~29세	2.0	3.6	0.5	65.8	18.9	8.2	1.0	-	100.0(196)	92.416***
30~39세	1.9	1.4	1.0	56.7	13.8	18.6	5.2	1.4	100.0(210)	
40~49세	2.1	2.1	-	53.9	11.1	23.0	7.0	0.8	100.0(243)	
50~59세	1.8	4.1	-	42.1	10.9	34.4	5.4	1.4	100.0(221)	
60~69세	4.6	4.9	-	36.2	13.1	36.2	3.8	1.5	100.0(130)	

주: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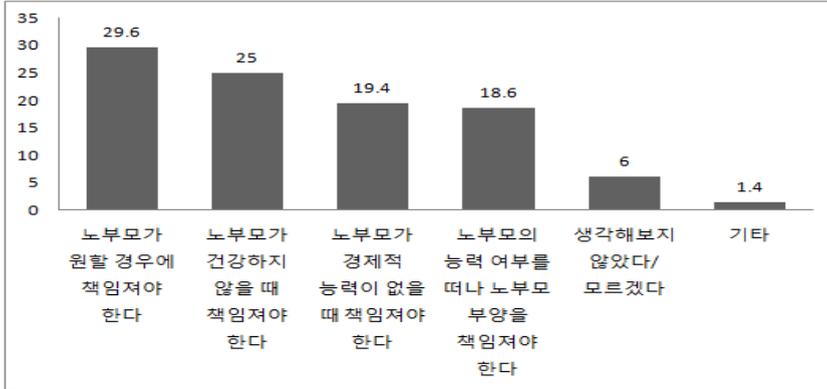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 책임정도에 대한 전체 의견은 노부모가 원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높았고,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25.0%),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19.4%), 노부모의 능력 여부를 떠나 책임이 있다(1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발적인 부양의식 보다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의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외의 응답은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노부모의 능력 여부를 떠나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23.6%인데 반해 여성은 13.4%였고, 여성의 경우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7.4%인데 반해 남성은 41.6%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부모 부양에 있어 노부모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2]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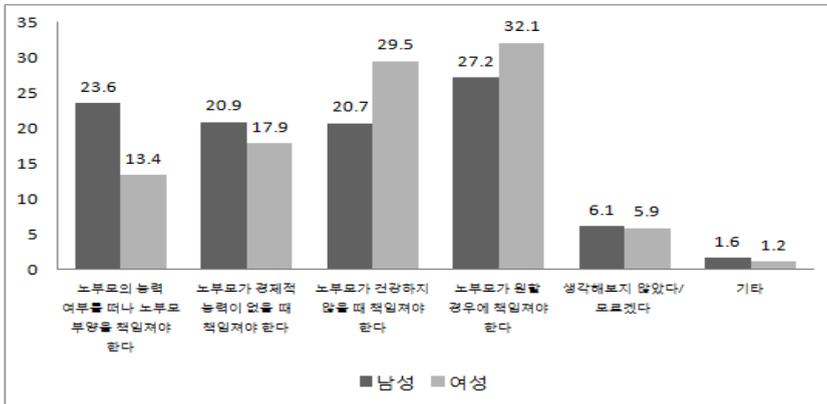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그림 4-23] 응답자의 성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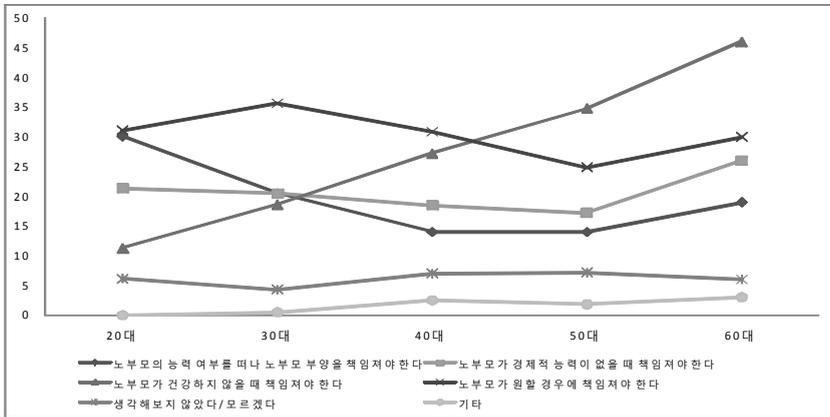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약 17%~21% 사이의 응답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60대에서 26.0%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경제적 부양에 대해 모든 연령대가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고 60대 이상이 되면 경제적 부양에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부모의 능력을 떠나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다가 60대 이상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또한 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기대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림 4-24] 응답자의 연령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정도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60〉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노부모의 능력 여부를 떠나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타	계(수)	χ^2
전체	18.6	19.4	25.0	29.6	6.0	1.4	100.0(1,000)	
성별								
남성	23.6	20.9	20.7	27.2	6.1	1.6	100.0(508)	25.202**
여성	13.4	17.9	29.5	32.1	5.9	1.2	100.0(492)	
연령								
19~29세	30.1	21.4	11.2	31.1	6.1	-	100.0(196)	80.631***
30~39세	20.5	20.5	18.6	35.7	4.3	0.5	100.0(210)	
40~49세	14.0	18.5	27.2	30.9	7.0	2.5	100.0(243)	
50~59세	14.0	17.2	34.8	24.9	7.2	1.8	100.0(221)	
60~69세	19.0	26.0	46.0	30.0	6.0	3.0	100.0(130)	

주: ***p<.001, **p<.01,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나. 가족돌봄 환경 및 돌봄자

전화조사결과, 응답자 중에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친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총 47.2%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과 함께 사는 비율은 30.9%,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비율은 16.3%로 나타났다.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 함께 동거 하는 비율은 총 30.1%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5.6%,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 비율은 친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 함께 동거 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1〉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나와 함께 산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산다	기타	계(수)
친부모님과 동거	30.9	16.3	52.7	100.0(753)
시부모/장인장모와 동거	5.6	24.5	70.0	100.0(4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부모님의 돌봄 필요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친부모의 경우 10.5%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는 15.2%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62〉 부모 돌봄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친부모님 돌봄 필요여부	10.5	89.5	100.0(753)
시부모/장인장모 돌봄 필요 여부	15.2	84.8	100.0(4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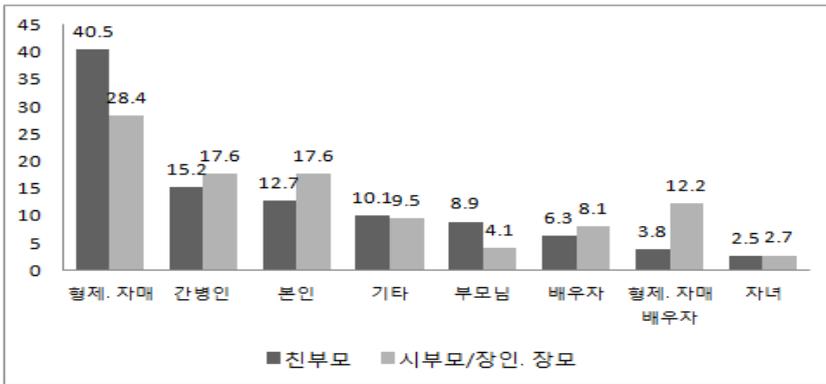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돌보는 사람은 친부모의 경우 형제·자매, 간병인, 본인, 기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 형제·자매, 간병인, 본인, 형제·자매, 기타,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친부모의 경우 부모 스스로 해결 한다는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 24.6%,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18.2%로 나타났다.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는 부모 스스로 해결 51.6%,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25.7%, 부모와 자

녀가 공동으로 부담 20.6%로 나타났다. 즉 현재 부모 부양에 있어 노인 스스로 해결 또는 자녀의 지원이 거의 98%이상을 차지하였고, 국가 및 사회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5]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주로 돌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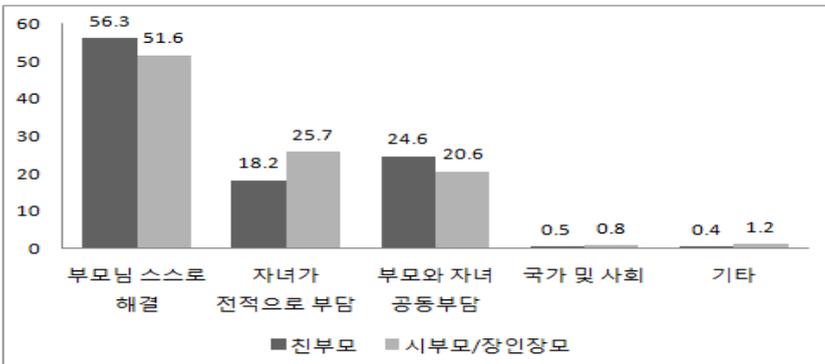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그림 4-26] 현재 친부모의 생활비 부담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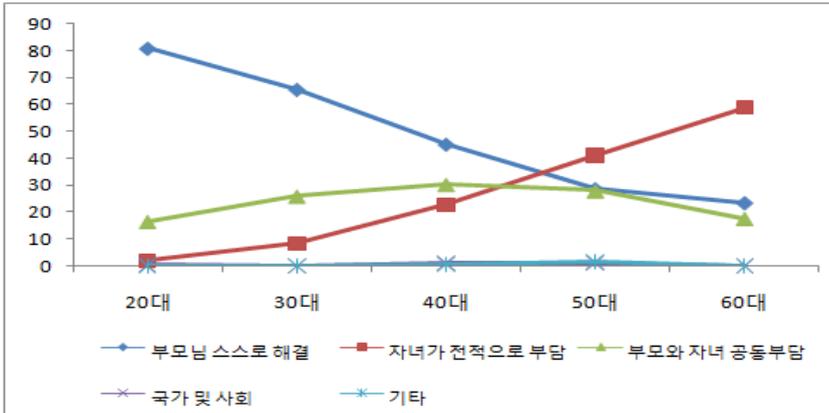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현재 친부모의 생활비 부담자를 보면, 성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의견에 있어서 40대 이하의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50대를 중심으로 응답 비율이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7] 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친부모의 생활비 부담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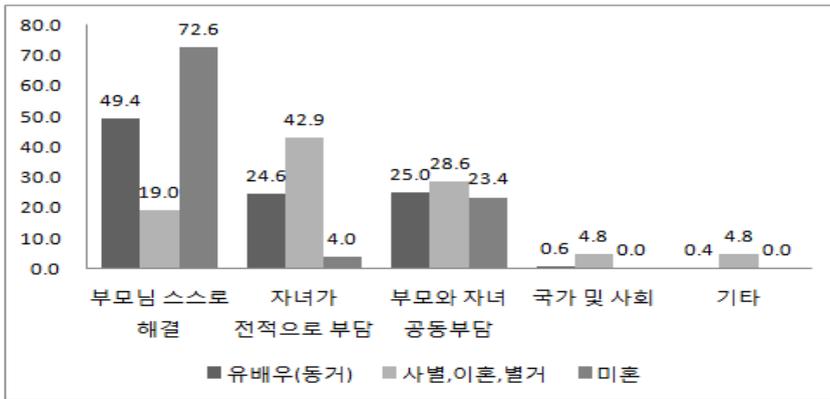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결혼상태별로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비율은 거의 모든 유형이 약 23%~29%사이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미혼자녀가 7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배우 자녀(49.4%), 사별·이혼·별거 자녀(19.0%)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정 반대의 비율로 나타나서 미혼자녀의 경우 4.0%, 유배우 자녀 24.6%, 사별·이혼·별거 자녀 42.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28] 응답자의 결혼상태별 현재 친부모 생활비 부담자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결혼기간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모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주길 바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비율은 5년 미만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4-63〉 응답자의 특성별 현재 친부모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부모와 자녀 공동부담	국가 및 사회	기타	계(수)	χ^2
전체	56.3	18.2	24.6	0.5	0.4	100.0(753)	
성별							
남성	54.1	20.2	25.5	-	0.3	100.0(381)	6.755
여성	58.6	16.1	23.7	1.1	0.5	100.0(372)	
연령							
19~29세	81.0	2.1	16.4	0.5	-	100.0(195)	176.250***
30~39세	65.7	8.5	25.9	-	-	100.0(201)	
40~49세	45.3	22.9	30.3	1.0	0.5	100.0(201)	
50~59세	28.7	41.0	27.9	0.8	1.6	100.0(122)	
60~69세	23.5	58.8	17.6	-	-	100.0(34)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49.4	24.6	25.0	0.6	0.4	100.0(480)	76.489***
사별·이혼·별거	19.0	42.9	28.6	4.8	4.8	100.0(21)	
미혼	72.6	4.0	23.4	-	-	100.0(252)	
결혼기간							
10년 미만	74.8	6.3	18.0	0.9	-	100.0(111)	80.228***
10~20년 미만	53.5	18.1	28.4	-	-	100.0(155)	
20~30년 미만	35.7	35.7	26.6	1.4	0.7	100.0(143)	
30년 이상	26.1	44.6	26.1	1.1	2.2	10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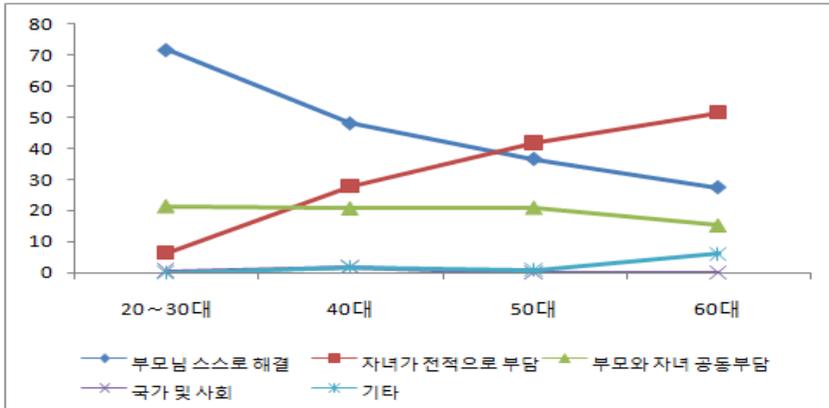
주: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현재 시부모/장인·장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친부모와 비슷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 눈이 띄는 분포의 차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의견에 있어서 40대 이전 연령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50대를 중심으로 응답 비율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9] 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시부모/장인·장모 생활비 부담자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결혼기간에 있어서도 친부모와 같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모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해주길 바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비율은 5년 미만~20년 미만까지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다가 20년 이상으로 가면서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친부모의 경우 5년 미만을 제외하면 비슷한 비율의 응답비율을 보였던 점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다.

그리고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 등의 지원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생활비지원에 기대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현 복지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4-64〉 응답자의 특성별 현재 시부모/장인장모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부모와 자녀 공동부담	국가 및 사회	기타	계(수)	χ^2
전체	51.6	25.7	20.6	0.8	1.2	100.0(486)	
성별							
남성	49.4	27.1	21.1	0.4	2.0	100.0(251)	4.509
여성	54.0	24.3	20.0	1.3	0.4	100.0(235)	
연령							
19~39세	71.7	6.3	21.4	0.6	-	100.0(159)	77.405***
40~49세	48.0	27.9	20.7	1.7	1.7	100.0(179)	
50~59세	36.5	41.7	20.9	-	0.9	100.0(115)	
60~69세	27.3	51.5	15.2	-	6.1	100.0(33)	
결혼기간							
10년 미만	76.5	4.3	18.3	0.9	-	100.0(115)	78.750***
10~20년 미만	54.2	20.6	23.9	-	1.3	100.0(155)	
20~30년 미만	38.4	37.7	21.0	2.2	0.7	100.0(138)	
30년 이상	33.3	46.2	16.7	-	3.8	100.0(78)	

주: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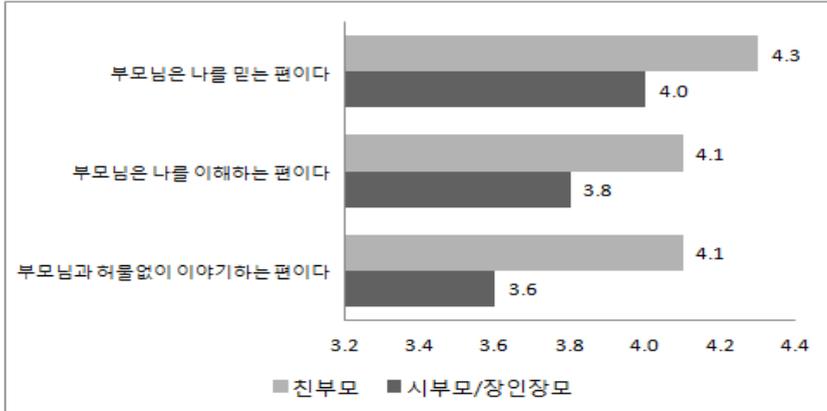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시부모 각각에 대하여 ① 부모님은 나를 믿는 편이다, ②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③ 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의 총 3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각 척도는 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균 4.2점으로 나타났고 시부모/장인장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균 3.8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점수 차이를 크게 보여 상대적으로 시부모/장인장모의 관계에서 대화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0] 부모와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단위: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65>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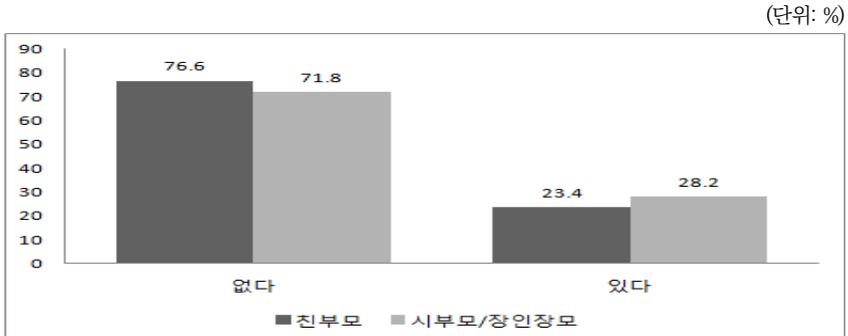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계(수)	평균
친부모	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4	4.5	14.9	42.2	36.0	100.0(753)	4.1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1.5	4.2	14.2	47.3	32.8	100.0(753)	4.1
	부모님은 나를 믿는 편이다	1.3	2.0	8.2	46.6	41.8	100.0(753)	4.3
시부모/장인·장모	시부모/장인·장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5	13.8	25.3	38.3	20.2	100.0(486)	3.6
	시부모/장인·장모님은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2.7	6.6	20.4	50.6	19.8	100.0(486)	3.8
	시부모/장인·장모님은 나를 믿는 편이다	1.6	4.5	14.2	53.1	26.5	100.0(486)	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다. 가족돌봄 갈등수준 및 원인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 경험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갈등을 경험한 정도는 친부모는 23.4%, 시부모/장인·장모는 28.2%로 친부모보다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약 5%p 정도 높아서 갈등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에서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 될 수 있다.

[그림 4-31]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유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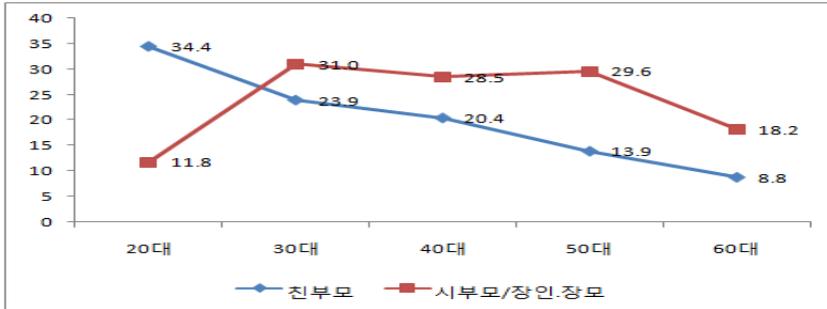
친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남성(22.0%)과 여성(24.7%)의 갈등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여성(37.4%)이 남성(19.5%)보다 약 18% 정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친부모와의 갈등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

록 갈등 경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경험 비율은 30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50대까지 약 29%~31%의 높은 비율로 유지되다가 60대 이후 서서히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친부모보다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2] 응답자의 연령별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경험 비율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66> 응답자의 특성별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유무

(단위: %, 명)

구분	친부모와의 갈등 유무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유무				
	있다	없다	계(수)	χ^2	있다	없다	계(수)	χ^2	
전체	23.4	76.6	100.0(753)		28.2	71.8	100.0(486)		
성별				9.191				27.194**	
남성	22.0	78.0	100.0(381)			19.5	80.5		100.0(251)
여성	24.7	75.3	100.0(372)		37.4	62.6	100.0(235)		
연령				24.250 ***				4.562	
19~29세	34.4	65.6	100.0(195)			11.8	88.2		100.0(17)
30~39세	23.9	76.1	100.0(201)			31.0	69.0		100.0(142)
40~49세	20.4	79.6	100.0(201)			28.5	71.5		100.0(179)
50~59세	13.9	86.1	100.0(122)			29.6	70.4		100.0(115)
60~69세	8.8	91.2	100.0(34)		18.2	81.8	100.0(33)		

주: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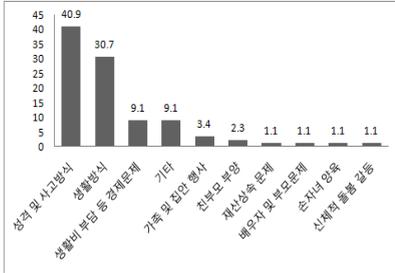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부모님과 자녀 간 갈등이 있는 경우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들이 친부모님 및 시부모/장인·장모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문제로 나타났다.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친부모와 자녀의 경우 71.6%에 달했고, 시부모/장인·장모와 자녀의 경우도 54.7%로 높았으나 그 외의 갈등 원인에 대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서로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이해함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임을 보여준다.

또한, 친부모와의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명절 및 제사문제(5.8%), 신체적 돌봄 갈등 문제(2.9%)가 시부모/장인·장모와의 사이에서는 갈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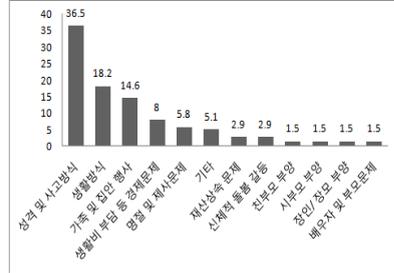
[그림 4-33] 친부모와의 갈등원인

(단위: %)



[그림 4-34]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원인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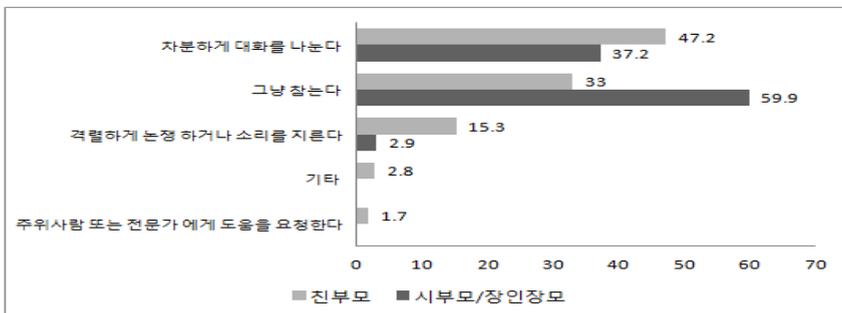
라. 가족돌봄 갈등의 대처방식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갈등 대처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부모와 자녀의 경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47.2%)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그냥 참는다(33.0%),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15.3%) 순으로 높았다. 시부모/장인·장모-자녀의 경우는 그냥 참는다(59.9%)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이어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37.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부모의 경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격렬하게 논쟁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갈등을 대처하는 비율이 62.5% 높게 나타나지만,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적는데 비해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약 60%로 높게 나타나 양가 부모님에 대한 갈등 대처방식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35] 부모님과의 갈등 대처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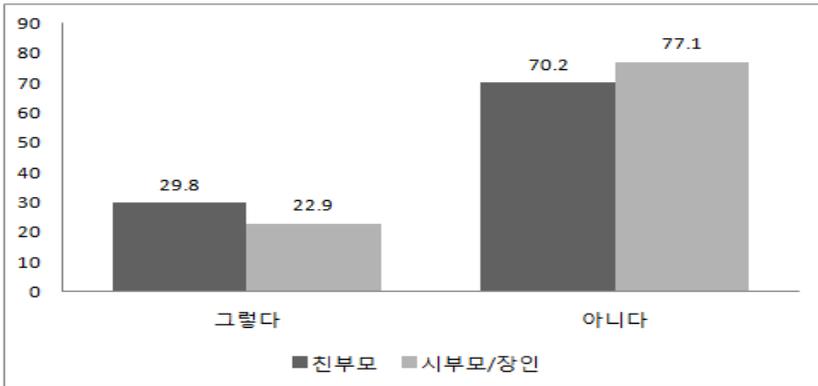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2. 손자녀 돌봄갈등 양상

본 전화조사결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의 손자녀 돌봄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인 비율은 친부모의 경우 29.8%, 시부모/장인·장모의 경우 22.9%로 나타나 친부모의 손자녀 돌봄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부모님의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 참여 여부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성별로 친부모님의 손자녀 돌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응답자는 33.3%로 남성응답자의 26.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부모/장인·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도 여성응답자가 26.1%로 남성응답자의 20.6% 보다 다소 높았으며 응답자의 성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4-67>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님의 손자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봄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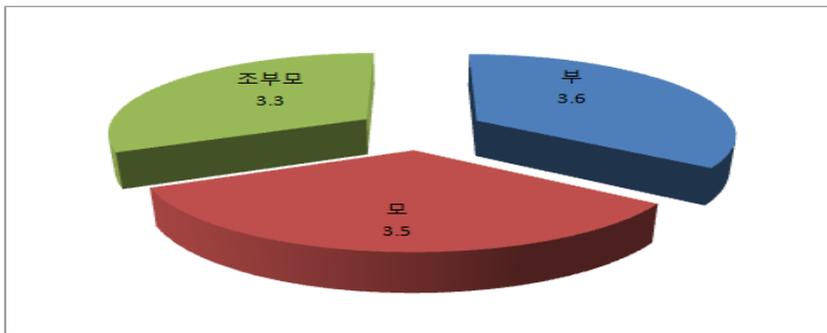
구분	친부모의 손자녀 돌봄 여부				시부모/장인장모의 손자녀 돌봄 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χ^2	그렇다	아니다	계(수)	χ^2
전체	29.8	70.2	100.0(104)		22.9	77.1	100.0(109)	
성별								
남성	26.8	73.2	100.0(56)	.530	20.6	79.4	100.0(63)	.447
여성	33.3	66.7	100.0(48)		26.1	73.9	100.0(46)	
근로여부								
근로	32.5	67.5	100.0(83)	1.456	25.0	75.0	100.0(88)	1.101
비근로	19.0	81.0	100.0(21)		14.3	85.7	100.0(21)	
가구형태								
부부+미혼자녀가구	23.6	76.4	100.0(89)	11.382**	22.0	78.0	100.0(91)	.286
3세대 및 기타가구	66.7	33.3	100.0(15)		27.8	72.2	100.0(18)	

주: ***p<.001, **p<.01,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 상의 만족도 및 어려움 정도를 보며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 상의 만족도는 조부모가 5점 만점에서 3.3점으로 부모 만족도인 3.5~3.6점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림 4-37]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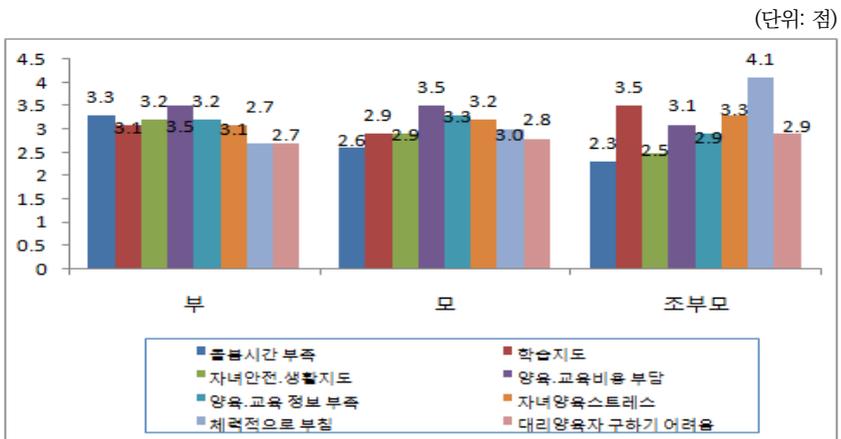


주: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으로 조부모는 부모에 비해 돌봄 시간의 부족(2.3점), 자녀안전 및 생활지도(2.5점),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3.3점), 양육 및 교육 정보 부족(2.9점) 등의 평균점수는 낮은 편이었고, 자녀학습지도의 어려움(3.5점), 자녀양육 스트레스(3.3점), 체력적으로 부침(4.1점), 대리양육자 구하기 어려움(2.9점) 등은 평균점수는 높았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돌봄시간의 여유나 손자녀의 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 및 교육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은 높으나, 부모에 비해 손자녀 양육에 있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치며, 학습지도의 어려움 및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손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은 손자녀 돌봄의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4-38]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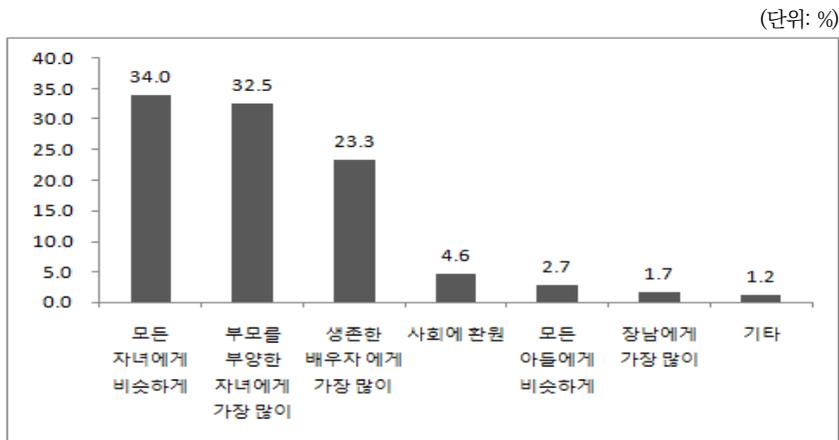
주: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3. 상속제사관 및 가족 내 상속갈등 양상

가. 유산상속에 대한 견해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가장 적절한 유산상속 방식으로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상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가장 많이 상속해야 한다(32.5%),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상속해야 한다(23.3%) 순으로 많았다. 반면, 모든 아들에게 비슷하게 상속해야 한다(2.7%), 장남에게 가장 많이 상속해야 한다(1.7%),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4.6%) 등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4-39]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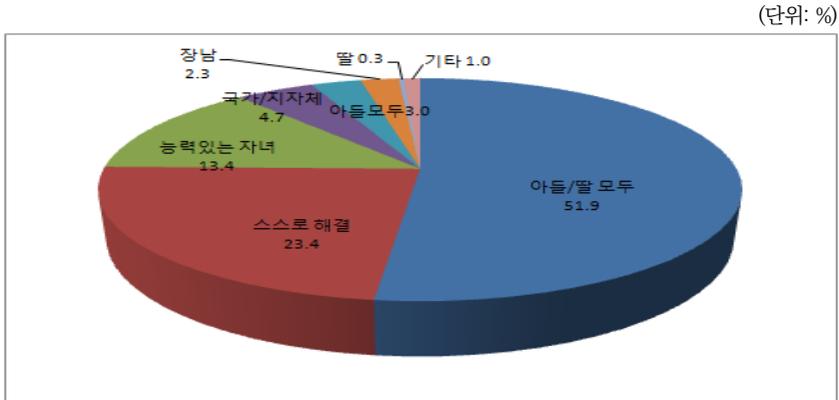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이는 부양책임을 묻는 질문에 부양책임을 아들·딸 모두(51.9%)와 능력 있는 자녀(13.4%)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남과

아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5.3%에 불과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장남과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이 줄어드는 현상과 맞물려 유산도 장남과 아들 보다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모든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 미만으로 미미하나 응답순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4-40]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견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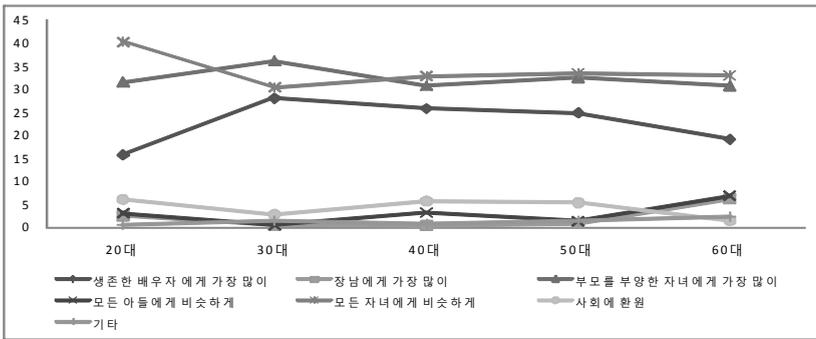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 방식에 대한 성별 견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가장 많이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해야 한다는 비율은 30대에

가장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상속해야 한다는 비율은 30대에 30.5%로 가장 낮았으나, 40대부터 증가하여 60대까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림 4-41] 응답자의 연령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 방식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68> 응답자의 특성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상속방식

(단위: %, 명)

구분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장남에게 가장 많이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가장 많이	모든 아들에게 비슷하게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사회에 환원	기타	계(수)	χ^2
전체	23.3	1.7	32.5	2.7	34.0	4.6	1.2	100.0(1,000)	
성별									
남성	22.0	2.0	32.7	3.5	33.9	4.9	1.0	100.0(508)	4.501
여성	24.6	1.4	32.3	1.8	34.1	4.3	1.4	100.0(492)	
연령									
19~29세	15.8	2.6	31.6	3.1	40.3	6.1	0.5	100.0(196)	57.069***
30~39세	28.1	0.5	36.2	0.5	30.5	2.9	1.4	100.0(210)	
40~49세	25.9	0.4	30.9	3.3	32.9	5.8	0.8	100.0(243)	
50~59세	24.9	0.9	32.6	1.4	33.5	5.4	1.4	100.0(221)	
60~69세	19.2	6.2	30.8	6.9	33.1	1.5	2.3	100.0(130)	

주: ***p<.001, **p<.01,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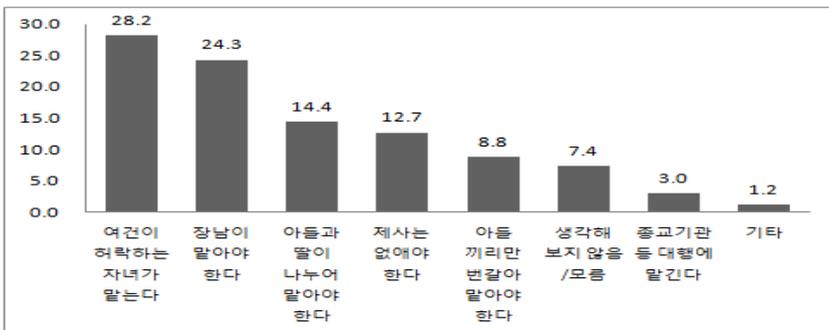
나. 제사풍속에 대한 견해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사 풍속에 대해서는 여건이 있는 자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24.3%,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 14.4%, 아들끼리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8.8%로 나타났다. 즉 장남과 아들에 대한 제사의 의무 기대가(33.1%) 여건이 허락되는 자녀 또는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42.6%) 의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노부모 부양과 유산상속에 대한 응답과 맞물려 장남 또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 또는 책임이 이제는 아들·딸의 모든 자식으로서 동등하게 분배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사는 없애야 한다는 응답도 12.7%를 차지하였고, 제사를 종교기관 등 대행에 맡긴다는 의견도 3.0%로 나타나 제사를 자식들이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42]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 풍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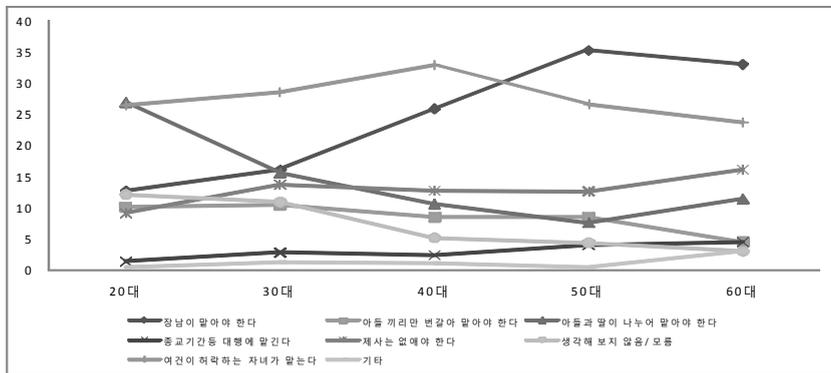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성별로 살펴보면 여건이 허락하는 자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30.9%) 여성보다(17.5%)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사를 없애야 한다 또는 종교기관 등 대행에 맡긴다는 의견은 남성보다(9.9%) 여성에게서(21.8%)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비율은 12.8%~35.3%로 6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들끼리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비율은 낮아졌다. 여건이 허락하는 자녀가 맡아야 한다는 비율은 40대에 32.9%로 가장 높았으나 4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23.8%~28.6% 사이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종교기관 등 대행에 맡긴다는 의견도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미하나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림 4-43] 응답자의 연령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 풍속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69〉 응답자의 특성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사풍속

(단위: %, 명)

구분	장남이 말아야 한다	아들 끼리만 번갈아 말아야 한다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말아야 한다	종교 기관 등 대행 등에 맡긴다	제사는 없애야 한다	여건이 허락 하는 자녀가 맡는다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름	계(수)	χ^2
전체	24.3	8.8	14.4	3.0	12.7	28.2	1.2	7.4	100.0(1,000)	
성별										
남성	30.9	9.8	11.4	0.6	9.3	29.1	0.8	8.1	100.0(508)	58.253
여성	17.5	7.7	17.5	5.5	16.3	27.2	1.6	6.7	100.0(492)	***
연령										
19~29세	12.8	10.2	27.0	1.5	9.2	26.5	0.5	12.2	100.0(196)	100.270 ***
30~39세	16.2	10.5	15.7	2.9	13.8	28.6	1.4	11.0	100.0(210)	
40~49세	25.9	8.6	10.7	2.5	12.8	32.9	1.2	5.3	100.0(243)	
50~59세	35.3	8.6	7.7	4.1	12.7	26.7	0.5	4.5	100.0(221)	
60~69세	33.1	4.6	11.5	4.6	16.2	23.8	3.1	3.1	100.0(130)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29.3	8.0	9.9	3.3	14.3	28.0	1.3	5.9	100.0(698)	78.338 ***
사별·이혼·별거	13.6	13.6	9.1	13.6	4.5	36.4	-	9.1	100.0(48)	
미혼	13.9	10.3	24.8	1.7	9.6	28.1	1.0	10.6	100.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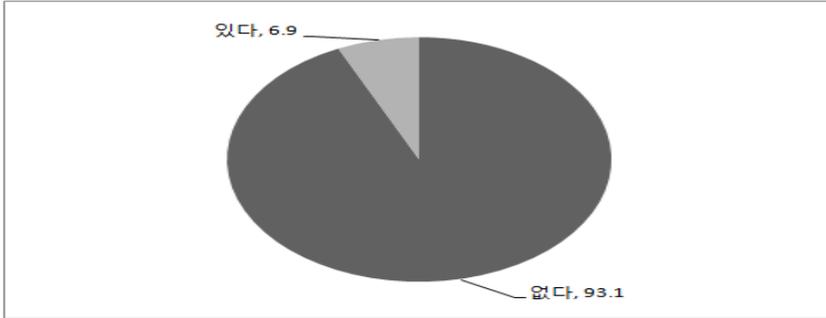
주: ***p<.001, **p<.01,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 결과임.

다. 가족 내 상속갈등 수준 및 원인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6.9%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44]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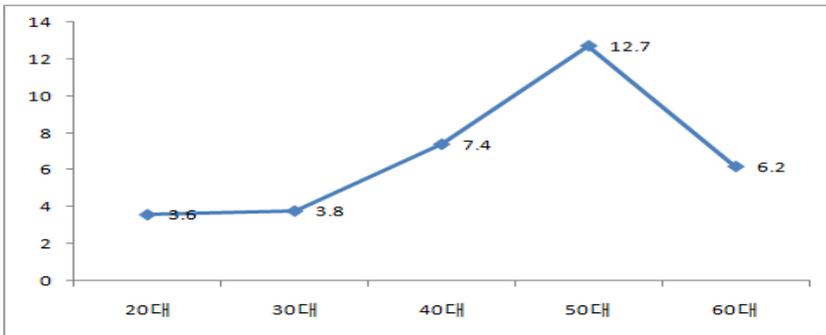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중 성별에 따른 갈등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별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등 경험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 50대에는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후는 재산 갈등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4-45] 응답자의 연령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률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70〉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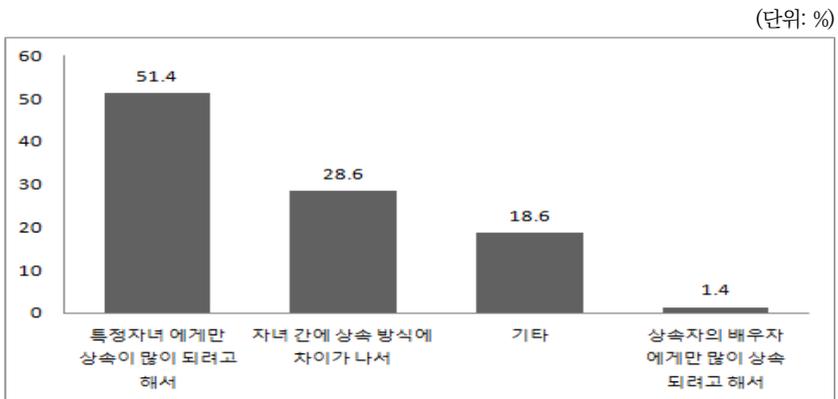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χ^2
전체	6.9	93.1	100.0(1,000)	
성별				
남성	7.1	92.9	100.0(508)	.056
여성	6.7	93.3	100.0(492)	
연령				
19~29세	3.6	96.4	100.0(196)	18.165**
30~39세	3.8	96.2	100.0(210)	
40~49세	7.4	92.6	100.0(243)	
50~59세	12.7	87.3	100.0(221)	
60~69세	6.2	93.8	100.0(130)	

주: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이 많이 되려고 해서 (51.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 간에 상속 방식에 차이가 나서 (28.6%)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46]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 갈등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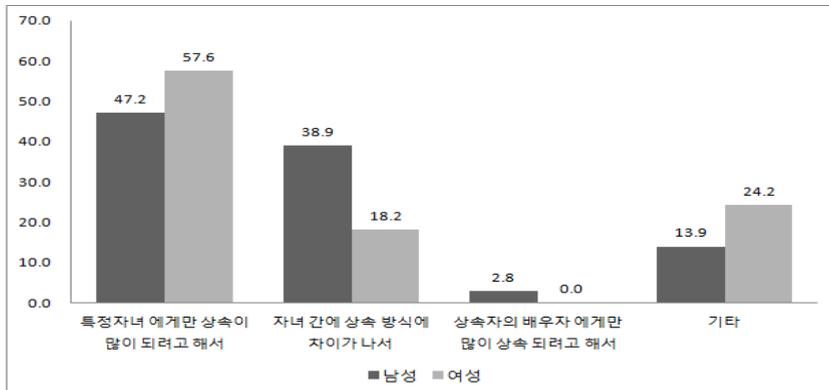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자수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재산상속갈등을 경험한 69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성별로 갈등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이 많이 되려고 해서(57.6%)가 자녀간의 상속방식에 차이가 나서(18.2%)보다 응답 비율이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이 많이 되려고 해서(47.2%)라는 응답과 자녀 간에 상속 방식에 차이가 나서(38.9%)라는 응답의 비율이 약 8% 정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성은 상속방식 보다는 특정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상속 관련 다툼의 원인이고, 남성은 특정자녀에게 상속되는 문제와 상속 방식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에서 상속갈등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7] 응답자의 성별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 관련 갈등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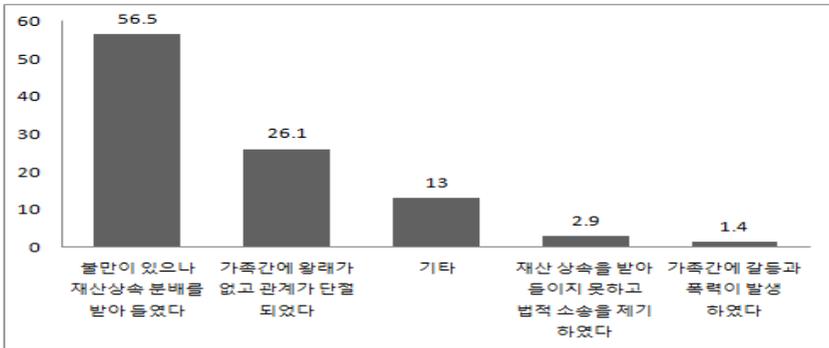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자수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재산상속갈등을 경험한 69명이며, 그중 남성 36명, 여성 33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라. 가족 내 상속갈등 대처방식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의 약 80%는 특정 자녀에게 상속이 많이 되거나 자녀 간 상속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갈등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산상속 갈등의 대처방식으로는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였다는 경우가(56.5%)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족 간의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 되는 경우도(26.1%) 많았으며, 이외에 미미하나 재산 상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적소송을 제기 한 경우(2.9%) 그리고 가족 간에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 경우(1.4%)도 발견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30.4%는 재산상속 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폭력발생부터 법적소송,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8] 가족 내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된 갈등 대처방식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성별로 갈등 대처방식은 남녀 모두 불만은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8%p 높아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족 간에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 8%p 높았고, 가족 간에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낮은 비율이지만 남성응답자의 경우만 2.8%의 비율을 보였다.

〈표 4-71〉 응답자의 성별 재산문제와 관련된 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였다	가족간에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가족간에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였다	재산상속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타	계(수)
전체	56.5	26.1	1.4	2.9	13.0	100.0(69)
성별						
남성	58.3	22.2	2.8	2.8	13.9	100.0(36)
여성	54.5	30.3	-	3.0	12.1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4. 성인자녀의 부모의존과 갈등

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최근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이 증가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을 사회적으로는 일명 썬더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썬더족이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 젊은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 또는 경제기반을 의지하는 40~50대의 썬더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추세이다.

전화조사결과, 성인기 자녀 중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60.5%, 기혼이 39.5%로 미혼이 많았다. 이들 자

녀와의 동거율은 자녀순위가 첫째인 경우 42.7%, 둘째는 32.6%로 첫째가 다소 많았다. 성인기자녀의 자녀의 결혼상태는 응답자의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라는 약 76%로 가장 낮았고, 자녀를 이해하는 편이다와 자녀를 믿는 편이라는 약 87%~89%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경제적인 의존과 관계없이 부모와 성인자녀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표 4-72〉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 유무, 결혼상태 및 동거율

(단위: %, 명)

구분	성인기 자녀 결혼상태			성인기 자녀와의 동거율	
	기혼	미혼	계(수)	첫째	둘째
전체	39.5	60.5	100.0(124)	42.7	32.6
응답자 성					
남성	40.8	59.2	100.0(76)	44.7	34.5
여성	37.5	62.5	100.0(48)	39.6	29.4
응답자 연령					
40~49세	7.1	92.9	100.0(14)	71.4	57.1
50~59세	32.0	68.0	100.0(75)	42.7	42.3
60~69세	68.6	31.4	100.0(35)	31.4	12.1
응답자 결혼기간					
20~30년 미만	2.6	97.4	100.0(38)	63.2	50.0
30년 이상	55.8	44.2	100.0(86)	33.7	29.5

주: 분석대상수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 308명중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기 자녀를 둔 응답자 12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표 4-73〉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계(수)	평균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임	0.8	6.5	16.9	43.5	32.3	100.0(124)	4.00
자녀를 이해하는 편임	1.6	4.0	5.6	53.2	35.5	100.0(124)	4.17
자녀를 믿는 편임	-	2.4	10.5	43.5	43.5	100.0(124)	4.28

주: 분석대상수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124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나.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갈등경험 및 원인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가진 응답자 124명을 대상으로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모의 관점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경험 비율을 보면 32.3%로 일반 성인자녀와의 갈등 경험인 28.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60대 연령층이 40~59세 연령층보다, 비근로자인 경우 성인자녀와의 갈등 경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인자녀 중 갈등을 경험한 40명을 대상으로 성인자녀와의 갈등원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이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 및 취업문제, 이성친구 및 결혼문제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별로는 남성은 성인자녀의 이성친구 및 결혼문제, 성격 및 정서문제, 직장 및 취업문제 때문에, 여성은 생활비 부담 등 경제문제, 생활습관 때문에 가족갈등을 경험하였다. 연령별로는 40~59세 연령층은 성인자녀의 생활습관, 성격 및 정서문제, 직장 및 취업문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반면, 50~69세는 이성친구 및 결혼문제, 생활비 부담 등 경제문제, 손자녀 양육 등으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표 4-74〉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 및 원인

(단위: %, 명)

구분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비율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 원인								
		이성 친구 및 결혼 문제	생활비 부담 등 경제 문제	생활 습관	성격 및 정서 문제	직장 및 취업 문제	배우자 및 부모 문제	손자녀 양육	기타	계(수)
전체	32.3	15.0	5.0	32.5	10.0	25.0	2.5	5.0	5.0	100.0(40)
응답자 성										
남성	30.3	17.4	4.3	26.1	13.0	30.4	-	4.3	4.3	100.0(23)
여성	35.4	11.8	5.9	41.2	5.9	17.6	5.9	5.9	5.9	100.0(17)
응답자 연령										
40~59세	30.3	14.8	-	37.0	11.1	29.6	-	3.7	3.7	100.0(27)
60~69세	37.1	15.4	15.4	23.1	7.7	15.4	7.7	7.7	7.7	100.0(13)
응답자의 결혼기간										
20~30년 미만	34.2	-	-	53.8	7.7	30.8	-	-	7.7	100.0(13)
30년 이상	31.4	22.2	7.4	22.2	11.1	22.2	3.7	7.4	3.7	100.0(27)
응답자 근로여부										
근로	29.5	17.9	3.6	35.7	10.7	25.0	-	3.6	3.6	100.0(28)
비근로	41.4	8.3	8.3	25.0	8.3	25.0	8.3	8.3	8.3	100.0(12)

주: 분석대상수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기 자녀를 둔 124명이며, 그중에서 갈등원인은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40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다.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성인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40명을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식을 보면,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62.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그냥 참는다는 22.5%로 1/5에 해당되었으며,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15.0%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전체와 유사하였으나 특히 남성과 40~59세 연령층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과 60대 연령층은 그냥 참는 경향이 많았다.

〈표 4-75〉 응답자의 특성별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그냥 참는다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계(수)
전체	22.5	62.5	15.0	100.0(40)
응답자 성				
남성	17.4	60.9	21.7	100.0(23)
여성	29.4	64.7	5.9	100.0(17)
응답자 연령				
40~59세	14.8	66.7	18.5	100.0(27)
60~69세	38.5	53.8	7.7	100.0(13)
응답자의 결혼기간				
20~30년 미만	15.4	61.5	23.1	100.0(13)
30년 이상	25.9	63.0	11.1	100.0(27)
응답자 근로여부				
근로	14.3	71.4	14.3	100.0(28)
비근로	41.7	41.7	16.7	100.0(12)

주: 분석대상자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 124명 중에서 갈등을 경험한 40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5. 일가족 양립 환경 및 갈등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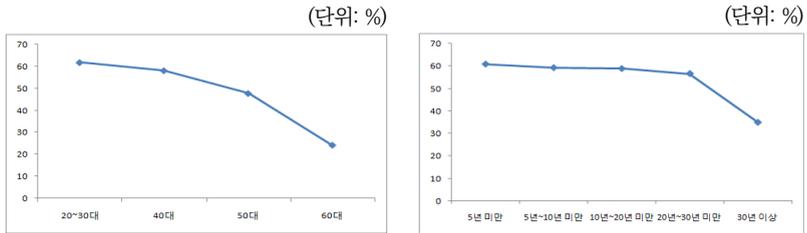
가. 일가족 양립 환경

전화조사결과, 맞벌이 부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9.9%는 맞벌이 부부이었고, 나머지 50.1%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맞벌이 부부 가정으로 파악 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 24.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별로는 5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맞벌이 부부 비율을 보였고 그 비율이 20년~30년까지 결혼기간별로 소폭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0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9] 응답자의 연령별 맞벌이 부부 비율 [그림 4-50] 응답자의 결혼기간별 맞벌이 부부 비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표 4-76> 응답자의 특성별 맞벌이 부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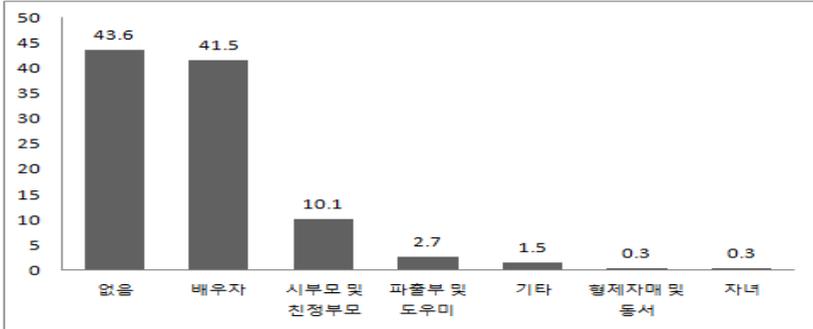
구분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아님	계(수)
전체	49.9	50.1	100.0(676)
성별			
남성	49.1	50.9	100.0(334)
여성	50.6	49.4	100.0(342)
연령			
19~39세	61.8	38.2	100.0(123)
40~49세	58.1	41.9	100.0(227)
50~59세	47.7	52.3	100.0(214)
60~69세	24.1	75.9	100.0(112)
결혼기간			
5년 미만	60.9	39.1	100.0(46)
5년~10년 미만	59.3	40.7	100.0(54)
10년~20년 미만	58.9	41.1	100.0(151)
20년~30년 미만	56.7	43.3	100.0(180)
30년 이상	35.1	64.9	100.0(2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사 및 양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3.6%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는 경우도 그 대상이 배우자 (41.5%)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부모 및 친정부모인 경우가 10.1%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51.6%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1]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양육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자 676명 중 맞벌이 부부인 337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기존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보면 보통이 약 59%로 가장 높았고, 균형하다는 비율은 불균형보다 11.3%p 높았다(여성가족부, 2010).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불균형을 높게 인지하였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일·가정의 불균형을 높게 인지하여 일·가정의 갈등과 이로 인한 문제 야기가 예상된다.

<표 4-77> 응답자의 특성별 일·가정의 균형도

(단위: %, 명, 점)

구분	균형	보통	불균형	계(수)	평균
전체	26.2	58.9	14.9	100.0(2,508)	3.1
성별					
남성	26.3	60.1	13.6	100.0(1,692)	3.1
여성	26.0	56.2	17.8	100.0(816)	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8	59.0	17.2	100.0(897)	3.1
홀벌이	31.8	56.0	12.2	100.0(1,098)	3.2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1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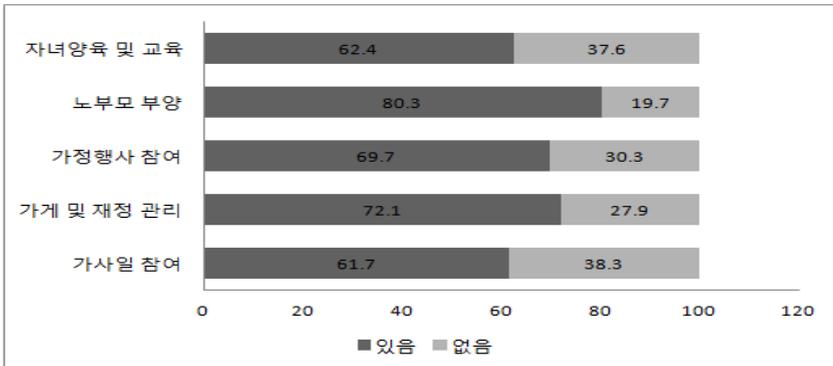
나. 일가족 양립 갈등수준 및 원인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①가사일 참여 ②노부모 부양 ③가정행사 참여 ④가계 및 재정 관리 ⑤가사일 참여 등 총 5개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은 전체 평균 69.3%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노부모 부양이 8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계 및 재정관리 72.1%, 가정행사 참여 69.7%, 자녀양육 및 교육 62.4%, 가사일 참여 6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2]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 경험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유배우자 676명 중 맞벌이 부부인 337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갈등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0). 맞벌이 가정 중 약 55%의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갈등 원인은 업무 과중함이 약 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및 가사

부담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으로 갈등을 체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원인은 남성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인데 비해 여성은 자녀 및 가사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유무별로는 유자녀가족의 가족갈등 발생이 높았고 그 원인 또한 자녀양육 부담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취학전 자녀의 유무별로도 유사하였다.

〈표 4-78〉 응답자의 특성별 일-가정 갈등 경험 및 갈등 원인

(단위: %, 명)

구분	갈등		갈등원인							기타	계(수)
	비율	(분석수)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노부모 부양	업무 과중함	남녀 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전체	54.8	(2,508)	19.7	13.9	26.8	3.8	29.2	3.1	3.5	100.0(2,508)	
성별											
남성	50.5	(1,692)	18.4	4.4	32.9	3.0	3.0	2.8	4.6	100.0(1,692)	
여성	63.7	(816)	21.8	29.5	16.8	5.3	5.3	3.5	2.0	100.0(816)	
자녀유무											
유자녀	60.1	(1,830)	24.6	15.0	26.8	3.2	26.5	1.2	3.0	100.0(1,830)	
무자녀	40.5	(678)	-	9.4	26.7	6.9	40.3	10.9	5.9	100.0(678)	
취학전 자녀유무											
유자녀	78.7	(249)	57.3	5.5	19.1	4.6	11.8	-	1.9	100.0(249)	
무자녀	75.6	(178)	33.7	21.4	18.5	0.5	0.5	0.4	4.1	100.0(178)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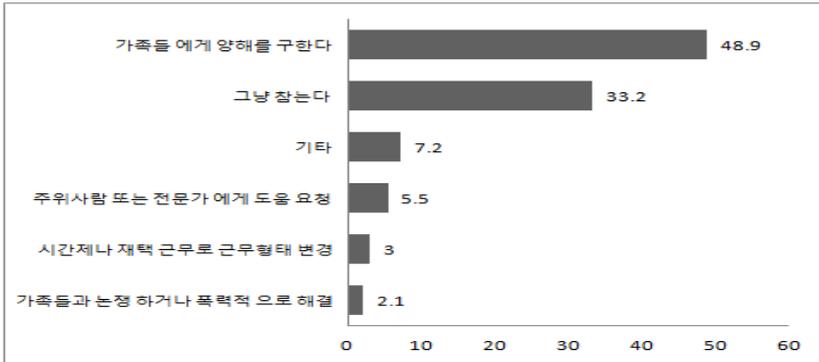
다. 일가족 양립 갈등의 대처방식

맞벌이부부가 일-가정 병행에서 오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48.9%) 또는 갈등을 그냥 참는 경우(33.2%)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5.5%) 시간제나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3.0%)도 있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하지만 가족들과 논쟁하거나 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도(2.1%) 나타났다.

[그림 4-53]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주: 분석대상자는 맞벌이 부부 337명 중 일가정 병행에서 오는 역할갈등을 경험한 235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제5절 가족갈등 유형별 대응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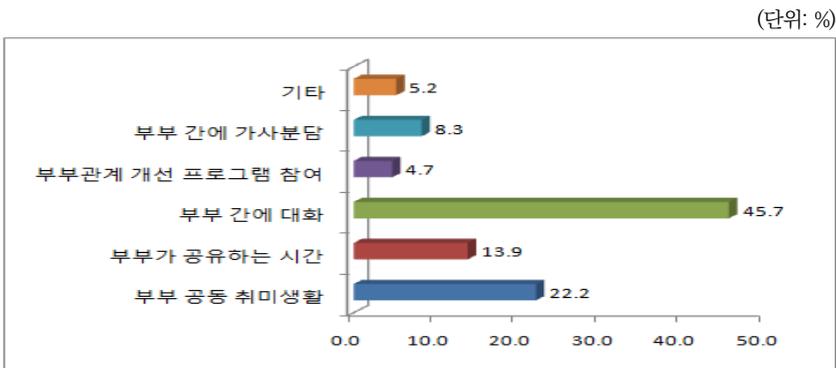
1. 부부갈등 대응 욕구

2014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0%이었고, 부부갈등 원인은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식, 배우자 생활방식,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도 부부 대부분이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의 경우 갈등으로 인해 소통단절부터 관계소원, 그리고 이혼을 고려한 별거 및 폭력 등 심각한 양상까지도 나타나서 이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로는 부부간에 대화가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22.2%,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13.9% 등이었으며, 이어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책욕구도 많았다.

[그림 4-54]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특성별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를 보면, 부부가구는 부부공동의 취미생활과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데 비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부부 간 가사분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리고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는 부부 간 대화와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가구형태별로 부부관계 개선 욕구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구의 경우 부부공동의 취미생활과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욕구가 높는데 비해 자녀가 있는 유자녀 가구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부부 간 가사분담 등의 응답이 많

았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부부간 대화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비해, 300만원대 소득층은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부부간 대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5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은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외에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가구소득별로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욕구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부관계 개선 욕구는 가구형태, 자녀유무 및 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79〉 가구특성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단위: %, 명)

구분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	부부 간에 대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부부 간에 가사분담	기타	계(수)	χ^2
전체	22.2	13.9	45.7	4.7	8.3	5.2	100.0(673)	
가구형태								
부부가구	26.2	10.7	45.8	6.5	6.0	4.8	100.0(168)	17.725
부부+미혼자녀 가구	21.3	15.3	45.7	3.7	9.5	4.4	100.0(431)	
3세대 가구	16.9	11.9	47.5	8.5	6.8	8.5	100.0(59)	
기타	22.2	16.7	38.9	-	5.6	16.7	100.0(18)	
자녀유무								
무자녀가구	25.3	11.0	46.2	6.0	6.0	5.5	100.0(182)	5.063
유자녀가구	21.0	15.0	45.6	4.2	9.1	5.1	100.0(49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	9.4	48.2	8.2	8.2	5.9	100.0(85)	23.733
300만원 미만	19.3	11.4	48.9	8.0	6.8	5.7	100.0(88)	
400만원 미만	20.4	14.8	50.7	4.2	5.6	4.2	100.0(142)	
500만원 미만	17.1	20.0	41.9	5.7	12.4	2.9	100.0(105)	
500만원 이상	27.4	13.0	41.8	2.4	8.7	6.7	100.0(208)	

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를 보면, 남성응답자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 전체보다 높았고, 여성은 부부 간 대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부부 간 가사분담 등 다양한 욕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부부 간 대화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비해 40대와 50대는 부부 간 가사분담이, 50대와 60대는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등으로 가족주기에 따라 욕구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별로는 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80〉 응답자의 특성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단위: %, 명)

구분	부부 공유의 취미생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	부부 간에 대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부부 간에 가사분담	기타	계(수)	χ^2
전체	22.2	13.9	45.7	4.7	8.3	5.2	100.0(676)	
응답자 성								
남성	22.2	15.9	45.2	4.2	6.6	6.0	100.0(334)	5.409
여성	22.2	12.0	46.2	5.3	9.9	4.4	100.0(342)	
응답자 연령								
19~39세	17.1	14.6	52.0	4.1	7.3	4.9	100.0(123)	19.822
40~49세	18.1	16.3	47.6	4.4	8.4	5.3	100.0(227)	
50~59세	29.0	14.0	38.3	5.1	9.8	3.7	100.0(214)	
60~69세	23.2	8.0	49.1	5.4	6.3	8.0	100.0(112)	
응답자 결혼기간								
10년 미만	19.0	16.0	50.0	5.0	8.0	2.0	100.0(100)	15.510
10~20년 미만	15.9	16.6	48.3	3.3	10.6	5.3	100.0(151)	
20~30년 미만	25.6	15.0	42.2	5.0	5.6	6.7	100.0(180)	
30년 이상	24.9	10.6	44.9	5.3	9.0	5.3	100.0(24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0	11.4	39.8	8.0	10.2	5.7	100.0(88)	11.852
고등학교	19.6	13.0	44.8	6.1	10.0	6.5	100.0(230)	
(전문) 대학 이상	23.2	15.1	47.8	3.1	6.7	4.2	100.0(358)	

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중 유배우상태인 676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은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참여와 부부 간 가사분담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전문)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부부 간 대화 등이 높았다. 이외에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는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에서 높아서 양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부부관계 개선욕구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및 결혼기간 등 부부주기별로도 다르게 나타나서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남녀 및 가족주기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부모-자녀 간 갈등 대응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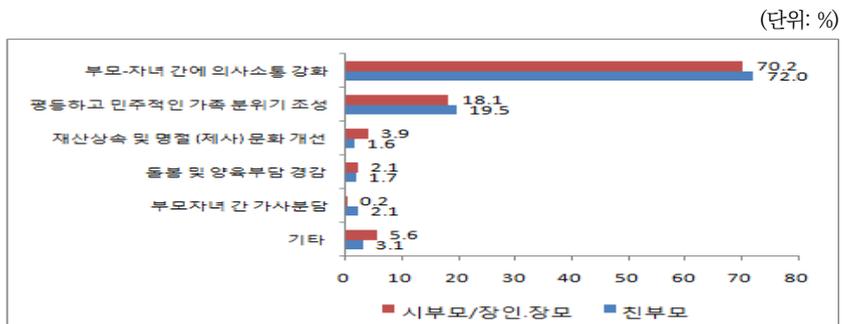
2014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관계갈등과 기능갈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자녀 연령 및 부양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부모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은 청소년기 자녀(45.4%)가 성인기 자녀(28.6%)보다 훨씬 심각하였고,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32.3%로 일반 성인자녀와의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친부모(23.4%)보다 시부모/장인·장모(28.2%)와의 갈등이 다소 높았다. 갈등원인 및 대처방식은 부모 및 자녀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원인은 주로 생활습관,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었고, 이외에 성인기 자녀는 성격 및 정서문제와 생활부담 등도 파악되었다. 다른 한편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원인은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많았고, 이외에 고부(장서)와는 명절 및 제사, 신체적 돌봄 등이 나타났다. 부모관점에서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자녀관점에서 대처방식은 부모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친부모와는 차분하게 대화하거나 격렬하게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고부(장서)와는 그냥 참는 경향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갈등수준은 자녀연령 및 부양관계에 따라, 갈등원인 및 대처방식은 부모와 자녀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고, 자녀관점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이들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친부모와의 갈등 대처방식으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와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 대처방식으로 그냥 참는(속으로 삭힌다) 방식을 선택한다는 응답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대화 단절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부모-자녀 간 가사분담이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친부모-자녀 사이가 시부모/장인·장모-자녀 사이 보다 높았고,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 문화 개선을 응답한 비율은 친부모 보다 시부모/장인·장모에서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5]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 결혼기간 및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1〉 응답자의 특성별 친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

(단위: %, 명)

구분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	재산상속 및 명절 (제사)문화 개선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	부모 자녀 간 가사분담	기타	계(수)	χ^2
전체	72.0	19.5	1.6	1.7	2.1	3.1	100.0(753)	
성별								
남성	71.7	19.7	1.3	1.8	2.1	3.4	100.0(381)	1.567
여성	72.3	19.4	1.9	1.6	2.2	2.7	100.0(372)	
연령								
19~39세	75.3	18.4	0.8	0.8	2.8	2.0	100.0(396)	28.569*
40~49세	71.1	17.9	2.5	2.0	1.5	5.0	100.0(201)	
50~59세	64.8	22.1	3.3	4.9	0.8	4.1	100.0(122)	
60~69세	64.7	32.4	-	-	2.9	-	100.0(34)	
결혼기간								
10년 미만	76.6	16.2	-	0.9	1.8	4.5	100.0(111)	16.156
10~20년 미만	70.3	18.1	3.9	1.3	1.9	4.5	100.0(155)	
20~30년 미만	71.3	19.6	1.4	2.8	-	4.9	100.0(143)	
30년 이상	65.2	22.8	2.2	4.3	3.3	2.2	100.0(92)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2.9	25.8	1.6	3.2	3.2	3.2	100.0(62)	20.594
300만원 미만	73.3	17.8	1.0	1.0	4.0	3.0	100.0(101)	
400만원 미만	81.5	12.3	0.7	1.4	1.4	2.7	100.0(146)	
500만원 미만	76.5	16.0	1.7	1.7	3.4	0.8	100.0(119)	
500만원 이상	67.2	23.4	2.6	1.3	1.7	3.8	100.0(2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전화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를 보면 19~39세 연령층은 친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 강화에 대한 욕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많았고, 40대와 50대 연령층은 미미한 비율이나 재산상속 및 명절 문화개선,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리고 50대와 60대 연령층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응답자의 연

령에 따른 친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원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육구로 이해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 결혼기간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 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2〉 응답자특성별 고부(장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육구

(단위: %, 명)

구분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 문화 개선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	부모 자녀 간 가사분담	기타	계(수)	χ^2
전체	70.2	18.1	3.9	2.1	0.2	5.6	100.0(486)	
응답자 성								
남성	70.9	18.3	1.6	0.8	-	8.4	100.0(251)	19.638**
여성	69.4	17.9	6.4	3.4	0.4	2.6	100.0(235)	
응답자 연령								
19-39세	75.5	16.4	2.5	1.3	-	4.4	100.0(159)	23.708
40-49세	69.8	17.3	2.8	3.9	0.6	5.6	100.0(179)	
50-59세	60.9	20.9	8.7	0.9	-	8.7	100.0(115)	
60-69세	78.8	21.2	-	-	-	-	100.0(33)	
응답자 결혼기간								
10년 미만	77.4	13.9	2.6	2.6	-	3.5	100.0(115)	12.911
10-20년 미만	70.3	20.0	3.2	1.3	-	5.2	100.0(155)	
20-30년 미만	63.8	18.1	5.8	2.9	0.7	8.7	100.0(138)	
30년 이상	70.5	20.5	3.8	1.3	-	3.8	100.0(7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4	18.5	-	-	-	11.1	100.0(27)	18.590
300만원 미만	66.7	23.8	3.2	-	-	6.3	100.0(63)	
400만원 미만	77.6	12.1	2.8	3.7	-	3.7	100.0(107)	
500만원 미만	69.5	19.5	3.7	1.2	1.2	4.9	100.0(82)	
500만원 이상	66.3	20.1	5.9	2.4	-	5.3	100.0(16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7	19.4	3.2	-	-	9.7	100.0(31)	5.403
고등학교	69.2	18.9	4.1	1.2	0.6	5.9	100.0(169)	
(전문) 대학 이상	71.0	17.5	3.8	2.8	-	4.9	100.0(286)	

주: 성인기 자녀 분석대상수는 746명이며, 성인기자녀의 결혼상태와 첫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성인기 자녀가 있는 308명, 둘째자녀와의 동거여부는 245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본 연구를 위한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 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응답자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은 데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 갈등원인과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미미한 비율이나 40대와 50대 연령층과 여성응답자의 경우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가족의 소통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문화정착과 돌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제6절 시사점

최근 가족가치관의 약화, 급속한 가족변화로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 공백 등 가족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단절 등으로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부모 부양과 상속문제 등으로 형제자매 간, 고부와 장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가정 양립, 성인자녀의 만혼화에 따른 부모의존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추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하였다. 갈등유형별로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이 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갈등과 부부갈등이 각각 1/5의 분포를 보였으며,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과 일가족 갈등은 10% 미만으로

적어서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비교적 높았다. 대처방식은 대다수의 응답자의 경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와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많아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가정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가족 간에 소통단절부터의 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서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관계 갈등은 부부갈등, 가족 내 세대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을 포함한다. 먼저 부부갈등을 보면 최근 1년 간 부부가 갈등을 경험한 갈등은 32.0%로 기혼 응답자의 1/3이 부부갈등을 경험하였고, 갈등원인은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식, 배우자 생활방식, 부모 및 형제자매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대다수의 부부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부부가 은퇴한 경우 응답자의 1/4은 갈등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경제문제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부부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약 70%이었고, 이외에도 부부갈등으로 폭력과 이혼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부갈등은 부부 간 의사소통 부족과 양성불평등적 관계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 및 자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퇴 후에 경제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강화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께 은퇴 후 노부부의 일자리 마련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 내 세대갈등은 자녀관 및 양육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자녀관은 기존 자녀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부부와 부모중심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범위는 자녀의 혼인과 취업 시기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자녀연령 및 부양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부모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은 청소년기 자녀(45.4%)가 성인기 자녀(28.6%)보다 훨씬 심각하였고,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32.3%로 일반 성인자녀와의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와의 갈등원인은 주로 생활습관,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었고, 이외에 성인기 자녀는 성격 및 정서문제와 생활부담 등도 파악되었다.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형제자매 갈등은 친형제 및 동서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형제자매 간 관계를 보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경우는 친형제자매가 많은 데 비해,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상의하는 경우는 동서 간에는 많았다. 실제로 부모님 부양 및 경제적 도움은 양쪽 모두 1/5~2/5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1년간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비율은 19.8%, 동서 간은 29.5%로 동서 간 갈등이 친형제자매 보다 9.7%p 높았다. 갈등원인은 친형제자매는 성격 및 사고방식이 많은데 비해, 동서 간은 경제 및 부양 때문이 약 3배 높았다. 대처방식은 양쪽 모두 그냥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외에 동서 간은 의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가족기능갈등은 부모와 성인자녀 간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족갈등 등을 포함한다. 먼저 부모와 성인자녀 간 갈등과 관련하여 노부모 부양관은 과거 장남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

부모 스스로 해결도 높아서 자녀의존에서 상당히 탈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발적인 부양의식보다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의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생활비 부담도 부양관을 반영하여 친부모 및 고부(장서) 모두 노인 스스로 해결 또는 자녀의 지원이 거의 98%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부모(4.2점)가 시부모/장인장모(3.8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고부(장서)보다 긍정적이었다.

최근 1년간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친부모(23.4%)보다 고부 또는 장서(28.2%)와의 갈등이 다소 높았고, 그 원인은 양쪽 모두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많았으며, 이외에 고부(장서)와는 명절 및 제사, 신체적 돌봄 등이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친부모와는 차분하게 대화하거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지르는 경향이 높는데 비해, 고부(장서)와는 그냥 참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양상은 자녀연령, 부모관계 및 부양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갈등해소는 이들 요인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난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강화 및 일자리 접근성 제고와 함께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손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 상의 만족도는 조부모(3.3점)가 부모(3.5~3.6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조부모의 특성상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돌봄 시간의 여유나 손자녀의 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 및 교육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은 높으나, 부모에 비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치며,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손자녀 돌봄의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0).

가족 내 상속갈등과 관련하여 상속 및 제사관을 보면, 가장 적절한 유산상속 방식으로 모든 자녀에게 비슷한 상속이 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 생존한 배우자 순으로 많은데 비해, 모든 아들 및 장남,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양관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사풍속은 여건이 허락되는 자녀 또는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42.2%) 의견이 장남과 아들에 대한 제사의무 기대보다(33.1%) 많았다.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6.9%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자의 약 80%는 특정자녀에게 상속이 많이 되거나 자녀 간 상속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1/3은 가족 간에 폭력발생부터 법적소송,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재산상속과 제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가족 갈등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은 평균 69.3%로 나타났다 그중 노부모 부양, 가계 및 재정관리, 가정행사 참여,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일 참여 등의 갈등은 62~80%로 높았다. 갈등원인은 업무 과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및 가사부담 순으로 높았으며, 대처방식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갈등정도는 높으나 맞벌이 부부의 2/5는 가사 및 양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갈등에 대응하는 욕구를 보면, 먼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부

간 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등이었으며, 이어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책욕구도 많았다. 그리고 이는 가구형태, 자녀유무 및 소득, 성 및 부부주기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일부 중장년층과 여성응답자의 경우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가족의 소통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제5장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제1절 가족갈등 관련 정책분석 들

제2절 가족갈등 관련 국내 법 및 정책의 현황

제3절 국외의 가족갈등 관련 정책

제4절 국내외 정책의 시사점



5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

제1절 가족갈등 관련 정책분석 틀

1. 전반적 논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근대사회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히 증폭되었고,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과거에 가족이 경험했던 갈등은 한편으로는 주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부에서 부부 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주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되는 가족갈등은 주로 부부 간이나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족정책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그리고 재혼가족 등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가족유형에 대해 수용적으로 접근하고, 가족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내부적 기능과 구성원 간의 관계적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가족정책은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지지하며, 영유아기의 자녀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Esping-Andersen, 2002).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분야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족정책의 분야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가족정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경향으로 구분이 된다. 우선 정책영역 또는 프로그램들의 구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캐머맨과 칸(Kammerman and Kahn, 2003: 6-7)은 가족정책이 포괄해야 할 분야로 부양능력이 결핍된 아동이나 기타 가족구성원을 위한 현금급여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세제적 혜택, 돌봄서비스에 대한 육구가 있는 맞벌이 부모의 직업과 가족생활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와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휴가와 휴직제도들, 미취학아동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들과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나이어(Neyer, 2003) 또한 서유럽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과 여성취업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가족정책을 출산의 제고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일하는 어머니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성보호프로그램, 맞벌이부모가 직접 자녀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가와 휴직, 보육시설을 통한 전문적 아동 돌봄 서비스, 공적인 소득이전정책으로서의 아동을 위한 급여로 분류하였다(이진숙, 2006).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분야를 세부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영역중심으로만 구분한 연구자들 중에서 고티에(Gauthier, 2002)는 가족을 위한 정책의 핵심적 영역을 가족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제도와 세제적 혜택을 포함하는 현금급여영역과 맞벌이부모의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 및 시설 돌봄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베르트람 등(Bertram, Roesler and Ehlert, 2005) 역시 가족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범주적 분류와 도구적 분류에 대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가족정책을 현금급여 정책(Geldpolitik), 시간정책(Zeitpolitik)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 정책

(Infrastrukturpolitik)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이러한 세 가지 정책영역의 정책적 혼합물(Policy-mix)이라고 주장하였다(이진숙, 2006).

이상과 같이 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야나 영역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가족의 기능적 지원의 측면에 관심을 두고 정책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갈등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가족의 기능적 문제나 갈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가능한 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고티에와 베르트람 등의 정책분류방식에 동의하고, 정책분야를 상기한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사실 위의 분류방식을 따를 경우에 현금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념이 사회수당 중심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별로 제도의 유무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국가 간 정책의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갈등관련 정책의 영역을 현금급여정책 외에도 각종 세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경제적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이 외에 시간적 지원영역, 서비스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포괄하는 서비스 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분야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가족관련 정책 영역

가. 경제적 지원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정책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

내의 갈등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 현금급여와 세제혜택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금급여는 한편으로 수급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수급자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들 간에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소비자주권을 보장하는 데에 유리하고,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적 서비스 공급자들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현금급여가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를 장려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는 궁극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정부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문제의 해결을 시장이나 가족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일수록 현금 급여제도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금 급여는 비공식적인 서비스 공급주체가 수행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파생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의 특성과는 상반되게 급여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의 질 관리도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송근원·김태성, 1995: 374-378; 권순만·박건희, 2006: 27-30; 석재은, 2006b; 이진숙, 2006; 남찬섭·유태균, 2007: 223; Orloff, 1993; Sainsbury, 1994; Neyer, 2003; Ungerson, 2004; Bertram, Roesler and Ehlert, 2005).

현금 급여는 주로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현금 급여는 아동보육 또는 출산에 대해서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동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전달과정의 연계성이 약해지게 되어 최종수혜자인 아동에 대한 혜택이 줄

어드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이진숙, 2006; Gustafsson and Stafford, 1992). 그리고 브루이프와 동료들(Brouillette, Felteau and Lefebvre, 1993), 워커(Walker, 1995) 그리고 고티에와 헛치어스(Gauthier and Hatzius, 1997)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는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미미함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빌랜저 등(Belanger et al., 1998)은 현금수당들이 출산에 전혀 영향력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액스(Acs, 1996)는 미국의 공공부조로써 대표적 경제적 지원책인 AFDC급여가 개인의 출산결정에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치노와 어미쉬(Cigno and Ermisch, 1989)는 현금급여의 효과는 그 급여의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급여가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면 출산에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하이야트와 밀느(Hyatt and Milne, 1991)는 모성보호를 위한 현금급여가 출산에 약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고, 부모를 위한 현금급여와 아동수당이 출산에 약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금급여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자녀양육과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노인장기요양영역이 있다(이진숙, 2006; 이진숙·신지연·윤나리, 2010). 장기요양제도 내에서의 현금급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선우덕과 석재은(2001: 36-37)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형태에 대한 정책적 선호는 가족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국가는 급여형태를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역할을 사회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급여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일수록 가족의 노인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써 가족

에게 돌봄 서비스를 대체해주기 위한 급여보다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현금보조금 또는 조세크레딧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용의 사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해 보면 결국 현금급여나 조세혜택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은 가족에게 돌봄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주기 보다는 가족이 돌봄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는 속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이진숙, 2008).

나. 시간적 지원

가족정책에서 휴가나 휴직을 통해 실현되는 시간적 지원조치들은 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자녀 및 노인 또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 가족간호휴가 등 각종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와 휴직제도들이 이러한 조치에 속하게 된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적 정책은 취업한 가족구성원들이 노동시장 내의 체류시간을 줄임으로써, 아동이나 노부모를 위한 돌봄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의 해소는 물론이고, 부모자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육구를 고려하는 노동시장 연동적 제도로는 출산 또는 양육과 관련된 휴가와 휴직제도, 즉 모성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부성휴가 포함)이 핵심적인 제도로서 언급될 수 있다.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휴가와 휴직제도는 한편으로는 취업부모의 복지급여 패키지

중 하나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 이 제도들은 주로 취업모의 취업유지와 자녀를 위한 직접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가족관련 휴가와 휴직 제도들은 가족 돌봄의 책임이 있는 부모의 취업경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휴가나 휴직기간 동안에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가별로 휴가나 휴직의 조건이나 보장기간 그리고 휴가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상이한 편차를 보인다(이진숙, 2006). 이 밖에 양육지원을 위한 시간적 지원조치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족 내 노인에 대한 돌봄이나 환자의 돌봄에 대한 시간적 지원은 제도화된 정도가 미흡하다.

다. 서비스 지원

가족이 기능이나 관계적 측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인프라는 가족의 기능과 관계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전달체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부부갈등의 해소나 부모자녀 간의 관계문제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전문적 서비스인력을 통한 다양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부부 상담이나 가족상담 등의 상담제공 서비스 그리고 보육지원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각종 대인서비스들을 포괄한다. 가족의 기능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서 보다는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미시적 차원의 대인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서구의 경우에는 노인의 돌봄과 사회서비스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부분 사회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이 노인의 돌봄을 위한 일차적 책임의 주체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 중 공공보육서비스는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선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은 정책의 목적이 영유아아동이 있는 부모의 직장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3~6세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부모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서비스적 성격(김수정, 2004: 222; Kamerman, 2001: 3~6)이 강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시설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진숙, 2006). 그러므로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로 시간적 조치들을 이용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3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돌봄으로 인한 갈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2절 가족갈등 관련 국내 법 및 정책의 현황

1. 가족갈등 관련 국내 법

가족의 갈등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들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법률에서부터 법을 통해 가족의 갈등 해소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암시적인 법률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범위가 부부와 부모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갈등으로 한정됨을 고려하여 가족을 법의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상기한 가족 내의 갈등들을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 관련된 명시적인 법으로서는 가족에 대해 하나의 전체적 단위로 접근하여 부부와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일-가정양립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법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법, 주로 부모자녀 간의 갈등 및 자녀의 양육과 교육기능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 내의 갈등이 표면화된 현상으로서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내의 갈등에 대해서는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외한 상기의 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건강가정기본법

한국 사회는 1980년대부터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심화, 부부간 갈등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가족해체현상, 여성의

역할 변화 및 결혼관과 자녀관의 서구적 변화로 인한 돌봄의 공백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문제들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법은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총론,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부칙 등의 5개장과 3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자녀돌봄을 비롯한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의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건강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건강가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은 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육지원, 하나의 전체적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가족의 부양기능 지원,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건강가정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사업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불식하여 부부 간 또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평등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관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며, 아울러 부부 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여 이혼을 감소시키고, 이혼가정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아젠다화하고,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제점들도 내재되어 있는데,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법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 자체가 정책의 집행에 대한 구속력을 부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법은 구체적이고 통합적 가족지원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기능상이나 관계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 가족들까지도 가족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양육기의 가정에 대한 아동 돌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을 강화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리적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과 그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법적 테두리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행기구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센터와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들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센터는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전달체계 등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적 내용들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현대 사회에서 직업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과 가족생활 간의 양립은 노동시장이 이중적으로 분절되어 있고,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역할분담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므로 취업한 어머니들은 역할스트레스에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고용상의 남녀차별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도 점진적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맞벌이부부가 가족 돌봄과 취업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과 일·가정 양립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취업한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좀 더 강화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0일에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OECD국가의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맞벌이부부의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가사노동 및 돌봄의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자녀의 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이 돌봄 역할의 수행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다.

취업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영향변수는 한편으로는 부부 간에 발생 가능한 역할갈등요인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내의 근로조건과 조직문화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적 지원과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실행의 강제성과 구속력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점은 이 법이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법

정부는 2007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위한 제도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flexible working arrangement),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등), 부양가족지원제도(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맞벌이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갈등을 경감시키고 자녀돌봄과 직업의 유지라는 이중적 역할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일·가족 양립을 위한 중요한 책임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의 책임분담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이 미흡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법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적 지원내용들을 법에 담고는 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한 강제이행규정은 매우 미비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제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특히 직장 내 근무의 탄력적 운영이나 육아휴직의 활성화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의 실행조치들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향후에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업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재설계가 필요하고, 법적 내용들 중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기업의 실행노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향후의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의 자녀양육과 돌봄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책임주체의 범위를 기업부문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데에서 시작된다. 이 법은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고, 2007년 10월 17일에 다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를 확대하면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도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고 있는 자녀의 돌봄이나 한부모의 역할과 중문제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적 갈등을 비롯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공적부조 측면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등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총 150만 가구(현재 추정치)의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1/3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지원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부모나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통념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쉬우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위축감에 시달리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에 직면하거나 양육을 비롯한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내용 중 가족기능의 강화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에서 가족 내의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면화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폭력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두 법은 1997년 12월31일에 제정되어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기관들이 가정폭력과 가족갈등 관련 상담 및 교육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5-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가정폭력	26	11	4	8	10	5	4	35	10	7	13	13	11	21	14	3	196
통합	1	1	2	1	-	-	-	1	2	1	-	-	-	1	-	-	10

주: 통합상담소(성폭+가폭)는 가정폭력상담소 숫자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2c.jsp

가정폭력과 관련된 위의 법들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폭력의 실제적인 감소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양법에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내재되어 있다. 우선, 가정폭력방지법은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보호 이데올로기는 피해자의 가정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부부 간 또는 가족 내에 발생하는 갈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 법은 가족의 유지라는 대전제에서 출발되는 법의 지향점을 수정하고,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지속성과 확산성이라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수준이 대체로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향후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조치들을 좀 더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족갈등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부부갈등 관련정책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지원정책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인구학적 동기에서 출발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하며, 이마저도 경제적 지원이나 시간적 지원보다는 주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부부를 사후적으로 돕기 위한 단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다.

부부간 갈등의 실태를 보면 최근에는 신혼기에 있는 부부보다 빈둥지 시기에 있는 황혼부부들이 경험하는 갈등들이 집중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아직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본 절에서는 부부의 갈등과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

부부가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들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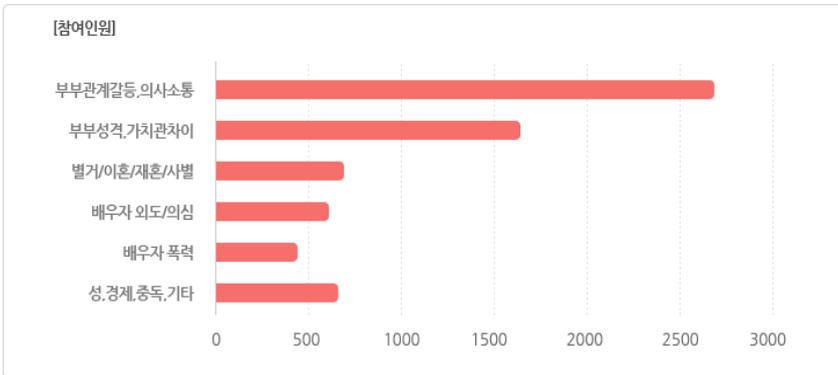
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런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관련 교양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결혼준비 프로그램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단계별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부부갈등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진행한다.

2013년 상반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부부갈등관련 상담현황을 보면 부부들은 상담유형 중 아래와 같이 부부관계로 인한 갈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부부문제상담 주요 내용(2013 상반기 상담 분석)

(단위: 명)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amily_consulting_way_tel.do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부부상담은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다. 부부상담의 경우에 서비스이용자들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부부 간에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갈등이나 가치관관련 또는 성격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로, 이는 대체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열악한 인력구조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설령 내담자인 부부가 지속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더라도 이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받기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된 위기부부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민간 가정폭력상담소들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교정과 치료프로그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표준 운영모델

구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고
상담장소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전문강사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4인 이상 확보 -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확보 집단상담의 주진행자 2인은 가급적 남녀 각 1인으로 구성	남여진행자간 균등한 권한행사 자세
운영빈도	주 1회, 20회기 기준 개별상담(부부상담) 1회 1시간 내외 : 40분 이상 집단상담(부부집단상담) 1회 2~4시간 : 90분 이상	신뢰감과 응집력 구축에 영향
집단구성의 원칙	행위자의 성별, 연령, 지적능력, 가정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가시고슴도치의 원칙, 노아 방주의 원칙
집단의 크기	8~10인 원칙 - 상담소별로 전체 수요에 맞게 하되, 구성원들의 결석, 중도탈락을 고려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과 만족도에 영향
집단의 개방과 폐쇄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구분 - 폐쇄형 집단 원칙 -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수요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참여와 친밀성, 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구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고
수혜자 중심의 운영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 휴일 상담 권장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에서 상담대상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상담도우미 1인이 baby sitter 기능수행	휴일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및 기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야간 상담은 18:00 이후 상담을 시작한 경우
위기대처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등 - 사전 계약 시 비폭력 명시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담 중단 후 의뢰한 법원·검찰로 통보	
프로그램 운영 전 계약	행위자와 사전계약을 통해 상호간 기대, 의무, 책임 등 명시 - 가정폭력 근절, 부부간 화합 등	상담소·전문강사의 역할과 책임, 행위자의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
개입이론모델	여성주의와 인지행동모델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함.	
상담기록관리	상담대상자(행위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사후평가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amily_consulting_way_tel.do

〈표 5-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단계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아동대상프로그램
1	개별상담	놀이치료
2	집단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3	심리극	미술치료
4	여성간 의식강화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5	음악치료	가족미술치료
6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심신 회복 캠프
7	미술치료	
8	종이접기	
9	명상 수련	
10	수공예	
11	가족미술치료	
12	심신회복캠프	
13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amily_consulting_way_tel.do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는 2006년에는 105개소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20개소로 확대되었다. 이상담소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전문가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와 교통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family_consulting_way_tel.do).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이미 발생된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은폐성의 위험이 큰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아웃리치서비스(out-reach service)를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확보해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발굴이 가능해 지는데, 이러한 상담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담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내담자들의 비용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2) 이혼위기에 직면한 부부를 위한 심리적 지원서비스

이혼을 고려하는 갈등과정에 있는 부부나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은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서비스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민간 서비스기관에서 부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로는 이혼전후상담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

램은 이혼전 상담, 이혼보류단계의 가족상담, 이혼결정단계의 가족상담, 이혼후 가족상담 등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부부대상의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과 자녀대상의 심리검사, 자녀집단상담, 부모자녀대상의 가족캠프 및 비양육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상담에 참여를 한 인원의 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16,688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7,300명으로 증가하였다(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family_consulting_way_tel.do).

부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이혼 전의 부부교육이나 부부상담 그리고 법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23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적용되고 있다(임병인, 2013). 이 제도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좀 더 이혼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유예조치로써,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혼숙려법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는 이혼여부를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혼숙려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혼숙려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2006년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한 2010년 사이에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비율을 보면, 그 기간 사이에 이혼취하율은 11.9%에서 33%로 상향되었다. 이를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이혼숙려기간 자체가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박복순, 2012: 5). 그런데 부부의 갈등은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부부 간에 장기적

으로 누적되어 온 갈등이 표출되는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혼관련 상담은 좀 더 심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숙려제도는 제도가 지닌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 이혼의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에만 개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의 경우, 부부가 본격적으로 이혼과정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이혼의 감소는 물론이고, 부부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줄 수 있는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가족 내 세대갈등 관련정책

가족 내의 세대갈등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주를 이루는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갈등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세대 간의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갈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유형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특히 이러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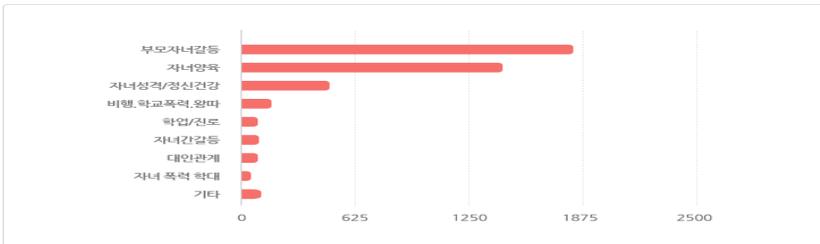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해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조치들은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과 교육서비스가 해당된다.

1)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및 가족상담기관들에서 수행되는 부모자녀상담은 주로 성장기 자녀의 비행행동, 정서적·심리적 장애, 학업 성적 등에 대한 것으로, 부모-자녀간 관계 단절, 자녀의 부모거부, 자녀의 성격/가치관문제, 가출, 진로/취업문제, 비행문제, 자살문제, 자녀 친구 관계 및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 부모-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부모자녀상담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 대한 상담과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었다.

[그림 5-2] 부모-자녀상담 주요 내용(2013년 상반기 상담 분석)

(단위: 명)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consult/family_consulting_way_law.do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상담은 사춘기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 매우 수요가 많은데, 실제로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해 상담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주로 저소득가정의 문제아동에 대한 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일반가정의 부모자녀상담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자를 찾아가는 out reach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부·전국 다문화가족지원복지사업단의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부모에게 약이 되는 대화기법’,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자녀의 힘을 복돋우는 부모교육(Empowering Parent Training: EPT)’과 ‘저소득 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와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2014).

이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여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부각되고 있는 자녀코칭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부모의 코칭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표 5-4〉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회기	프로그램 제목	주제
1회기	몸매 가꾸듯, 가정도 가꾸어요	건강가정과 가족구성원 공통의 사명.
2회기	부부행복지수 높이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특성 이해 부부갈등에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해결 방안
3회기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자녀의 발달 과정의 이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눈높이교육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의 차이 이해
4회기	부모코치 되기!	부모코칭의 개념의 이해
5회기	부모코칭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코칭의 핵심기술(경청, 질문, 인정·칭찬하기)의 학습 코칭기술의 실습, 부모코칭 능력 향상
6회기	우리 가족문화, 현명한 의식주	가족생활주기별 의식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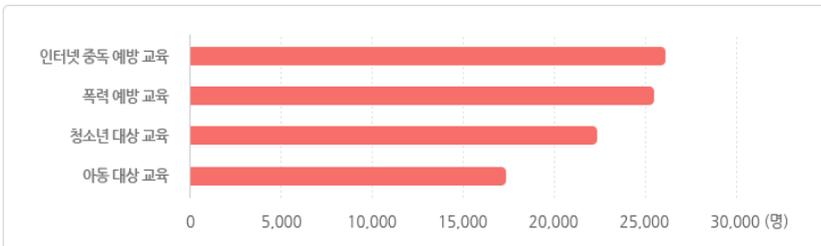
회기	프로그램 제목	주제
	소비생활	의식주활동을 통해 가족문화 만들기
7회기	나는 내 생활의 CEO, 시간, 여가자원관리	가족단위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관리 방법 나와 가족의 재무와 소비관리
8회기	다양한 가족, 당당한 삶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편견의 해소 편견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9회기	일과 가정, 둘 다 소중해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생활 특성의 이해 일·가정 불균형의 원인과 증상의 탐색 일·가정 균형 잡기 전략과 실천
10회기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가족자원봉사	가족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이론 가족자원봉사 효과 및 과정의 이해와 구체화
11회기	우리가정, 건강한가? 컨설팅해봐요.	우리 가정의 건강성 진단, 가정운영상의 강점과 약점 인식 가정의 역량강화 방안 컨설팅 가정경영자의 역할 이해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growth.do

이 프로그램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교육에는 2013년 기준으로 885회 동안 40,175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들이 교육을 받은 세부 프로그램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그림 5-3] 자녀 대상 교육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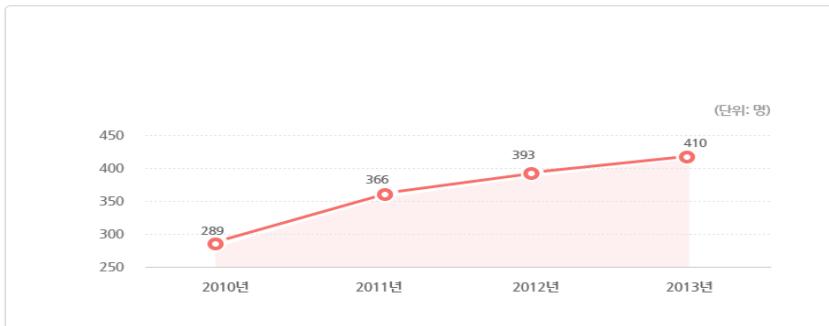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growth.do

가족성장아카데미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남성들이 아버지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놀이방법을 비롯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양육방법과 아버지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새롭게 아버지의 역할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다.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시행초기에 비하면 많이 늘었으나 2013년 기준으로 410명에 불과하여 향후 대상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5-4] 남성대상교육 연간 평균 참여인원 현황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ther_edu.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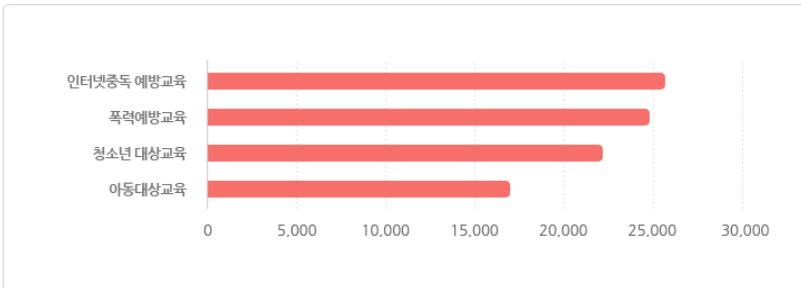
3) 일탈청소년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가출 청소년 문제, 왕따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하고,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일선 서비스기관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일탈청소년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청소년 자녀의 이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등의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학대적

인 양육예방, 관계회복 및 신뢰감 구축 지원, 자녀심리 이해와 관련된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가족관계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과 폭력예방 등의 교육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그림 5-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적 (2012)

(단위: 명)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growth.do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탈청소년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집단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가족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의 교육들만이 활발하게 운영될 뿐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과 이로 인한 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 부모-성인자녀 갈등 관련정책

일반적으로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은 주로 부모의 부양과 관련된 이슈로 가시화된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면 성인자녀들은 돌봄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핵가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을 담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고, 이는 부모와 자녀 간 또는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회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관련 정책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에서부터 장기요양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지원

가) 노인부양과 노후생계에 대한 지원

현재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150만원 기본공제)혜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매우 미미하여 그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족 정책적 차원은 아니나 노인 스스로가 노후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저소득인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2014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경)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률은 2012년 현재 65.8%로, 이 제도는 대상자의 폭은 넓으나 급여수준이 실제 생계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서 효과적인 생계지원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5-5〉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노인 수	수급자 수					수급률
		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계	1인 수급	2인 수급	
2008년 (비율)	5,069,273	2,897,649 (100)	1,691,360 (58.4)	1,206,289 (42.6)	200,779 (6.9)	1,005,510 (34.7)	57.2
2009년 (비율)	5,267,708	3,630,147 (100)	1,936,972 (53.4)	1,693,175 (46.6)	303,464 (8.4)	1,389,711 (38.3)	68.9
2010년 (비율)	5,506,352	3,727,940 (100)	1,960,852 (52.6)	1,767,088 (47.4)	345,225 (9.3)	1,421,863 (38.1)	67.7
2011년 (비율)	5,700,972	3,818,196 (100)	1,985,645 (52.0)	1,832,541 (48.0)	361,956 (9.5)	1,470,576 (38.5)	67.0
2012년 (비율)	5,980,060	3,933,095 (100)	2,067,626 (52.6)	1,765,469 (47.4)	338,926 (8.6)	1,526,543 (38.8)	65.8

자료: 보건복지부, 2012a. 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나) 노부모 부양 주택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시에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주택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1회로 제한되고 있다. 주택특별공급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도의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직접 부양하고자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문제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표 5-6〉 주택특별공급 세부내용

구분	내용
공급물량	미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청약통장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2) 서비스 지원

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노인에 대한 신체적 돌봄은 성인자녀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부모

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갈등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조건이 된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에게 가족의 돌봄을 대리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내용은 주로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비롯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단기가사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준 상으로는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상으로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노인가족은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을 직접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취업을 유지하는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과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리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에 대해 독거노인과 그 가족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1주일에 하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가족들이 필

요로 하는 실제적인 서비스의 수요에 비하면 수급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독거노인의 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대폭 늘리고, 이용자격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간병수발서비스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와병노인을 가족이 수발한다는 것은 심리적 측면에서나 신체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신체수발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노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어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 가사·활동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또는 주간보호서비스(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서비스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제공한다.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아

야 하는데, 등급판정기준이 주로 신체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매우 엄격하여 등급판정의 신청자가 와상상태가 아니면 거의 등급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와상정도의 중증질환에 시달리지 않거나, 돌봄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신체활동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등급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의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 형제자매 갈등 관련정책

우리나라에서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원조치는 전무하다. 다만, 형제자매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나 명절을 통해 가시화되는 전통유지와 관련된 갈등 그리고 성역할로 인한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명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뿐이다.

가족 내 성인자녀들 간의 갈등은 오히려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기회가 되는 명절에 주로 발생되므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에서는 양성평등한 명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회성의 캠페인과 갈등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명절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부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왜곡된 명절문화로 인해 명절을 전후로 하여 부부간 그리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갈등은 명절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모부양이나 재산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일반적이므로, 현행처럼 캠페인이나 상담차원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가족 내의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평등적이고 애정중심적인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 일-가족양립 갈등 관련정책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취업모들은 직장과 자녀돌봄의 부담으로 고통 받게 되고, 이러한 이중부담은 부부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의 돌봄의 공백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질 경우에 어머니들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대리할 서비스를 찾게 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 및 보육비용의 부담은 취업한 부모들이 욕구에 합당한 보육서비스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갈등은 양육기의 취업부모들에게 가장 큰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갈등에 대한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중 하나로 부상되어 있다.

1) 경제적 지원

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취업 중인 부모가 영유아기의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직장생활도 지속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질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부모가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나 휴직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벌이부부에게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한 몰입을 가능케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경감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육아휴직이란 취업 중인 부모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되고(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정률제로 시행하는 것이 임금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별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은 아직 종전 임금의 40%에 불과하여 휴직부모가 휴직을 하게 되면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상황이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가 1년을 모두 휴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급여수준이 종전 임금수준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문제는 아버지들의 이용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어서, 양육이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해 돌봄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우선 급여의 수준은 선진국처럼 상향 제한제를 폐기하고 정률제로만 시행하되, 정률수준을 현재의 40%에서 종전소득수준의 대체가 일정 정도 가능한 70~80% 선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육아휴직 내에 아버지의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육료 지원 사업

취업중인 부모들이 한편으로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병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시간 동안에 자녀의 돌봄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전문보육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설보육정책은 본래 저소득 요보호가정의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고, 그로 인해 보육정책의 방향은 취업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최근 들어 무상보육이슈가 사회적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비단 맞벌이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아동에게 시설보육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혜택이 보편주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서비스는 취업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경감하는 데에 가장 핵심

적인 도구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시설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와 만 3~5세 보육료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우선 만 0~2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이 지원된다. 만 3~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동일하게 220천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보육료의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안정적인 보육료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5-7〉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1,474,645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3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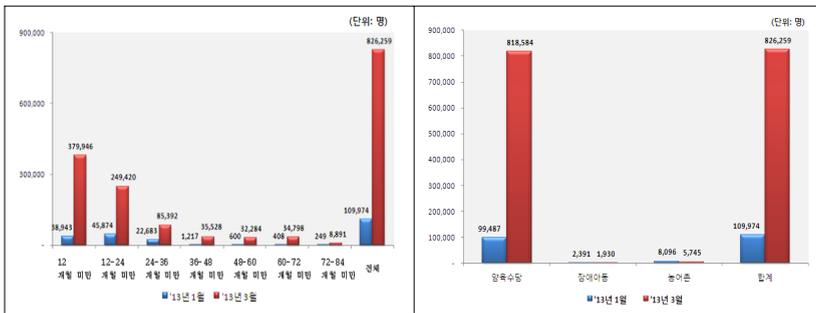
시설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은 무상보육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면서 단 시간 내에 급성장하게 된 대표적 정책 사업이다. 이는 제도의 이면에 놓여있는 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정부가 보편주의적 복지의 실현에 대한 관심과 미래세대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료가 투입되는 시설을 보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설은 민간주체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의 보육시설은 약 5%에 불과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료의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의 공공화를 전제로 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가정 양육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에는 일반 아동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라 농어촌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될 경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제출) 농어촌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그림 5-6] 양육수당 지원아동 수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영유아보육 양육 지원현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양육수당은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제도가 맞벌이부부의 양육 욕구 및 젠더적 평등효과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설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부담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사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

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약 50%에 불과하며, 시설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와 영유아보육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양육수당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제도의 문제는 급여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수준은 영유아의 경우에 양육수당의 약 두 배 정도 높는데, 시설보육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수준과 격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수당 수준으로는 양육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표방하는 무상보육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의 수준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2) 시간적 지원

가) 출산전후휴가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을 일과 양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통적 사고에 따라 핵가족을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게 자녀의 돌봄을 위한 책임을 기대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기대로 인한 압박을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기간에 대한 시간적 지원은 부부가 함께 일-가정 양립문제를 해결하고,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임신 중인 취업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의 기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인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여성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에게는 2012년 8월 2일부터 유급으로 3일 동안(필요시 5일까지 사용 연장 가능하나, 추가기간 동안은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표 5-8〉 출산전후 휴가자 수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산전후 휴가자 수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출산전후 휴가 지원 금액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자료: e-나라지표.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에 비하면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임신 자체가 암묵적인 퇴사로 강요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여성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배우자의 출산 시에 휴가를 유급으로 3일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직접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들의 출산장려와 출산으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간호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육아휴직

상기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육아휴직이란 취업한 부모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휴직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취업부모가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맞벌이부부 중 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부양은 남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부양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그로 인해 이 제도가 부부 간에 나타나는 양육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여성휴직자의 수에 비해 남성휴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처럼 남성의 육아휴직이 저조한 것은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지나치게 커지는 기회비용의 부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맞벌이부부의 기회비용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남성을 위한 육아휴직의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5-9〉 육아휴직자 수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육아 휴직자수	계	29,145	35,400	41,733	57,137	64,069	69,616
	여성근로자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남성근로자	355	502	819	1,402	1,790	2,233
육아휴직 지원 금액	계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797	420,248
	여성근로자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844	408,557
	남성근로자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자료: e-나라지표.

다) 육아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단축관련 프로그램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취업부모는 자녀와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가정 양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 돌봄과 직장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여성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맞벌이부부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할 때, 직장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단축지원 프로그램들

외에도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일-가족양립지원제도들 중 앞의 절에서 언급한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를 제외하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기업복지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기업의 자율적인 권한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근로 환경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부모들이 제도들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적인 사업장이 늘어나 취업부모들의 일-가족 양립갈등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5-10〉 일-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가족친화 사회문화조성	- 가족관계증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초청 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날 등 운영지원 - 가족여가문화촉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 서비스 지원

가) 보육시설서비스

맞벌이부부들이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

분은 바로 부모의 양육자역할을 대리해 줄 양질의 서비스를 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역할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부모의 돌봄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 또한 부모의 돌봄육구와 일-가족 양립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서비스는 맞벌이가족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2,332개소로 총 보육시설 43,770개소 중 약 5.3%를 차지하고, 이에 비해 민간(민간+법인 단체 등) 보육시설은 15,619개소로 전체 시설에 대비하여 약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육대상아동에 대비하여 시설이용아동의 비율은 53.6%이고, 그 가운데 국공립시설이용아동의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이진숙·이슬기, 2014). 이를 볼 때 보육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해 보자면 시설운영의 주체가 대부분 민간이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맞벌이의 일-가족양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미비는 보육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유형 중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부모가 근무시간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규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연령별 정부 보육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아래의 표를 보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이행율은 81.7%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수당의 지급이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 결과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49.7%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7.6%로, 전체 사업장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설치이행기준의 강화는 향후에 취업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5-11〉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의무 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계	1,074	877	534	242	101	197
	100.0	81.7	49.7	22.5	9.4	18.3
국가기관	110	100	83	7	10	10*
	10.2	90.9	75.5	6.4	9.1	9.1
지자체	155	152	78	70	4	3**
	14.4	98.1	50.3	45.2	2.6	1.9
학교	95	73	33	33	7	22
	8.9	76.8	34.7	34.7	7.4	23.2
기업 (공사 등 포함)	714	552	340	132	80	162
	66.5	77.3	47.6	18.5	11.2	22.7

주: 2013년 12월 말 기준.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자료: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scac.or.kr/win/win_26_03.asp?bgid=06).

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부모에게 전문 보육인력인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아래의 표 참고). 그리고 이는 취업부모의 양육돌봄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등하원(교) 동행, 학습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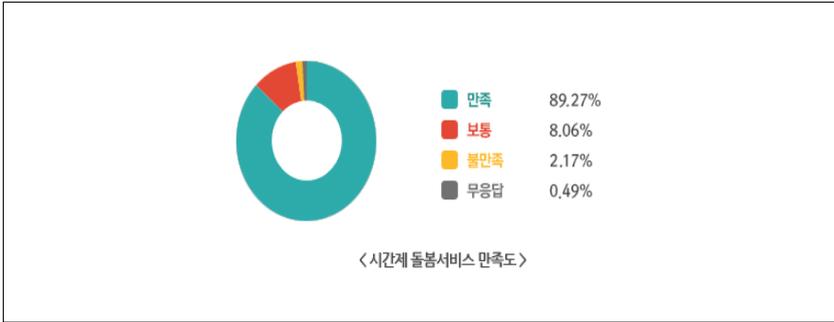
〈표 5-1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이용 대상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안내	가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120~240 (가나형: 240, 다라형: 200) 시간 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수 존재 - 만 0~ 2세: 3명 - 만 3~12세: 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 50%정부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염병에 한함.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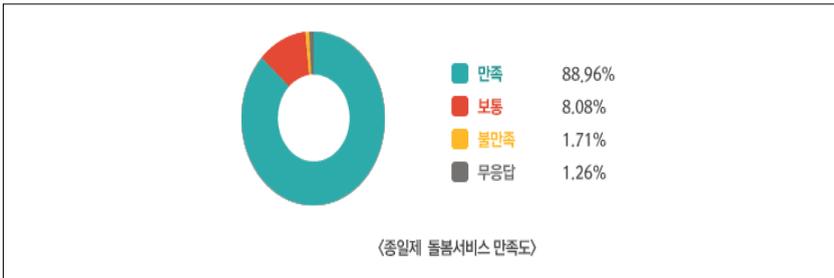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에서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하여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비스인력의 확충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림 5-7] 시간제 돌봄서비스 만족도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care/babycare2.do>

[그림 5-8] 종일제 돌봄서비스 만족도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care/babycare3.do>

제3절 국외의 가족갈등 관련 정책

국가 간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위한 비교대상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복지국가유형별로 국가들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스웨덴, 독일, 영국)한 다음, 각 국가별로 국외의 가족갈등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유형인 노르딕국가군은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모든 시민이 서비스제도에 동일한 접근권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하고, 시민의 대다수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들로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들을 언급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는 주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이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정책들 보다는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 사회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지는 민간에 의존하는 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관련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은 발달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사민주의형과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들 간의 중간정도의 발달수준을 보이는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 국가들에서는 공공정책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복지의존성도 높은 가족주의적 복지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국외의 가족갈등관련 정책들을 각 국가유형별로 보기 위해서 스웨덴과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가별 정책을 가족갈등유형별로 정리하기에는 자료의 접근성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국가별 정책은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⁷⁾

7) 국외의 가족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스웨덴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사회적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이니만큼, 가족 내에서도 성과 세대 간의 평등성과 민주성에 강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스웨덴의 가족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가족정책은 가족친화적이고 평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스웨덴에서는 동거에 대해서도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정책적인 혜택도 동거커플이라고 해서 전혀 차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도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웨덴정책의 특징은 가족외부의 조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가족이 처한 상황자체가 갈등적 요소를 그만큼 적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스웨덴의 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책은 젠더와 세대 간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책의 초점도 주로 평등화의 실현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정에 자녀가 없는 시기부터 자녀를 양육하여 출가시킬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재원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공적인 가족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means-tested) 혹은 욕구조사(needs-tested)에 기반한 수당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가족 간의 소득불균형을 교정하고, 다자녀가정과 무자녀가정 간의 소득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은 민간 비영리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http://www.government.se/content/1/c6/23/17/05/680731f1.pdf>).

가. 경제적 지원

1) 주거수당

결혼초기의 부부에게는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주거는 남편이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남성들이 결혼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부부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층이 아닌 경우에는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주거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다만 신혼기의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만이 있을 뿐이다.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젊은 부부에 대해서는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주거수당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신혼기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부부가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수당의 액수는 주택크기, 주거비용, 소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된다. 주거수당은 부부가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락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 유용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임신여성을 위한 현금급여(Pregnancy cash benefit)

스웨덴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일찍이 부터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이

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가정 양립정책의 지원수준이 매우 관대하고, 양육기간 동안에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임신여성을 위한 현금 급여는 임신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지속할 수 없는 여성에게 취업의 중단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의 하나이다. 스웨덴에서 임신여성은 임신 중에 본인이 맡은 업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직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고용주에게 본인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업무를 재배치해 줄 수 없고, 여성근로자의 상황이 첫째, 임신으로 인해 업무의 1/4이 감소하였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경우, 둘째, 작업환경이 위험하여 임신 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신여성을 위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급여수준은 소득의 80%이다.

우리나라에서 임신여성은 본인의 건강문제가 발생되면 병가나 연가를 이용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현금 급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임신과 출산은 곧 소득상실 또는 퇴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신여성을 위한 현금 급여는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가족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나. 시간적 지원

1) 육아휴직

우리나라에서의 일-가정 양립갈등은 주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갈등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어머니들이지만, 제도의 활용이 일-가족 양립갈등을 경감해주는 정도는 매우 크다고 모기는 어렵다.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취업부모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양립상의 갈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육아휴직의 부부간 할당방식이다. 스웨덴에서는 1995년부터 육아휴직기간 중 한 달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한 ‘아버지의 달(daddy month)’를 도입하였고, 이는 2002년부터 2개월로 연장되었다. 아버지의 달은 어머니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남성에게도 육아참여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아버지 할당제도(daddy's quota)로, 만약 아버지가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휴가자격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되는(use-or-loss)’ 강력한 유인제도이다. 이는 일-가정 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도구인 육아휴직조차도 부부간의 불균형적인 젠더관계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됨을 인식한 스웨덴 정부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2002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대해서는 480일이며, 부모가 각자 240일씩 동등하게 나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까지 사용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휴직급여는 소득의 80%가 지급되고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아버지할당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에 대한 성역할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양육은 어머니만의 역할로 인식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부 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에게 80% 수준의 정률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는 휴직기간 동안에 부모의 소득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맞벌이부모가 휴직을 하여도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고, 부모 모두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고, 그로인해 휴직의 사용이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그런 결과로 어머니들의 역할과중은 그다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 자녀간병휴가

취업중인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단순한 양육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아프게 되면 취업중인 부모는 돌봄으로 인해 직장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12세 이하인 병약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자녀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간호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금급여가 지급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소득의 80%이고, 한 자녀 당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자녀가 특정한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지원과 서비스법(Action Support and Service)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자녀의 부모는 자녀

가 21세가 될 때까지 간병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하이면서 기능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자녀당 연간 10일의 병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돌봄으로 인해 심지어는 직장일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급여수준이 종전임금의 80%라는 것은 스웨덴이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제도의 개선에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다. 서비스 지원

1) 보육서비스

평등주의의 이념 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보육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스웨덴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역할을 평등하게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를 통해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충분한 접근성(full access)의 원칙과 공공재원(public fund)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Swedish Institute, 2004).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교육원(day-care centers)에서,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후센터(leisure-time centers)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과 취학 아동 모두의 보육을 위한 가족보육센터(family day-care centers)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보육전달체계를 통해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0~2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보육율이나 3~5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보육율 간에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보육수혜율이 높다. 그리고 부모들은 직장과 가족생활을 성공적으로 양립하면서, 일-가정 양립으로 인해 부부간에 역할갈등문제에 노출될 위험성도 그만큼 적다. 이것은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0~5세 아동을 위해 모두 지원되고 있지만, 전통적 역할구범에 의해 어머니들의 역할부담은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 배가되고, 양립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보육서비스의 개선방향성을 암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돌봄서비스

노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에 또는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된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스웨덴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부모가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찍이 부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재가 돌봄은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법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가돌봄서비스는 목욕, 옷입기, 이동하기, 청소, 쇼핑, 세탁, 요리 등의 가사업무, 기본적인 의료업무,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회수는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용은 자기부담금(4~5%)만 이용자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회화

가 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화하고 있어서, 1993년에는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10% 정도가 서비스의 공급을 민영화하였지만, 불과 10년이 지난 뒤인 2000년대 초에는 82%로 대폭 증가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지방화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민간기업의 공급율은 19%이지만 스톡홀름은 60%, 고펜버그는 0%로 나타나고 있다(Marta·Gun-Britt, 2012). 돌봄 서비스에서 시장화의 경향이 강해지면 가족의 부담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보다는 현물방식을 택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을 둘러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이나 돌봄은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하고,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을 비롯한 위협에 노출된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핵가족이 붕괴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행해지던 보육은 이제 사회화를 통해 가족과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영국은 인구구조나 가족구조, 그리고 노동시장환경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러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다

양한 갈등들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가족보존서비스의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영국의 가족갈등관련 정책의 특징은 가족이 경험하는 갈등들에 대해서 정책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지 못하며, 가족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공공적 노력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가. 시간적 지원

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부모가 경험하는 일-가족 양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발달정도가 북유럽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부모들은 자녀 한 명당 13주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모들은 부모휴가 외에 부성휴가(Paternity Leave)도 사용할 수 있는데, 부성휴가는 유아를 돌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들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2주간의 기간이 보장된다.

영국에서는 또한 어머니들의 일-가족양립갈등을 경감해주기 위해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고용법(Employment Law)에 따라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간의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모성휴가는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26주간의 정규 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이다. 이 휴가는 여성이 26주간의 휴가를 끝내고 휴가전과 동일한 직급 등 휴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직장에 복직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26주간의 추가 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이다. 휴가기간이 끝난 여성에게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에 복직

할 권리가 부여되지만, 만약 고용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개방했다면 고용주들은 이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계약과 조건을 가진 다른 업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2008년 10월부터는 여성들이 추가 모성휴가를 사용해도 정규 모성휴가와 동일한 근로계약상의 혜택들을 부여받고 있다.

영국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휴직제도들은 모성휴가를 제외하면 낮은 임금대체율과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스웨덴의 정책들보다 가족의 일-가족 양립문제를 해결하거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크지 않다.

나. 서비스 지원

1) 부모교육

부모교육은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부모가 공평하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부부 간의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011년 10월에 Sarah Teather 아동가족부 장관은 올바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과 바람직한 아동돌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세 곳의 지역(Middlesbrough, the London Borough of Camden 그리고 High Peak in Derbyshire)을 선정하여,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 정부가 위와 같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공적 차원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을 통한 부모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담

은 덜고, 효율성은 높이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그래서 현재 영국정부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부모교육을 이수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콘텐츠 공급자들에게는 부모교실을 위한 운영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에는 전반적인 양육 기술 및 지식, 문제를 지닌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들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이론 및 사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유사한데, 부모가 자녀 돌봄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시장의존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저소득가족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2)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영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만 13세에서 19세까지(정신지체나 장애인인 경우 만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부모자녀 관계와 성장발달에 대한 다양한 조언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션스(Connexions)’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영국 내 각 지역의 47개 ‘커넥션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각 지역의 파트너십 기관에서는 커넥션스의 개인 상담가(Connexions Personal Advisor)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장, 그리고 가족문제에 대해 1대1로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부모 또는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진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일탈을 억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토대로 하여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일반청소년을 위한 가족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벤치마킹모델로서의 시사점을 던져 준다.

3) 가족 및 친지에 의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영국정부는 아이들이 안정되고 지지적인 가정 안에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및 민간 협력 기관들을 위한 법정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이 법정 지침은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친지가 중심이 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법령을 통해 아동이 가족관계 강화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족 및 친지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법규화는 아동의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일-가정양립갈등을 공적인 체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족체계나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체계에 의존하려는 영국식 복지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공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 가족의 갈등을 경감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에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독일

독일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로서, 가족주의에 기반한 정책적 경향이 강하고, 실제로 가족이 부담하는 복지공급의 역할비중이 적지 않다. 그로 인해 취업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어려움은 인접국가인 프랑스나 북유럽국가들의 어머니들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독일은 심화된 저출산 현상이나 이혼의 확산을 통해 표출된 이러한 가족지원 정책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최근 들어 취업부모의 일-가족 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가. 경제적 지원

1) 부모수당

독일의 사회문화는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역할 또한 공고하여, 독일의 부모들은 유럽 내 다른 국가의 부모들보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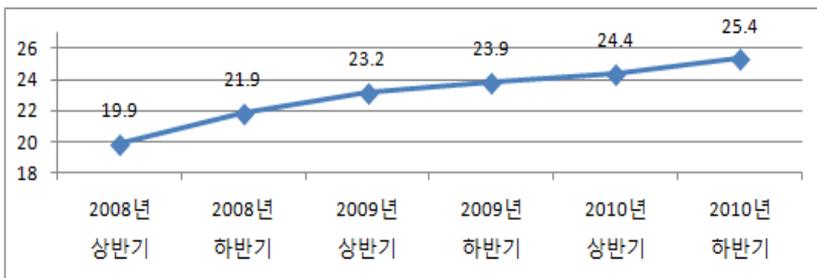
독일에서는 부모에게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 중에 경제적 지원정책에 속하는 대표적 제도로 기존에는 산후부터 아동수당의 지급전까지 제공되던 양육수당(Erziehungsgeld)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2007년에 부모수당(Elterngeld)으로 변경되었다. 부모수당은 급여기간이 12개월인데, 만약 아버지가 일종의 육아휴직제도인 부모시간(Elternzeit)을 신청하여 부모수당을 수급하거나, 한부모가 급여대상이 될 경우에는 급여기간이 14개월 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부모수당은 임금비례방식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는데, 현재의 급여수준을 보면 대부분의

중산층에게는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세후 평균소득의 67% 수준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부터 300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김기선 2007, 49; 이진숙-김태원, 201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2).

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을 비교해 보면 부모수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수급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또한 여성수급자 중 약 83%가 12개월을 온전히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독일에서 기존에는 아이의 양육은 온전히 어머니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기선 2007; 이진숙-김태원, 2014). 그러나 부모수당으로의 개정 이후 아버지들의 신청이 미미하긴 하나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는 취업한 어머니들의 일-가족 양립갈등이 점진적이긴 하나 경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5-9] 전체 출생아 대비 아버지가 부모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비율

(단위: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1b).

2) 수발수당(Pflegegeld)

독일의 장기요양보험법인 수발보험법(Pflegegesetz)은 돌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가족 내의 갈등을 완화하여 가족의 재가노인돌봄활동을 지원하고, 자신의 생계활동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가족구성원(주로 여성)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사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Hildegard Theobald, 2012). 수발수당은 현물급여액의 약 50% 수준으로 지급된다. 수발수당의 수급자인 수발자는 주로 가족구성원이 되는데, 이들이 수발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14시간 이상의 재택 수발행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이진숙, 2008).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형제자매 간에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식의 수발수당과 같은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식 수발수당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가족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돌봄 실태를 보면 가족이 실질적인 노인돌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역할의 공고화로 인한 가족 내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돌봄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구가 될 수 있다면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지원급여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나. 시간적 지원

1) 산전후휴가와 부모시간

독일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기점으로 하여 출산 전에는 6주, 출산 후에는 8주 간의 유급 산전후휴가가 주어진다.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그에 이어서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이 제공되는데, 이 제도는 2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제도로 변경되었다. 부모시간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돌봄으로 인한 부부 간의 역할갈등과 일-가족 양립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부모시간의 사용 시에 3년째가 되는 부모시간은 고용주가 허용할 경우에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http://www.bmfsfj.de>). 그런데 이 제도는 2007년에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고, 아버지가 2개월 이상 휴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보너스로 2개월이 추가로 보장되도록 개선되었다(이진숙·김태원, 2014). 이는 독일정부가 자녀의 돌봄이 이제는 어머니들만의 일이 아니며, 부모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비교하면 독일에서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은 아직 저조한데, 이는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이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로 인해 어머니들의 역할스트레스는 크게 경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녀간병휴가

취업한 부모들은 병약한 자녀를 위한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데, 가구

내에 간병과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법 전V편(SozialgesetzbuchV) §45 Abs.1에 의거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부의 경우 한 자녀 당 그리고 부부 한 사람당 최대 25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한부모의 경우에는 한 자녀당 20일, 다자녀의 경우에는 최대50일까지의 휴가사용이 가능하다(이진숙, 2008).

독일의 자녀간병휴가는 스웨덴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휴가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휴가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어머니들의 역할이 돌봄 수행 역할로 고착되어 직장복귀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다. 서비스지원

1) 보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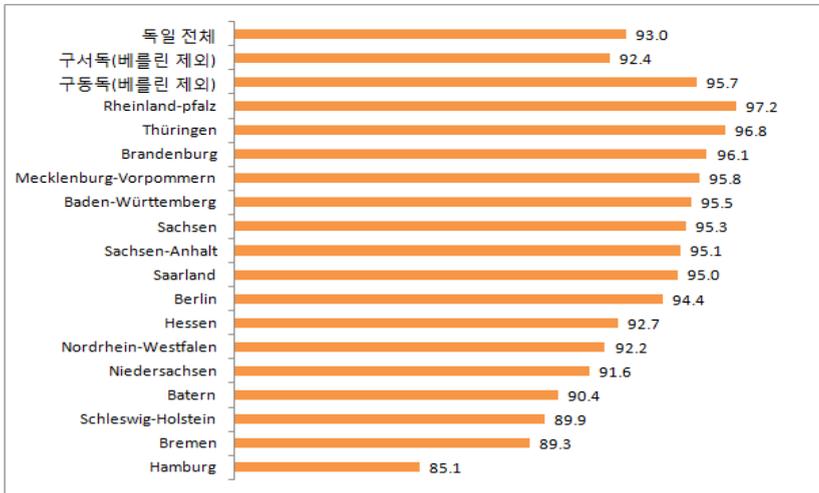
부모의 역할스트레스와 일-가족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돌봄에 대한 대리적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 독일에서는 2001년의 정책개편 이후부터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확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3세미만 아동에 대한 시설보육율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독일 내에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분담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지역을 구 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으로 구분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주마다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률(0~1세 미만 이용률: 5.6%, 1~2세 미만 이용률: 48.4%, 2~3세 미만 이용률: 75.9%)은 북유

립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높아서 구서독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이진숙·김태원, 2014;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n, Senoiren, Frauen und Jugend 2012, 65). 이는 구서독지역에서는 아직도 영유아에 대한 돌봄 가치관이 보수적이고, 시설인프라 또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진숙·김태원, 2014).

영유아보육의 상황과는 다르게, 독일에서도 3~6세 사이의 아동들의 시설서비스 이용률은 타 유럽국가들과 비슷하게 2011년 현재 93%로 나타나고 있다. 3세 이상의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돌봄은 순수한 돌봄의 기능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도 기대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보육시설의 이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게 일반화된 현실이다(이진숙·김태원, 2014).

[그림 5-10] 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6세 아동 비율(2011년 3월 1일 기준)

(단위: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1b).

앞에서 보았듯이 독일의 아동을 위한 시설 돌봄 서비스는 스웨덴에 비해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는 결국 독일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담지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불균형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노인돌봄서비스

독일의 수발보험은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수발보험은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구성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시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노인돌봄가족의 역할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수발보험에서 현금급여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 돌봄 서비스는 현금급여에 비해 이용비중이 훨씬 낮다. 이는 독일정부가 가족주의적 정책이념과 재정절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유인한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수발노인의 입장에서는 수발자로 가족을 가장 선호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수발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발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가족 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현금급여와 시설서비스 간의 비중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4절 국내외 정책의 시사점

1. 국내 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갈등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들은 부부갈등에서부터 일-가정 양립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족의 갈등 해소와 관계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적 내용들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편중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13〉 국내정책 현황

구분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
부부갈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과정 부부 심리·사회적 지원 - 이혼숙려제도 - 부부교육 - 가족상담서비스
가족 내 세대갈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교육 서비스 - 가족 상담 서비스 - 아동 돌봄 서비스 - 한부모의 자립과 자녀 관계 회복지원서비스 - 드림스타트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 청소년 지원
부모- 성인자녀 갈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부양 주택특별공급 - 노후생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노인단기 가사 서비스 - 간병수발서비스
형제자매 갈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갈등 완화 캠페인과 명절갈등 상담서비스
일-가족 갈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가족갈등관련 정책의 분야를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영역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간적인 지원은 아동보육에 대한 분야 외에는 매우 미약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주로 아동을 보육 중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들은 주로 사후치료적인 상담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시간적 지원정책은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가족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되므로 향후에는 이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가족갈등관련 정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갈등유형별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갈등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황혼기 부부를 위한 갈등경감과 관계강화를 위한 서비스들의 확대가 요구된다. 가족서비스들을 가족생활의 주기별로 살펴보면 신혼기부터 육아기까지의 가족생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서 활발히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점점 늘고 있는 빈둥지시기의 노인부부에 대한 부부상담이나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13년에 베이비붐 세대인 1953~1963년생의 남녀 총 1,046명을 대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노인부부들은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는 부부만의 공동의 시간 속에서 평소 부부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역할분담과 관련된 보수성과 가부장성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는 바가 많고,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를 경험하는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혼기나 중장년부부는 물론이고, 노인부부에

대한 상담과 화해조정 그리고 역할갈등과 관련된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부형성기에서부터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부부 간에 발생 가능한 역할갈등과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생활 주기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미성년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갈등의 핵심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세대 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향후에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가족서비스 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들은 주로 저소득가족이나 이미 갈등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의 내용이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서비스의 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고, 일반 미성년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지원서비스들을 체계화하고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부모와 성인자녀들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주로 제사를 비롯한 가족 내의 의무와 부양문제를 둘러싸고 유교적 전통에서 파생되는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문화로 인해 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은 현재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과 유교적 가족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남성중심의 명절문화가 아직도 자식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정책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핵가족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있고, 여성의 희생만 요구하는 명절문화는 부부간 또는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야

기할 뿐이다. 따라서 부양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들이 현재에는 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비롯한 신체적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정책적 지원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대폭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명절문화와 제사를 비롯한 가족전통이 젠더평등적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부모의 일-가족 양립갈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책이 집중적으로 확대되어 온 분야이므로 정책의 그러한 발전경향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분명 대상의 보편주의화라는 긍정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가족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보육지원의 보편주의화라는 강박증에 이끌려 편중적으로 확장되다보니 오히려 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의 초점을 맞벌이가족과 저소득가족이라는 두 집단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가족이 경험하는 갈등들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부갈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전달체계의 기능과 사업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이 센터는 2004년에 3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 현재에는 총 152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도별 설치 추이(2013년 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3	16	50	66	83	98	138	139	149	152	
중앙센터		-	1	1	1	1	1	1	1	1	1	
지방 센터	계	3	15	49	65	82	97	137	138	148	151	
	독립형	국비	3	6	20	33	38	54	76	77	77	78
		지방비	-	9	29	32	44	43	38	38	38	40
	다기능화	-	-	-	-	-	-	23	23	33	33	

주: 1) 다기능화 센터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함.

2) 독립형 센터란 다기능화 센터 외 센터(종사자 4인 이상)를 말함.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대상만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단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센터의 이용자수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표 5-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11,740	105,055	316,221	454,786	486,167	853,377	1,095,928	1,290,645	1,459,471	1,286,265	
가족교육	2,283	18,903	78,851	160,579	130,361	275,562	323,685	367,399	367,105	309,397	
가족 상담	일반 상담 프로그램	1,273	11,752	39,180	76,470	103,382	94,021	115,049	126,877	145,146	110,520
								49,942	76,569	75,827	68,476
가족친화 문화조성	8,184	74,400	198,190	184,393	135,324	176,602	401,276	495,307	317,938	338,675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	-	-	33,344	117,100	73,705	75,841	121,155	477,836	407,367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	-	-	183,545			121,025	103,338	75,619	1,830	

자료: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

그런데 이용자 현황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가족교육이나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과 아이돌보미의 파견이 핵심이 되는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강화나 심리정서적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인 가족상담의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 가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상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2. 국외정책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족갈등에 대한 국외의 대응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3개국의 정책들이 제시해 주는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화 수준이 높고,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 또한 높아 가족계층 간에 평등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고, 사실혼이 많은 상황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부모에게도 모든 복지혜택을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거의 해소된 상태이므로 사람들의 제도에 대한 활용이 자유롭다.

스웨덴의 가족지원정책들은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적 지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주로 취업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스웨덴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에 대한 재정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 지원보다는 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두 배에 달한다(OECD, 2012). 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입이 훨씬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가족의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사회화를 통해 그만큼 덜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보다는 서비스적 지원에 대한 규모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단기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스웨덴이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스웨덴의 가족관련 정책들에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고, 양육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제도들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식의 가족지원내용들을 참고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제도 내에 잠재되어 있는 분리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가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남성이 여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육아휴직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부여하되, 스웨덴처럼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서 쓰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남성이 여성에게 휴가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소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는 상반적으로 영국의 가족지원정책들은 경제적 지원방안들이나 서비스적 지원방안들에서 모두 한결같이 자유주의적인 이념의 성향

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책적 지원의 대상은 이미 경제적 문제나 가족구조적 유형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주로 저소득가족과 한부모가족)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편주의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수준을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주로 지방정부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가족문제, 특히 가족 내의 심리정서적 갈등이나 관계의 강화를 위한 지원은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개입에 의한 경우가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전적으로 민간이나 시장에만 의존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은 정작 서비스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족갈등과 관련된 지원 방안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독일의 재정지출규모는 OECD국가들 내에서 상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가족지원정책들은 서비스보다는 주로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가족에 의한 돌봄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독일의 정책적 경향은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데에 주력하는 스웨덴의 정책기조와 매우 상이한 극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시설보육서비스와 전문 인력에 의한 서비스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외한다면 나머지의 정책들은 그 이념에 있어서는 스웨덴보다는 독일식의 가족주의적 정책들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 내의 문화는 매우 보수적이고 성역할이 공고하여, 그것이 가족 내 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해 보면 독일의 가족정책은 이념적인 방향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현실정책으로 모방하기에는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식의 모델은 가족의 돌봄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적 지원은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이 강하므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과 어머니들의 역할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16〉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 비교(2007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총 가족지출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출산과 부모휴가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주간보호, 가정도우미서비스 (day care/home help service)
	cash	benefits			
독일	1.1	0.7	0.8	0.2	0.4
스웨덴	1.5	1.9	0.8	0.7	1.7
영국	2.1	1.1	0.8	0.4	0.9
한국	0.0	0.5	0.0	0.0	0.3
OECD평균	1.2	0.8	0.8	0.4	0.6

자료: OECD Stat(SOCX: Family database)에서 재구성.



제6장

가족갈등의 대응방안

제1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제3절 가족관계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제4절 가족기능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6

가족갈등의 대응방안 <<

제1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라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가족가치관 약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가족가치 약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며,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인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의 심화가 예상된다.

우리사회의 정서상 가족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해체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공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족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는 해소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으로 예방과 치료 등의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가족갈등에 대응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상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의 취약을 진단하고 이로 인한 사전적 원인과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1.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

본 연구결과,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가정 내 부정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패턴 또는 상호작용 부족 등이 이론적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실증적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화조사결과, 가족갈등을 경험한 응답자는 1/3정도이었고, 그중에서 부부, 형제자매 및 가족 내 세대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비교적 많았으며, 갈등원인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부족 때문이 많았다. 또한 관계 개선을 욕구도 대화 및 의사소통 강화, 공유하는 시간 확대 등으로 나타나서 가족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문화 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밥상머리교육 등을 중심으로 가족 공유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 공유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길고, 방과 후에는 입시준비나 취업준비가 우선시되는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실시되는 가족문화 사업이나 밥상머리교육은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직장과 지역사회 단위에서 단편적인 인식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과도 맞물린다. 일례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좋은 예이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확산 및 사교육 환경 개선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갈등 원인 중 비민주적 젠더관계도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과거에 비해 젠더관계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아버지도 어머니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상당히 민주화되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결과, 부부 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의 가족관계 갈등과 노인부양 갈등, 상속 갈등 등 가족기능 갈등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불평등한 젠더관계나 젠더 간 기대의 불일치에서 유래한다.

한국 남성은 여전히 주된 부양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매우 짧고,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매우 낮다. 노인 부양에 대해서도 여전히 딸보다 아들에게 더 기대하며, 이는 며느리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상속법에서는 남녀 균분상속이 원칙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들, 특히 장남이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삼식 외, 2011). 이러한 불공평한 젠더관계로 인해 상속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도는 평등한 관계를 가정하지만, 실제에서는 비민주적 관계가 남아 있는 사회적 양가성 역시 젠더관계에서 매우 강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사회적 양가성은 단지 제도나 정책의 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노년기에 남성의 부양자 역할 상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부 갈등도 젠더관계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노인이 되기 전에 균형 잡힌 젠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기 부부 갈등의 예방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양성 평등적 인식 확산과 함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족과 사회, 국가 등 다차

원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양성평등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양성불평등적인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프라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질 제고

본 연구를 위한 전화조사결과 나타난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족갈등은 응답자의 1/3로 상당수가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여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단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및 가족문화 사업 등을 제공하여 가족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규모는 보육 및 노인 돌봄 등 타 정책과 비교할 때 소극적인 증가를 보였고, 센터 설치율도 67%에 불과하여 지역별로도 접근상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변주수·유재언, 2013). 특히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상담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많으며 상담사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작아 센터에 따라 상담사의 전문성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는 갈등대비 인프라의 부족을 의미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적·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양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센터를 설치하

되 가족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가족생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교육과 남성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이나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근거 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근거 기반 프로그램의 경제적 예방 효과에 관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가족상담의 공적 전달체계는 센터를 통해 마련되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지역별 가족상담 서비스의 질의 편차와 가족체계적 관점의 훈련을 받은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영주, 2014). 이는 가족생활교육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8) 근거 기반 프로그램은 2000년대부터 매우 강조되어 온 개념으로, 실험설계 방법 등 엄밀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정부기관과 주요 연구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프로그램을 말한다(Small et al., 2009).

9) 많은 경우 근거 기반 프로그램은 투자 대비 경제적 이득과 같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 문서화되어 있고, 철저한 강사 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절 가족관계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1. 가족관계 갈등의 예방교육의 확대

본 연구결과, 가족갈등원인은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 진단되었다. 개인차원에서는 생애 발달단계 즉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의 특성에서 오는 갈등이 해당된다. 가족차원에서는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족갈등으로 결혼, 출산, 자녀의 취학,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은퇴,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등 예측된 생활사건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 사고, 실종, 유괴, 실직, 사업실패, 중대한 질병의 발병 등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과 부정적 상호작용, 역기능적 양육태도 및 가족 내 차이와 불일치 등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민주적 젠더관계 등이 이론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가족갈등 원인 중 상당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일례로 가족생활교육이란 건강하고 향상된 가족생활을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족문제의 예방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하는 활동이다(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2014). 즉 가족관점에서 가족이 갈등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의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예방적 교육활동이다(성미애 외, 2014).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은 갈등원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생애단계별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s)을 줄이고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강화시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차원의 예측된 생활사건

에서 오는 갈등 예방프로그램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 부모 전이기 프로그램 및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변화 단계별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측되지 못한 생활사건에 적절하게 도움 되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갈등에 대응하는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간 의사소통기법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간 눈높이 이해 교육, 아버지교육 등을 통해 가족 간 부정적인 상호작용, 역기능적 양육태도 및 비민주적 젠더관계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일회성 대중 강연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과 같이 소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은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되,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부부갈등 대응방안

가. 부부교육과 부부상담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부부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0%로 기혼 응답자의 1/3이 부부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갈등원인은 부부간 의사소통 부족과 양성불평등적 관계 등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 및 자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부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 대응이 사전적·사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는 성인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기 이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도와주는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적령기 성인을 대상으로 혼인 준비교육, 올바른 부부 대화법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성에 대한 지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적 측면에서는 부부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관계의 강화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질 높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반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부상담은 주로 이미 갈등상황에 놓여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부터 상담을 통해 갈등 심화와 부부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기 부부 및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 예방을 위한 부부 상담과 가족치료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모색

최근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본 조사결과 나타난 부부갈등 경험은 응답자의 1/3이었고, 부부갈등 원인은 의사소통 부족과 양성불평등적 관계, 경제 및 자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의 양성불평등적 관계는 성역할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가사 및 육아생활에서의 부부 간 양성불평등적 구조는 가부장적인 전통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들 생활에서의 권력관계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과 현대적 변화의 불일치로 가족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중심의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의 관건은 부부관계로 집중되므로 균형 있고 민주적인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주기별로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한다(김유경·진미정·송유진·김가희, 2013).

또한 부부 간 평등한 역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여가시간을 부부가 공유하도록 여가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부부공동 참여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사 및 육아 등 돌봄노동의 성별공유 인식확대와 역할분담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가족친화적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 축소 및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황혼기 부부 갈등 대응: 성별역할 공유 및 노후지원체계 구축

본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기혼 응답자의 32.0%로 1/3이 경험하였고, 부부가 은퇴한 경우 부부갈등이 1/4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경제문제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부부중심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황혼기 부부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혼기 부부의 갈등원인은 배우자의 은퇴 이후에도 부부 간의

성역할이 변화되지 않고, 고령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배우자를 위한 수발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이 지속되는 데서 기인되는 바가 크며, 여기에는 은퇴로 인한 경제문제까지 과증되어 이들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황혼기 부부갈등을 최소화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부부생활을 위해 황혼기 부부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하고 확대한다. 또한 부부가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성별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고 역할분담의 균형점을 찾도록(이삼식 외, 2011)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황혼기 부부의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 확보를 위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비노인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및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은퇴설계와 함께 근로를 희망하는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승권·김유경 외, 2012)

라. 이혼예방프로그램 확충

본 조사결과, 부부갈등의 대처방식은 대다수의 부부가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부부관계 소원이 2/3을 상회하였고, 폭력 및 이혼 등의 심각한 결과까지도 야기하였다.

실증적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 간에 갈등이 누적되다보면

이는 이혼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에는 이혼숙려제도가 유일하다. 이혼의 위기에 직면한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갈등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이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갈등의 변화정도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이혼숙려제도를 개선하여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유도하고, 정신적·경제적으로 이혼에 대비하도록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부부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부간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한편, 이혼과정에서 혼란위기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이혼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혼 위기에 처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전문적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으로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가족 내 세대 갈등 대응방안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

최근 고학력화 및 만혼화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은 가족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된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육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여가시간을 공유

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로 학교교육이나 시험 등에 제한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편향되게 만들어 결국 관계 상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실증적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1년간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갈등은 45.4%이었고, 자녀와의 갈등원인은 주로 생활습관,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었고, 이외에 성격 및 정서문제와 생활부담 등도 파악되었다.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한 데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처방식도 대화 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발견되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부모자녀 간에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가/체험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부모-자녀 간 친밀감을 제고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인자녀-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 모색

혼인가치관의 약화,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으로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의 사회현상으로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축소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이 증가하며 심

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최근 1년간 부모와 성인기 자녀의 갈등은 28.6%이었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32.3%로 일반 성인 자녀와의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갈등원인은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많았으며, 이외에 명절 및 제사, 신체적 돌봄 등도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차분하게 대화하기도 하나 그냥 참는 경향도 높았다.

이와 같이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에 갈등이 높은 편이었고, 향후 동거기간의 지속적인 연장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선행적으로 기존의 위계적인 세대 간 관계를 탈피하여 민주적·합리적인 가족문화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일방적인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및 갈등을 해소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김유경 외, 2013).

다. 가족 내 세대 간 응집력 및 탄력도 제고 방안

본 연구결과, 가족 내 세대갈등은 28.6~45.4%로 자녀연령 및 부양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고,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은 전통적 확대가족과는 달리 고립화된 핵가족(isolated nuclear families)에서는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감정적 표출이 쉽게 되

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가족의 응집력과 탄력을 약화시키므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일환으로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응집력 및 탄력은 가족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향상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단위의 교육 및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김유경 외, 2013).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가족지지를 제고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지지 능력을 제고한다.

4. 형제자매 갈등 대응방안

가. 전통적 가족문화 및 인식개선

우리나라의 부양 및 명절·제사, 그리고 상속관습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및 문화와 관련이 높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부양 및 상속문화는 장남 및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가족형태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자녀규모도 점차 축소되어 남아선호에 대한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제도적으로도 상속법이 양성 평등적으로 개정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문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혼란과 충돌을 야기하며 이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결과,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부분은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유지계승하려는 경향과 남아선호사상에 바탕을 둔 아들 위주의 재산상속 관행, 그리고 부모부양 등에서 기인한다(여성가족부, 2010; 이삼식 외, 2011).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잘 보여준다. 형제자매 갈등은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친형제자매 간 갈등은 19.8%, 동서 간 갈등은 29.5%로 동서 간 갈등이 친형제자매보다 다소 높았고 갈등원인 중 명절 및 제사 등 집안행사로 인한 갈등은 약 17~18%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고, 부모부양은 약 9~12%비율을, 재산상속 때문은 4~6%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안명절 및 제사 행사 등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명절제사를 비롯한 전통적 가족문화도 점차 양성 평등적으로 개선되면서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 갈등을 야기하므로 양성 평등적인 가족문화 및 관습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가족 내 부양 및 돌봄의 불평등적 구조적 개선을 위해 노부모 돌봄을 비롯한 가족 내 사안에 대해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남가족에게만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기 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형제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유희정, 2013).

나. 전문적치료적 상담서비스 강화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유지와 부모의 부양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명절제사나 노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해 형제자매 간의 의견이 상충되면 그 갈등은 장기화되고 관계의 단절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직장을 중심으로 거주지 이동 및 분거로 인해 가족유대의식의 경감되어 형제자매 간 응집력이 부족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한번 단절이 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갈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체계적인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가족기능 갈등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1. 가족기능 갈등 대응: 가족관계 갈등과의 연계성 고려

현재 가족 갈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동 돌봄 및 노인 부양과 관련된 갈등, 즉 일-가족 갈등 및 노부모 부양 관련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족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가족 갈등의 완화가 중요하다. 취지 하에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및 보육 정책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장기적인 수발을 필요

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을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2014년 7월부터는 경제적 측면의 노부모 부양 갈등을 감소시키고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제도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적 대응이 가족기능 갈등의 해소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으나 일-가족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저출산 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고선주, 2014). 보육정책이 재정적 지원과 탈가족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OECD 국가 중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보다 시설 이용률이 더 높은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났다(윤희숙 외,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부모 부양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노인 돌봄을 탈가족화의 맥락에서만 접근한다는 점은 보육정책과 유사하다.

가족기능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족 내 아동 및 노인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돌봄의 경우, 자녀는 부모라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심리 기제의 토대가 되는 애착을 형성하며, 부모는 부모역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으로 인해 최근의 학자들은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은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삼식 외, 2011; 장경섭 외, 2013)는 입장이다. 즉 가족이 원할 경우 아동 및 노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역시 돌봄의 탈가족화 만큼이나 중요하다.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균형은 가족기능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의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 아동 돌봄을 통해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자녀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기에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부모-자녀관계가 도구화되고 물신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부모-성인자녀 부양 및 상속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 등 가족기능 관련 정책은 돌봄이나 부양과 같은 가족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의 상호관련성에 염두에 두고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가족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육정책 이외에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족생활 모두로부터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확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녀 돌봄의 역할을 아버지가 공유하는 것도 가족기능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스웨덴의 파파쿼터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가족이 희망할 경우 노인 돌봄을 위해 가족간호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간 돌봄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세대 간 갈등이나 노부모 부양 갈등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모-성인자녀 간 부양 갈등 해소 방안

가. 부양 및 돌봄환경 확충

본 연구결과,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은 과반수 이상이 아들·딸 모두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5은 스스로 해결, 13%는 능력 있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여서 과거 가부장적제도 내의 장남·아들에 대한 부양책임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스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높아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은 약 5%로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가족 내 부양과 개인 부양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서 돌봄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자녀의 부양 책임정도에 대한 의견은 노부모가 원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약 30%로 높았고, 다음은 건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순으로 높아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발적인 부양의식 보다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의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양관은 아직까지 가족중심에 편중되고 책임의식은 수동적인 편인데 비해 부양환경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가족가치의 약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가족중심의 부양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이 전담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공동 파트너로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 내의 주된 노인돌봄주체는 여성으로 남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러한 성별 불균형적인 역할분담구조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또는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역할의 수행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 형평성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구조화(이삼식 외, 2011)할 필요가 있고,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체계들이 잘 지원되어야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일환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의 도입을 모색해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제공자를 위한 휴식이나 쉼터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망도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 강화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독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노부모의 부양은 자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노인이 되면서 타인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저하되므로 교환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되고 의존적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자원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불균형과 의존적 관계성이 달라진다(이삼식 외, 2011 재인용).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노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비율은 23~28% 정도이었고, 갈등원인은 생활비 부담 및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부양 및 돌봄 때문이 약 13~15%로 나타나서 적지 않았다.

한편, 자원부족과 관련하여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이 많은 노인층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자녀의 부모부양행위의 갈등요소를 완화하거나 부

답을 감소시키는데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이삼식 외, 2011 재인용) 노부모와 자녀 간 부양갈등을 완화하거나 감소하기 위해서 노인의 경제적 자원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환으로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동 고용정책을 활성화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들이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노후설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이윤경, 2013).

3. 상속 갈등 대응방안

본 연구결과,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6.9%로 다른 갈등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환경의 공백을 볼 때 상속은 부양과 맞물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갈등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부양기대에 벗어난 자녀의 태도에 원인이 있으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부양기대와 기대이하의 상속액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장자 부양의무나 가족부양의 시스템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잘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유산상속관은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상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배우자가 약 56%로 과반수를 상회한데 비해 아들·장남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5% 미만으로 적어서 장남과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

의 감소와 맞물려 유산도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속문화는 전통적인 상속부양체계는 점차 약화되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상속의 여부, 시기 및 정도, 방법 등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외, 2011).

상속갈등은 재산상속과 부양기대의 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설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산을 상속하여 계획적이고 애정적인 선택행위(김유경 외, 2009)에 의한 능동적인 상속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 및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부양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적 노인부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양의식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양한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속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속갈등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일-가족 갈등

본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 중 약 50%는 맞벌이 부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 가사 및 양육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큰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가사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는 56%로 나머지 44%는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가족(배우자+시부모·친정부모)이 52%로 나타나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양육 지원에 있어 공적지원의 부재가 커

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과반수 이상이 가사일 참여와 자녀양육교육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여서 공적지원의 부재가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지원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부의 일-가족 양립갈등은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으나(유자녀: 60%, 무자녀: 41%), 취학여부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취학전: 79%, 취학후: 76%). 이는 유자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부 간에 자녀 돌봄 수행이 평등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의 성별공유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가족 내 합리적인 돌봄 역할 분담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함께 양성평등적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이벤트 등이 다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 휴직제도 등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직장 내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를 줄이고, 육아휴직 및 돌봄 관련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버지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양육자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김경화, 2013; 김유경 외, 2013).

그리고, 아동양육을 부모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동은 사회의 가장 주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자녀의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금지·노성윤·류혜숙·이혜숙·최성숙(2008). 쉽게 배우는 영양판정, 수학사.
- 강수진(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모 우울과 가족갈등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6(1), pp. 113-147.
- 강수진(2010). 가족배경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모 우울과 가족갈등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6(1), p. 115-149.
- 강신성·임왕규(2013).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p 178-192.
- 강은주·한주희(2009). 일-가족 갈등의 선행변수로서 개인적 특성. 대한경영학회지, 22(4), pp.1937-1960.
- 강희숙·양정옥(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pp.183-199.
- 고동우(2011). 부부갈등과 여가경험의 관계: 성별차인가 성격차인가?. 관광학연구. 35(10), p.201-222.
- 고선주(2014). 가족정책 중층화 전략 : 다양한 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포괄적 가족정책 재정립. 한국가족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1-63.
- 국민생활체육회(2009). 2009 생활체육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 권소희·이재림(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41-61.
- 권순만·박건희(2006). “노인 장기요양 자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과제”. 『한국노년학연구』15: 9-36.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이경미(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0(1). pp.31-54.
- 김경신·이선미(2000).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제9권, p.89-106.
- 김경자·임선영·김경원(2007). 함께 성장하는 결혼 그리고 가족. 서울: 구상.

- 김경화(2013).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 성별과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 김광웅·문수경(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1), pp.71-84.
- 김기경·박혜인(2001). 도시 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p.269-281.
- 김기선(2007). “독일 육아수당제도 변화: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단축.” 『국제노동동향①-독일』, 제 5권 제 11호, 46-55.
- 김동식·김영택·정진주(2013).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
- 김명자·계선자·강기정·김연화·박미금·박수선·송말희·유지선·이미선(2009). (아는만큼)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경기: 양서원.
-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혜 외(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회, 20(3), pp.211-226.
- 김미혜·성기옥·팽경희·최희진·최소영(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1(4), pp.905-923.
- 김사라·형선(2010).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p.55-66.
- 김선희(2001). 한국 가족내 여성의 갈등에 대한 철학적 분석. 한국여성철학, 1, pp.95-111.
- 김소연·윤미은·승정자(2002). 케어복지사를 위한 노인영양, 교육과학사.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233.
- 김승관·김유경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

- 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용·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출판부.
-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정책』 13: 40-71. 수문사.
- 김영란·황정임(2011).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모델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희 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pp.1-30.
- 김영희·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p. 65-82.
- 김유경·김양희·임성은(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진미정·송유진·김가희(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2013). 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세대 갈등,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 2013.5, 165-175.
- 김인선·이동명(2009). 조직의 지원환경이 일-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2), pp.67-94.
- 김종숙(1997). 가족갈등의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10(1), pp.307-323.
- 김지영(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훈·강욱모(2013). 베이붐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1), pp. 51-69.
- 김혜경·박천만·中嶋和夫(2010). 노인부양 사회화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부모조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1), p.170-194.
- 김희진(2008). 가족 및 직장지지가 일-가정 갈등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논문, 심리학과, 한림대학교, 서울.

- 남궁은정(2011). 연결과 돌봄, 그리고 나 : 여대생 가족 갈등 이야기의 구조분석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2), pp.34-35.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pp.1-15.
- 남찬섭·유태균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 노성덕 외(2010). 소년원 포래상담 프로그램. 학지사.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영숙(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17(1), p.22-30.
- 문창희·박제일·전정옥·천성문(2010).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포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과 우울을 매개로. 인문학논총, 15(1), p.255-273.
- 박경숙(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노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한국노년학회, 22(1), p.241-260.
- 박경숙·서이종·김수종·류연미·이상직·이주영(2013).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서울: 다산출판사
- 박경순(2009). 결혼 갈등의 대상관계 이론적 이해.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pp.105-118.
- 박복순(2012).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이혼숙려기간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家族法研究』26(1): 1-24.
- 박봉길(2005).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28(단일호), 403-428.
- 박부진·류정아(2002). 한국가족의 불평등문화와 갈등구조. 서울 : 명지대학교 여성. 가족생활연구소.
- 박영란·홍백의(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박영준·송인욱(2008). 노인 부양가족의 가족갈등, 부양부담 및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pp.53-78.
- 박인아·엄기욱(2007). 노부모의 의존성이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에 미치는

- 영향: 아동기 피학대경험과 부모부양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pp.179-194.
- 박태영 외(2010).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사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pp.15-28.
- 박태영·김태한(2008).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 pp.263-302.
- 박태영·김태한(2010).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사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pp.16-17
- 박태영·김혜선·김태한(2010). 남편의 원가족과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3), pp.43-66.
- 박태영·박진영·하태선(2011).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남편들의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pp.23-51.
- 박태영·박진영(2010).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p. 149-174.
- 박현순(2006).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보호요인의 탐색 -. 한국가족복지학, 18, pp. 179-201.
- 박혜련(1996). 연령층별 영양상태, 지역사회영향학회지, 1(2), pp.301~332.
- 변주수·유재연(2013).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현황 분석.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2014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pp. 109-113.
- 변화순 외(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장혜경·김혜영·전영주·정재동·구선영(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보건복지부(2010). 2009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방문건강관리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한국건강증진재단.
- 보건복지부(2012a). 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2012b).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13a).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13b). 2013년 영유아보육현황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 보건의료미래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 서용석(2012).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한국행정연구원.
- 석재은(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73-302.
-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p.163-191.
- 선우덕·석재은(2001). “인구고령화의 장기요양보호의 정책방향”. 『2001년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45.
- 성미애(2012).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pp. 103-114.
- 성미애·여성연·이재림(2014). 가족생활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성미애·진미정·이재림·최새은(2012). 건강가정사의 직무 및 근무환경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21(3), pp. 45
- 손서희·이재림(2014).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57-177.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송다영·장수정·김은지(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37(3), pp.27-52.
- 송진영·황치정(2013). 직장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노동분담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비판사회정책, 40, p.118-143

- 신수진·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안지연·한은영(2013). 노인부양가구의 가족갈등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1, pp. 267-290.
- 양소남·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P. 70-103.
-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연구보고 2010-15).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가족정책기초연구(연구보고 2011-56).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해외가족정책 동향 리포트 제 7호.
- 옥선화(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P. 241-258.
- 유계숙·최연실·성미애 편역(2003). 가족학이론: 관점과 쟁점. 서울: 하우.
- 유성경·한영주·조윤진(2011). 기혼 직장 여성의 개인 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6), pp.1955-1975.
-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10). 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 유희정(2013).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부모를 돌보는 형제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40: 63-91.
- 윤혜미(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pp.133-164.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34.
- 이기숙·고정자·권희경·김득성·김은경·김향은·옥경희(2009). 현대 가족관계론. 서울: 파란마음.
- 이미숙·고선주·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제6호., p117-133.

- 이삼식·장경섭·김선업·이병훈·송다영·박종서·김은정·최효진(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사회통합위원회.
- 이상영 외(2013).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여봉(2009).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가족과 문화, 23(1), pp. 41-76.
- 이영미·한재희(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p. 1401-1422.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이상희(201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경(2013).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이은희(2000). 일과 가족 갈등의 통합모형: 선행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2), pp.1-42.
- 이재림(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이재림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이지연(2012). 가족친화제도,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정책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이진숙(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58: 93-118.
- 이진숙(2008).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수발수당에 대한 연구 - 쟁점과 효과평가”. 『사회복지정책』32: 1-30.
- 이진숙·김태원(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8(1): 3-26.
-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 이진숙·이슬기(2014). “탈가족화 정책들의 역사적 변천과정”. 『한국가족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4.

- 이하식·김경연(2005). 부부성격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갈등수준과 갈등해결 양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2, pp.51-79.
- 이혜연(201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백(2009). 중년기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아내의 관점에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pp.77-88.
- 임병인(2013).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가족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p.1-23.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2013).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연구보고서 2013-31-1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경(2007). 취업 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국가. 여성학논집, 24(2), pp.3-40.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혜인·박주희(2014). 남녀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5(2), p. 171-189.
- 장휘숙(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pp.33-48.
- 전귀연·임주영(2006). 형제관계. 서울: 신정.
- 전서영·박정운·김양희(2008).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pp.59-79.
- 전영주(2014). 가족상담의 공적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가정의 실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2014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pp. 101-106.
- 전요섭·성금옥(2008). 기독교가정의 가족갈등 처리방식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15, pp.105-131.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정문자·이종원(2004).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pp. 147-164.
- 정봉희·김혜경·이영순(2009).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8(1), p.291-312.
- 정영금(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pp.
- 정은희(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 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09).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연구: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pp.7-46.
- 정현숙(2013).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2013 공동춘계학술대회 ‘세대갈등과 해결을 위한 소통과 사회통합방법의 모색: 가정, 지역사회, 정부의 역할’ 자료집*(pp. 13-41).
- 정효현(2001). 갈등관리전략이 갈등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 29, p.
- 조병은(2006). 재미교포 기혼여성의 가족역할 분담과 결혼의 질: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p. 147-172.
- 조성남 외(2003). 질적 접근을 통해 본 가족 내 세대갈등 양상과 통합 기제. *사회과학연구논총*, 11(0), pp.71-114.
- 조성남·최유정(2003). 질적 접근을 통해 본 가족 내 세대갈등 양상과 통합기제. *사회과학 연구논총*, 11, pp.
- 조윤진·유성경. (2012). 기혼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41-463.

- 조지용·박태영(2011).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pp.41-62.
- 지성애·백선희·채영란(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제도.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pp.135-155.
- 차성란(2013). 가족돌봄기능의 수행과 세대 갈등. 2013한국가정관리학회주관 공동추계학술대회. 2013.5.53-76
- 최미경(2012).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회, 33(5), pp. 163-180.
- 최원기(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학보, 11(1), pp. 85-103.
- 통계청(2011). 2010년 생명표.
- 통계청(2012). 2012 고령자통계.
- 한경혜·이정화(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파주: 교문사.
- 한경혜·최현자·은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건강증진총서 3호.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권장지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고령사회대책. 정책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3). 한국복지패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제도와 실행효과' 국제 심포지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재학 후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일지사.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pp.259-272.

- 함인희(2002). 가족, 세대갈등의 역동적 무대. *계간 사상*, 54, pp.
- 허진자·고재홍(2008).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pp.27-41.
- Acs, G.(1996). "The impact of welfare on young mothers' subsequent childbearing decision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pp. 469-480.
- Barber, B. K., & Erickson, L. D.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26-354.
- Baumrind, G.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pp. 56-95.
- Belanger A., R. Lachapelle, G. Harrison, C. D'Aoust, and J. Dumas.(1998). "Report on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Canada 1997." catalogue No. 91-209-XPE. Ottawa: *Statistics Canada*.
- Berry, V. L.(2008).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amily conflict to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Bath, Department of Social and Policy Science.
- Bertram, Hans, Wiebke Roesler, and Nancy Ehlert.(2005). "Zeit, Infrastruktur und Geld, Familienpolitik als Zukunftspolit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3-24: 6-15.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ooth. A., Crouter. A.C., Clements, M(2012). *Couples in conflict*. New York: Psychology Press.

-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z, S. K.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dy, G. H., Arias, I., & Fincham, F. D. (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0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uillette L., C. Felteau, and P. Lefebvre.(1993).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fertility behaviour in Quebec." *Canadian Public Policy 19*(3). Guelph Canada.
- Bubolz, M. M., & Sontag, M. S. (1993). Human ecology theory.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419-448). New York: Plenum Press.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2). *Familienreport 2011*. Leistungen, Wirkungen, Trends.
- Canary, H. E., Canary, D. J.(2013). *Family conflict*. MA: Polity press.
- Cancian(1986). The feminization of lov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1*, pp. 692-709.
- Cicirelli, V. G. (1981). *Helping elderly parents: The role of adult children*. Boston: Auburn House.
- Cigno, A., and J. Ermisch.(1989). "A Micro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births." *European Economic Review 33*.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pp. 685-704.
- Connidis, I. A. (2007). Negotiating inequality among adult siblings: Two case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p. 482-499.
- Connidis, I. A., & McMullin, J. A. (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pp. 558-567.
- Crompton, Rosemary.(1999).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edited by R. Crompton. Oxford: Oxford. U.P.
- Dahlgren, G. and Whitehead, M. (1991).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marti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123.
- Feeney, J. A., Hohaus, L., Noller, P., & Alexander, R. P. (2001). *Becoming par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e, M. A., & Fincham, F. D. (2013). *Handbook of family theories: A content-based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Fraser, Nancy. (2000).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 107-120.
- Fried, P. F., Tangen, C. M., Walston, J., Newman, A. B., Hirsch, C., Gottdiener, J., Seeman, T., Tracy, R., Kop, W. J., Burke, G., and Mcburnie.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s*, 56A(3).
- Garbarino, J. & Sherman, D.(1980). High-risk neighbourhoods and high-risk families: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1, 188-198.
- Garbarino, J. & Sherman, D.(1980). High-risk neighbourhoods and high-risk families: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1, 188-198.
- Gauthier A.H., and J. Hatzius.(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 Gauthier, A.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larendon Press.
- Gauthier, A.H.(2002).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s there convergence?." *Population*. April: 1-48.
- Gornick, J., and M. K. Meyers.(2002). "Supporting Dual-Earner/Dual-Carer Society: What can Government Do?" *Earning and Caring: What Government Can Do to Reconcile Motherhood, Fatherhood, and Employment*.
- Gottman, J. M., Coan, J., Carrere, S., & Swanson, C. (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pp. 5-22.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ustafsson, S., and C. Stafford.(1992). "Child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Journal of Human Resource* 27(1): 204-230.
- Hildegard Theobald.(2012). Home-based care provision within the Germ welfare mix.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0(3), pp.274-282.
- Hilgeman, Christin, and Carter T. Butts. (2005). *Family Policy, Women's Employment, and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A hierarchical Bayesian Approach*.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 Homans, George C.(1961). *Social Behaviou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Hoyman, Michele and Heidi Duer. (2004). "A Typology of Workplace Policies: Worker Friendly vs. Family Friendly?"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4: 113-124.
- Hyatt, D. E., and W. J. Milne.(1991). "Can public policy affect fertility?" *Canadian Public Policy* 17(1).
- Ingersoll-Dayton, B., Neal, M. B., Ha, J-H., & Hammer, L. B. (2003). Redressing inequity in parent care among sibl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pp. 201-212.
- Jun BH·Lee HG(2000). An investigation of the intake of the health food among the salarymen in Seoul. *Kor J Soc Food Sci* 16(1), pp.9~16.
- Kamerman, S. B,(2001). "An Overview of ECEC Developments in the

- OECD Countr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S. B. Kamer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 Kamerman, S. B. and Kahn, A. J. (2003). "Child and family policies in an era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and restructuring", In K. Vleminckx and T. M.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What do we know?*, Bristol: The Policy Press.
- Kang MH(1994).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people. *Korean J of Nutr*, 24(6), pp.616~636.
- Kathleen M. Galvin & Bernard J. Brommel(1986). *Family Communication. Addison Wesley School.*
- Kluser, E. S. (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 pp. 105-125.
- Knijin, Trudie, and Monique Kremer. (1997). "Gender and the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s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3): 328-361.
- Knox, D., & Schacht, C. (2010). *Choices in relationship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10th ed.)*. Belmont, CA: Wadsworth.
- Kriesberg, Louis.(2003).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Kwon, H.-K., Rueter, M. A., Lee, M. S., Koh, S., & Ok, S. W.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pp. 316-325.
- Lee YA·Lee HJ·Lee HS·Jang YA·Kim CI (2007). Nutritional status and its

- improvement strateg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 Community Nutr.* 11, pp.16~34.
- Lee, J., & Bauer, J. W. (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 pp. 455-475.
-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for employed 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 Lerner, M., Somers, D. G., Chiriboga, D., & Tierney, M. (1991). Adult children as caregivers: Egocentric biases in judgements of sibling contributions. *The Gerontologist*, 31, 746-755.
- Lynn Eppers, Debbie Goodall, Barbara E. Harrison(2008). Caregiver burden among dementia patient caregiv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20(8), p. 423-428.
- Marta Szebehely and Gun-Britt Trydegard. (2012). Home care for older people in Sweden; a universal model in transition.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0(3), pp.300-309.
- Mary, J. Q., and Susan, K. T.(1997). *Elder Abuse and Neglect: Causes, Diagnosi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erton, R. K., & Barber, E. (1963). Sociological ambivalence. In E. Tiryakian (Ed.), *Sociological theory: Values and sociocultural change* (pp. 91-120). New York: Free Press.
- Moos, R. H., and Moss, B. S.(1994).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3r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es.
- Munro H-Schlieff G (1992). *Nutrition of the elderly: Nestle nutrition Workshop Series*. 29, Raven Press.

- Nagi, S. Z., (1976). An epidemiology of disability amo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54, pp. 439~467
-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2014). *Family life educ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Retrieved from <https://www.ncfr.org/sites/default/files/downloads/news/fle2014.pdf>
- Neil Gilbert and Paul Terrell(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earson Education Inc. 서울: 나눔의집.
-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00.
- Neyer, Gerda.(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MPIDR working paper 2003-021*. Max-Planck-Institut fuer demographische Forschung.
- Orloff, A. S. (2001). "Farewell to Maternalism: Welfare Reform, Ending Entitlement for Poor Single Mothers, and Expanding the Claims Poor Employed Parents." *Harvard Seminar on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Harvard University.
- Orloff, A. S.(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328.
- Ostner, Ilona. 1994. "Back to the fifties: Gender and Welfare in unified Germany." *Social Politics* 1(1): 32-59.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pp. 555-560.
- Pearson, Mark., Adema, Willem., Loizillon, Anais., Pylkkanen, Elina.,

- Thevenon, Oliver. (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4: OECD*.
- Ptricia L. R., Hategan M., Camen B. & Mircea T. A.(2010). The emergenc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2(2), 4966-4971.
- Robert A Kreisberg.(1998). Diabetic dyslipidemia. *Th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82(12). p. 67-73.
- Rosenstock, F. & B. Kutenr, B.(1967). Alienation and family crisis. *Sociological Quarterly*, 8(3), 397-406.
- Rosenstock, F. & B. Kutenr, B.(1967). Alienation and family crisis. *Sociological Quarterly*, 8(3), 397-406.
- Rowe, J. W.·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Sainsbury, D.(1994).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 Sample, S. J.(1992). Conflict in Alzheimer's caregiving families: Its dimensions and consequence. *The Gerontologist*.
- Sample, S. J.(1992). Conflict in Alzheimer's caregiving families: Its dimensions and consequence. *The Gerontologist*.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pp. 209-222.
- Sleebos, Joelle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Statistisches Bundesamt. 2000. Mikrozensus.
- Small, S. A., Cooney, S. M., & O'Connor, C. (2009). Evidence-informed program improvement: Using principles of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quality and impact of family-bas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58, pp. 1-13.

- Smith, S. R., & Hamon, R. R. (2012). *Exploring family theories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n SM·Park YJ·Koo JO·Lee YN·Yoon HY (1996).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of Korean elderly from low-income, urban area and improving effect of meal service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 V. The effect of meal service for one ter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 *Korean J Community Nutr.* 2(1), pp. 63~73.
- Sprey, J. (1969).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pp. 699-706.
-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Mikrozensus, Familien und Haushalte 2010*.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Shema, S. J., & Kaplan, G. A.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4), 505-510.
- Sung, M., & Lee, J.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 571-587.
- Twenge, J. M., Campbell, W. K., &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pp. 574-583.
- Ungerson, C.(2004). "Whose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sh for care' schemes." *Aging & Society* 24: 189-212.

- Verbrugge, L. M. & Jette, A. M. (1994). The disablement proc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s*, 38(1).
- Walker, J.R.(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fertility behaviou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3).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 Whitchurch, G. G., & Constantine, L. L. (1993). *Systems theory*.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325-352). New York: Plenum Press.

[기타 (인터넷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2012). 밥상머리교육.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249&group=S
&pageIndex=1&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
rd=%EB%B0%A5%EC%83%81%EB%A8%B8%EB%A6%AC&srchCode
=&codeLevel1=&codeLevel2=&allChkYN=](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249&group=S&pageIndex=1&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EB%B0%A5%EC%83%81%EB%A8%B8%EB%A6%AC&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김민경. (2013. 12. 6)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늦게 태어난 내 탓이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326.html

김수혜·석남준·김효정. (2012. 3. 19)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결혼식은
과시하는 자리라 생각... 연봉 맞먹는 예식비 하루에 써.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9/201203
190021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9/2012031900217.html)

노진호. (2014. 3. 15) [현장 속으로] 가정법원서 들여다본 이혼 풍속도.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62
050&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62050&cloc=olink|article|default)

박민제(2014. 6. 17).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 는다.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979149

박은경. (2014, 2.) [세태 리포트] '편' 앞에선 가족애도 실종. 신동아, 653호 (p247~255)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1/21/201401210500001/201401210500001_1.html

통계청. (2010. 03. 3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4/index.board?bmode=read&bSeq=&aSeq=70284&pageNo=1&rowNum=10&navCode=10&currPg=&sTarget=title&sTxt= 에서 2014. 08. 31 인출.

통계청. (2014. 04. 22), 인구동향조사.

<http://www.index.go.kr/search/search.jsp> 에서 2014. 08. 31 인출.

한겨레. (2012. 10. 19) 머느리만 '시월드'? 사위들에겐 '처월드' 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629.htm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mogef.go.kr.

<http://www.bmfsfj.de/politikbereiche/Familie/familie-und-arbeitswelt, did=11408.html>.

www.bmfsfj.de/politikbereiche/Familie/familie-und-arbeitswelt, did=11408.html

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

www.government.se/content/1/c6/23/17/05/680731f1.pdf.

www.index.go.kr.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상속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최근 가족가치관의 약화, 급속한 가족변화로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 공백 등 가족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으로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부모 부양, 재산분배 등 상속문제 등으로 형제자매 간, 시부모와 며느리, 고부와 장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가정 양립, 성인자녀의 만혼화에 따른 부모의존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자녀에 관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모르겠음
1-1.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집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1-2.

1-3.

1-4.

2. 귀하께서는 부모로서 자녀양육 책임을 어디까지 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 ⑤ 언제(까지)라도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 ⑦ 기타(_____)

2.

3.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면서 지키기를 요구하는 부모
- ②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
- ③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엄격한 부모
- ④ 모든 것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모
- ⑤ 기타(_____)

3.

4. 귀하께서는 노부모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장남 ② 아들 모두 ③ 딸 ④ 아들·딸 모두
- ⑤ 능력 있는 자녀 ⑥ 스스로 해결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⑧ 기타(_____)

4.

5. 귀하께서는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 ②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
- ③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 ④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
-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 ⑥ 기타(_____)

5.

6. 귀하께서는 유산 상속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② 장남에게 가장 많이 ③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가장 많이
④ 모든 아들에게 비슷하게 ⑤ 모든 자녀에게 비슷하게 ⑥ 사회에 환원
⑦ 기타(_____)
7. 귀하께서는 바람직한 제사풍속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장남이 맡아야 한다 ② 아들끼리만 번갈아 맡아야 한다
③ 아들과 딸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 ④ 종교기간 등 대행에 맡긴다
⑤ 제사는 없애야 한다 ⑥ 생각해 보지 않음/모름
⑦ 기타(_____)

6.

7.

가족 내 세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8. 귀하는 청(소)년기(만 15~24세) 자녀가 있습니까?
① 청(소)년기 자녀가 있다 ② 청(소)년기 자녀가 없다 ③ 비해당(미혼) ▶질문9로

8.

8-1. 귀하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8-1. 나는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자녀를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3. 나는 자녀를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1-1

8-1-2

8-1-3

8-2. **최근 1년간** 귀하는 청(소)년기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질문9로 ① 이성 및 동성친구 ② 가사등은 문제
③ 생활습관(음주·흡연/컴퓨터 게임·휴대전화 중독) ④ 취업 및 진로문제
⑤ 돈 문제 ⑥ 학업문제 ⑦ 다른 형제와의 불화
⑧ 기타(_____)

8-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3.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힌다) ②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⑤ 학교 및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_____)

8-3.

9. 귀하는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가 있습니까?
① 성인기 자녀가 있다 ② 성인기 자녀가 없다 ③ 비해당(▶질문10로

9.

9-1.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의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9-1-1. 첫째: _____ 9-1-2. 둘째: _____
① 기혼 ② 미혼

9+1

9+2

9-2. 성인기(만 25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9-2-1. 첫째: _____ 9-2-2. 둘째: _____
① 함께 살고 있다 ② 함께 살지 않는다

9-2-1
 9-2-2

9-3. 귀하와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9-3-1. 나는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3-2. 나는 자녀를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3-3. 나는 자녀를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3-1
 9-3-2
 9-3-3

9-4. 귀하와 자녀 간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 ①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았다
② 본인(부모)만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③ 성인기 자녀만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④ 양쪽 모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9-3.

9-5. 최근 1년간 귀하는 성인기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질문10로** ① 이성친구 및 결혼문제
② 생활비 부담 등 경제문제 ③ 생활습관(음주·흡연/늦은 귀가)
④ 성격 및 정서문제 ⑤ 직장 및 취업문제
⑥ 배우자 및 부모문제 ⑦ 손자녀 양육
⑧ 기타(_____)

9-4.
 9-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6.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성인기 자녀와의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인다) ②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자녀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기타(_____)

9-5.

가족돌봄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0. 귀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구분	두분 모두 살아 계신다	한분만 살아계신다	두분 모두 돌아가셨다
10-1. 친부모	①	②	③
10-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10-1
 10-2

11. 귀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구분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산다	기타
11-1. 친부모	①	②	③
11-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11-1
 11-2

12. 귀하 부모님은 돌보는 분이 필요할 정도로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 그렇다라고 응답 **▶질문13으로**/아니다라고 응답 **▶질문14로**

구분	그렇다	아니다	비해당
12-1. 친부모	①	②	③
12-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12-1
 12-2

13. (질문 12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 부모님을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	간병인	기타
13-1. 친부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3-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4-1

14-2

14.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 부모님은 손자녀를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습니까?

구분	그렇다	아니다	비해당
14-1. 친부모	①	②	③
14-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14-1

14-2

15. 귀하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십니까?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	부모와 자녀 공동부담	국가 및 사회	기타
15-1. 친부모	①	②	③	④	⑤
15-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④	⑤

15-1

15-2

16. 귀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친부모	16-1. 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6-2.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6-3. 부모님은 나를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시부모 /장인· 장모	16-4. 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6-5.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6-6. 부모님은 나를 믿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6-1

16-2

16-3

16-4

16-5

16-6

17. **최근 1년간** 귀하는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한가지만 선택) 17-1. 친부모: _____ 17-2. 시부모/장인·장모: _____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① 친부모 부양 ② 시부모 부양
- ③ 장인·장모 부양 ④ 생활비 부담 등 경제문제 ⑤ 재산상속 문제
- ⑥ 명절 및 제사문제 ⑦ 생활방식(남비/잔소리) ⑧ 성격 및 사고방식
- ⑨ 가족 및 집안 행사 ⑩ 배우자 및 부모문제 ⑪ 손자녀 양육
- ⑫ 신체적 돌봄 갈등 ⑬ 기타(_____)

17-1

17-2

18.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부모와의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구분	그냥 침는다(순으로 식한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욕력을 행사한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타
18-1. 친부모	①	②	③	④	⑤	⑥
18-2. 시부모/장인·장모	①	②	③	④	⑤	⑥

18-1

18-2

19. 귀하께서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19-1. 친부모: _____ 19-2. 시부모/장인·장모: _____

- ①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 ②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
- ③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 문화 개선 ④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
- ⑤ 부모자녀 간 가사분담 ⑥ 기타(_____)

19-1

19-2

상속갈등 및 대처방식

20. 귀하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다툼을 경험한 적이 없다
 ②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이 많이 되려고 해서
 ③ 자녀 간에 상속방식에 차이가 나서
 ④ 상속자의 배우자에게만 많이 상속되려고 해서
 ⑤ 기타()

20.

①		③
②		④

20-1.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 가족은 재산문제와 관련된 다툼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 가지만 선택)

- ①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였다
 ② 가족간에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③ 가족간에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였다
 ④ 기타()

☞질문21로

20-1.

⑤ 재산상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법적소송을 경험한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상속자를 기준으로 누구입니까?

- ① 상속자의 배우자
 ② 장남
 ③ 차남 이하
 ④ 딸
 ⑤ 자녀 전체
 ⑥ 기타()

20-1-1.

20-1-2. (법적소송을 경험한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분배방식에 전문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② 가족에게 몰랐던 빛이 발견되어서
 ③ 혼외자가 나타나서
 ④ 기타()

20-1-2.

응답자 일반사항

21.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21. 명

22.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아버지
 ④ 나의 어머니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나의 형제자매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

2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원은 가족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미혼자녀
 ④ 한부모+미혼자녀
 ⑤ 3세대가구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가구()

23.

24. 귀하의 자녀수와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녀: _____ 세 둘째 자녀: _____ 세
 셋째 자녀: _____ 세 넷째 자녀: _____ 세

24. 명

첫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세
둘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세
셋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세
넷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세

2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

25.

26.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 **▶ 질문 27로**

26.

26-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④ 농업어업 축련 종사자
⑤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6-1.

26-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시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6-2.

27. 지난 1년간(2013.1~1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⑦ 소득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 ~ 199만원 ③ 200 ~ 299만원
④ 300 ~ 399만원 ⑤ 400 ~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잘 모르겠음

27.

28. 귀댁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십니까?

-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와 배우자
④ 가구주의 성인자녀 ⑤ 가구주의 부모 ⑥ 기타()

28.

부록 2. 부부 및 형제자매 갈등 실태조사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족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만 19-69세)의 의견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사회정책연구본부 ☎ 02-380-8210 김가희 연구원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사·도 성 만 연령

— — — —

거주 지역	_____ 시 · 도
응답자	•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 만 연령: _____ 세
	•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유배우(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사별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input type="checkbox"/> ④ 별거(이혼전제)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
	• 결혼기간: 만 _____ 년
	•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 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 가구주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④ 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⑤ 가구주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____)
전화번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반적인 가족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6. **최근 1년간** 귀댁에는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누구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또는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질문7로** ① 부부 간의 갈등 ② 부모와 자녀 갈등
 ③ 고부 갈등 ④ 장서 갈등 ⑤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⑥ 친형제자매 간 갈등 ⑦ 동서 간 갈등 ⑧ 노부모 및 가족돌봄 갈등
 ⑨ 직장 및 일가족 양립 갈등 ⑩ 상속갈등 ⑪ 성인자녀 돌봄 갈등
 ⑫ 손자녀 돌봄 갈등 ⑬ 기타(_____)

6.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⑥		⑫
		⑬

6-1.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댁은 가족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힌다)
 ②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⑤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_____)

6-1.

6-2.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댁의 가족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음
 ②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③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④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⑤ 기타(_____)

6-2.

부부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7. 귀하 부부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 * 미혼 및 1인가구인 경우 질문13번으로 가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	대체로 그렇	매우 그렇
7-1. 우리 부부는 평소 대화할 일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2. 우리 부부는 견해가 비슷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3. 우리 부부는 서로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4.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성생활)에 만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1.

7-2.

7-3.

7-4.

8. 귀하 부부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십니까?

- ① 부인과 상의 없이 남편 혼자 결정한다 ② 부인과 상의는 하지만 주로 남편이 결정한다
 ③ 남편과 부인이 상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④ 남편과 상의하지만 주로 부인이 결정한다
 ⑤ 남편과 상의 없이 부인 혼자 결정한다

8.

9. **최근 1년간** 귀하는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 질문10로** ① 내 부모형제자에 관계 ② 배우자 부모형제자에 관계
 ③ 배우자 생활방식(음주/늦은 귀가/잔소리) ④ 자녀교육 문제(학업성적/생활방식)
 ⑤ 가족의 경제적 문제 ⑥ 가사 및 육아부담 ⑦ 배우자와의 성생활
 ⑧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가부장적 태도) ⑨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생활
 ⑩ 본인 및 배우자의 친구관계 ⑪ 기타(_____)

9.			⑥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9-1.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부부갈등은 주로 누가 원인을 제공합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본인과 배우자 모두
 ④ 나의 부모 ⑤ 배우자 부모 ⑥ 기타(_____)

9-1.

9-2.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부부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인다) ②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⑤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기타(_____)

9-2.

9-3. (갈등을 경험한 경우)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소통단절로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
 ②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③ 별거 중이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④ 기타(_____)

9-3.

10. 귀하 또는 배우자는 현재 직장에서 은퇴하였습니까?

- ① 부부 모두 은퇴하지 않음 **☞ 질문11로** ② 남편만 은퇴함
 ③ 부인만 은퇴함 ④ 부부 모두 은퇴함

10.

10-1. 귀하 또는 배우자가 은퇴한 이후에 **배우자와의 갈등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감소함 ② 감소함 ③ 보통 **☞ 질문11로**
 ④ 증가함 ⑤ 매우 증가함

10-1.

10-2. (은퇴 후 갈등이 증가한 경우) **갈등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경우 모두 응답)

- ① 경제(돈)문제 ② 배우자 생활방식(음주/늦은 귀가/잔소리) ③ 노부모 부양
 ④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⑤ 성인자녀결혼 ⑥ 성인자녀 돌봄
 ⑦ 배우자와의 성생활 ⑧ 가사분담 ⑨ 본인 및 배우자의 친구관계
 ⑩ 기타(_____)

10-2.			⑥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11. 귀하께서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②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
 ③ 부부 간에 대화 ④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⑤ 부부 간에 가사분담 ⑥ 기타(_____)

11.

일가정 양립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2. 귀댁은 맞벌이 부부이십니까? * **부부 모두 1주간에 1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① 맞벌이 부부이다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 ③ 비해당(비혼, 1인가구) **질문13로**

12.

12-1. 귀댁은 가사 및 양육을 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 ① 없음 ② 배우자 ③ 시부모 및 친정부모 ④ 형제자매 및 동생
⑤ 자녀 ⑥ 파출부 및 도우미 ⑦ 기타()

12-1.

12-2. **최근 1년간** 귀댁은 하는 맞벌이 부부로서 다음과 같은 가정 내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는가? * **전혀 없는 경우 질문13로**

구분	전혀 없음	어느 정도 있음	자주 있음	비해당
12-2-1. 가사일 참여	①	②	③	④
12-2-2. 가계 및 재정관리	①	②	③	④
12-2-3. 가정행사 참여	①	②	③	④
12-2-4. 노부모 부양	①	②	③	④
12-2-5. 자녀양육 및 교육	①	②	③	④

12-2-1.
 12-2-2.
 12-2-3.
 12-2-4.
 12-2-5.

12-3.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일과 가정 병행에서 오는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힌다) ②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③ 가족들과 논쟁하거나 폭력적으로 해결 ④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⑤ 시간제나 재택근무로 근무형태 변경 ⑥ 직장 그만 둠
⑦ 기타()

12-3.

형제자매 갈등 원인 및 대처방식

13. 귀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 ① 형제자매가 있다(순위:) ② 형제자매가 없다 **질문15로**

13.

13-1. 귀하는 다음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13-1-1. 귀하 형제자매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더 놓고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1-2. 귀하 형제자매는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1-3. 귀하 형제자매는 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1-4. 귀하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1-1.
 13-1-2.
 13-1-3.
 13-1-4.

13-2. **최근 1년간** 귀하는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질문15로** ② 내 부모 부양 ③ 배우자 부모 부양
④ 경제(돈)문제 ⑤ 재산상속 문제 ⑥ 명절 및 제사 문제
⑦ 생활방식(냄비/잔소리) ⑧ 성격 및 사고방식 ⑨ 가족 및 집안 행사
⑩ 배우자 ⑪ 기타()

13-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3-3.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형제자매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힌다) ② 형제자매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형제자매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⑤ 형제자매와 의절 한다
⑥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_____)

13-3.

14. 귀하는 동서(남편형제의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동서가 있다(순위: _____) ② 동서가 없다 ⑨ 비해당(미혼) 질문15로

14.

14-1. 귀하는 다음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14-1-1. 귀하 동서와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 놓고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1-2. 귀하 동서와는 시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1-3. 귀하 동서와는 시부모님 부양에 경제적으로 분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1-4. 귀하 동서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1-1.
 14-1-2.
 14-1-3.
 14-1-4.

14-2. 최근 1년간 귀하는 동서와의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였습니까? 갈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응답)

- ⑩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질문17로 ① 시부모 부양 ② 경제(돈)문제
③ 재산상속 문제 ④ 명절 및 제사 문제 ⑤ 가족 및 집안 행사
⑥ 생활방식 ⑦ 성격 및 사고방식 ⑧ 기타(_____)

14-2.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14-3.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귀하는 동서와의 갈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한가지만 선택)

- ① 그냥 참는다(속으로 삭힌다) ② 동서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③ 동서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동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⑤ 동서(시누이)와 의절한다
⑥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_____)

14-3.

응답자 일반사항

15.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15. 명

1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아버지
④ 나의 어머니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나의 형제자매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_____)

1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76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육구

17.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은 가족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미혼자녀 ④ 한부모+미혼자녀
 ⑤ 3세대가구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가구(_____)

17.

18. 귀하의 자녀수와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첫째 자녀: _____ 세 둘째 자녀: _____ 세
 셋째 자녀: _____ 세 넷째 자녀: _____ 세

18. 명

첫째	<input type="text"/>	세
둘째	<input type="text"/>	세
셋째	<input type="text"/>	세
넷째	<input type="text"/>	세

19.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

19.

20.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 **▶ 질문 21로**

20.

20-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0-1.

20-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사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0-2.

21. 지난 1년간(2013.1~1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⑩ 소득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 ~ 199만원 ③ 200 ~ 299만원
 ④ 300 ~ 399만원 ⑤ 400 ~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잘 모르겠음

21.

22. 귀댁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십니까?

-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와 배우자
 ④ 가구주의 성인자녀 ⑤ 가구주의 부모 ⑥ 기타(_____)

22.